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 in Jungnang-gu

2023.11.3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연구모임]

이 은 경 의원(대표, 중랑구의회 의원)
전 유 정 의원(간사, 중랑구의회 의원)
한 성 수 의원(위원, 중랑구의회 의원)
조 현 우 의원(위원, 중랑구의회 의원)

참여연구진

이상일(책임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황종석(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정상천(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정상현(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자문위원

박용치(사단법인 한국정책개발학회 고문, 前 서울시립대 교수)
구본충(국무총리 자문위원, 前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
최임광(전 한국정책개발학회 회장)

용역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제 출 문

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3. 11. 30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상 일

발간사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난 30여 년간의 중랑구의회 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은 오늘의 중랑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놓았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복원과 외환위기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헤쳐 나가려는 국가적 아젠다 가운데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 자리에 민간의 전문성과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 구현을 위한 도구로써 민간위탁의 범위와 대상 사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비례하여 민간위탁 예산 역시 증가추세이며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됐다. 민간위탁 대상도 단순 시설관리 업무에서 사회안전망인 사회복지 사무로 업무의 성격과 범위가 바뀌어 왔고 범위 또한 넓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랑구에서도 지역 공동체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지속적이고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실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세계 경제의 침체 및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공공서비스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민간위탁 사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는 사회복지 사무의 서비스 수준과 질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중랑구에서도 지역주민의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하고도 세밀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핵심축으로서 중랑구의회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더욱 더 효과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될 만하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모임 참여 의원들의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 민간위탁 제도의 핫이슈 및 서울시의 정책적 전환 등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민간위탁 제도의 경쟁 환경, 수탁기간 선정의 투명성, 성과평가의 공정성, 관리감독 체계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욕구와 지방자치에 대하여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는데 부족하나마 발전적인 안목을 마련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연구에 함께해주신 연구모임 의원님들과 (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연구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23년 11월 30일

중랑구의회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연구모임」

대표 이은경 의원, 간사 전유정 의원, 위원 한성수 의원, 위원 조현우 의원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2023. 11. 30

연구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3절 연구 내용과 체계

1. 연구내용
2. 연구체계

제2장 이론적 배경-----23

제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논의

1. 민간위탁 개념
2. 민간위탁의 특성
3. 민간위탁의 공공서비스의 위치

제2절 민간위탁의 법령 및 조례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법체계
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법령과 조례
3.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중랑구 개별사업조례와 위탁사무

제3절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

1. 민간위탁 대상사무
2. 민간위탁의 유형

제4절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1. 민간위탁의 절차
2. 민간위탁 추진과정
3. 대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5절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제3장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실태분석-----40

제1절 민간위탁 사업 및 예산현황

1. 민간위탁 사업현황
2. 민간위탁 예산현황
3. 최근5년간 민간위탁 예산

제2절. 민간위탁 단계별 운영실태 분석

1. 사전준비단계
2. 수탁기관선정 단계
3. 계약 및 운영단계
4.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1. 영유아 보육사무 개념
2. 영유아 보육사무 현황
3. 영유아 보육법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4. 영유아보육조례 실태 분석
5. 중랑구 국공립어린이집운영 실태 분석

제4장 민간위탁 심층면접 및 이용자 조사 분석-----72

제1절. 관계공무원 및 수탁기관 심층면접 분석

1. 심층면접 개요
2. 심층면접 결과분석

제2절 수탁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조사결과 요약

제5장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태분석-----84

제1절.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현황

1. 민간위탁 사무 현황
2. 민간위탁 예산 현황

제2절.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실태분석

1. 민간위탁 예산 규모
2. 민간이전재원 지출근거

3. 계약기간
4. 계약체결 방법
5. 낙찰자 선정 방법
6. 운영비 정산
7. 성과 평가실시

제3절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분석

1. 민간위탁 조례 현황
2. 조례 분석체계
3. 단계별 조례분석 내용
4. 시사점 요약

제6장 국내외 민간위탁 우수사례 -----109

제1절 국외 민간위탁 우수사례

1. 일본의 성과연동형 계약제도
2. 영국의 민간위탁제도

제2절 국내 민간위탁 우수사례

1. 대전광역시 성과지표체계
2. 대구광역시 성과지표체계
3. 서울특별시 성과지표체계

제3절 시사점 요약

제7장 중랑구 민간위탁 운영체계 개선방안-----119

제1절.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방안

1. 사전 준비단계
2. 수탁자 선정단계
3. 계약 및 운영단계
4.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

제2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개선방안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제8장

결론-----14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조언

참고문헌-----145

부록 -----148

1. 민간위탁 담당부서현황
2. 민간위탁시설 주요 질문내용
3. 민간위탁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표
4. 중랑구 민간위탁 현황
5. 중랑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6. 주요 인터뷰 내용
7. 심층면접 민간위탁 담당 부서(공무원) 현황
8. 심층면접 수탁기관 관계자 현황
9. 수탁시설 이용자 설문지
10.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1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2. 서울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3.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

표 목 차

- <표 1>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권고사항
- <표 2>민간위탁, 민영화 등 비교
- <표 3>위임과 민간위탁 비교
- <표 4>민간위탁 법체계
- <표 5>민간위탁과 관리위탁 구분
- <표 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표 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 <표 8>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분류
- <표 9>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분석기준
- <표 10>중랑구 민간위탁 현황
- <표 11>민간위탁 분야별 예산
- <표 12>중랑구 총예산 대비 민간위탁 예산 규모
- <표 13>위탁의 적용근거
- <표 14>민간위탁 관련 조례 현황
- <표 15>민간위탁 사업기간
- <표 16>민간위탁 심사위원회운영
- <표 17>낙찰자 선정 방법과 현황
- <표 18>사업비 정산방법
- <표 19>계약이행보증 방법
- <표 20>민간위탁 지도감독 실태
- <표 21>서울시 민간위탁 지침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한기준
- <표 22>재위탁과 재계약시 성과평가 활용
- <표 23>성과평가 실시
- <표 24>계약의 해지 및 취소
- <표 25>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어린이집의 유형
- <표 26>서울시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유형 분류
- <표 27>국공립어린이집의 선정 심사기준
- <표 28>국공립어린이집의 선정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 <표 29>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 명칭
- <표 30>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의 위탁기간

<표 31>서울시 자치구 조례의 재위탁 횟수와 제한
 <표 32>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현황
 <표 33>서울시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현황
 <표 34>국공립어린이집 정원대비 충원율
 <표 35>인가기간별 어린이집 현황
 <표 36>어린이집 수탁기관별 운영현황
 <표 37>성별 분포도
 <표 38>연령별 분포도
 <표 39>월 이용횟수 분포도
 <표 40>직원의 서비스 평가분포도
 <표 41>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의 수준 분포도
 <표 42>이용자 욕구충족 수준 분포도
 <표 43>시설 이용자 편리성 분포도
 <표 44>이용자 중심 개선정도 분포도
 <표 45>개선이 필요한 분야 분포도
 <표 46>서울시 자치구별 민간위탁현황
 <표 47>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예산 현황
 <표 48>자치구 민간위탁 예산
 <표 49>민간이전재원 지출근거
 <표 50>계약기간
 <표 51>계약체결방법
 <표 52>낙찰자 선정방법
 <표 53>운영비 정산
 <표 54>성과평가 실시
 <표 55>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일 및 조문수
 <표 56>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분석틀
 <표 57>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표 58>자치구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
 <표 59>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및 의회동의 규정
 <표 60>민간위탁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
 <표 61>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표 62>수탁자 선정 관련 규정
 <표 63>계약 및 재위탁 규정

- <표 64>수탁기관의 지도감독 규정
- <표 65>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규정
- <표 66>계약의 해지 관련 규정
- <표 67>핵심성과지표 및 보조성과지표
- <표 68>대전광역시 성과평가 지표체계
- <표 69>대구광역시 성과평가 지표체계
- <표 70>서울특별시 성과평가 지표체계

그림목차

- <그림 1> 서울시 및 중랑구의 민간위탁 예산 증가 추이
- <그림 2> 연구체계도
- <그림 3>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위치
- <그림 4> 신규위탁 공모절차
- <그림 5> 중랑구 민간위탁 분야별 사업현황
- <그림 6> 보육정책위원 구성
- <그림 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단계별 체계도
- <그림 8> PFS 사업 성과체계도
- <그림 9> PFS 사업 추진체계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가. 정부실패와 신자유주의 등장

1970년대까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국민의 복지 등 나라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던 정부가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과 경직성 및 비전문성과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미흡, 고물가 고실업, 고금리에 더하여 세계적인 오일쇼크로 시장경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는 등 정부실패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정부의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줄이고 이를 민간으로 이전 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신공공관리론과 맞물리면서 국가 및 공공부문 중심 국가운영과 복지 지향적 경제정책 운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 되었다¹⁾. 즉, 시장 메커니즘을 행정 부문에 적용함으로서 정부 운영에 경쟁환경을 도입하였고 작은 정부와 규제철폐, 세금인하와 복지지출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 신 공공관리론이 국가 정책운영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1976년 파운드화의 가치 폭락으로 나라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IMF구제 금융을 받게 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기치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무상복지에 몰입하면서 일자리도 원하지 않고 일하려는 의욕도 없는 사회적 구조로 전락하여 나라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에 영국정부(대처리즘)가 과감한 복지 감축정책으로 필요한 복지수요자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석탄산업의 통폐합으로 정부행정을 민간시장으로 개방함은 물론 공공기관도 40여개를 민영화하여 비용절감과 공공성 및 효율성 향상의 길을 열게 되었다²⁾.

이제 정부의 역할이 노 젓기에서 방향잡기로 축소 선회를 하고, 공공서비스에 민간위탁을 도입함으로서 시장 대응성과 서비스 공급의 효율적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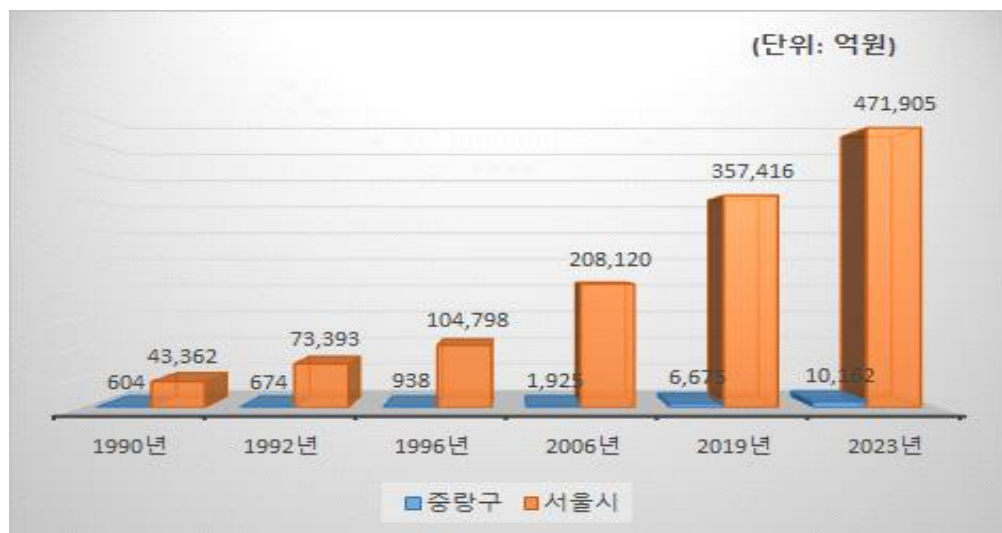
나. 지방자치의 부활 과 외환위기 극복 노력

1) 신자유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2) 박동운, 2019.5.13. '마거릿 대처.구조개혁으로 영국과 세계 시장경제로 바꾸다. 시장경제학회, 리버테리언 no54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3월 9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당시에는 소속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위임과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민간위탁을 따로 규정에 분리하여 넣은 것은 1983년 1월 1일자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³⁾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와 지방선거로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밀려 나왔다.

<그림 1> 서울시 및 중랑구의 민간위탁 예산 증가 추이



출처 : 지방재정365

그러나 그동안 성장을 멈추어 있던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열악한 지방재정, 기술력 등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 능력 및 대응력의 총체적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민간시장 경제가 맡게 된 것이다. 즉 민간위탁은 시장원리와 경쟁을 추구하면서 효율성과 성과의 중요성 공공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예산절감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정부부문의 공공서비스의 독점적 생산과 공급 등 정부작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효율을 없애기 위하여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자유 경제적 경영기법에 의한 행정작용이 정부부문의 비효율에 대한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⁴⁾ 이에 더하여 1997년의 외환위기는 세계 각국이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의 비용절감과 공공성 증대 및 효율성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비켜 갈 수 없게 되었고 이후 김대중 정부가 민간위탁을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1998년 “정부의 자치단체 민간위탁 추진지침”에서 각종시설, 장비관리, 일반사무 등 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3) 김정해, 2019.8.26. 민간위탁에 관한 분석과 논의, 국회 공청회자료, 1p

4) 이효, 2009.12.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생산성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3p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6차에 걸쳐 적극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서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각 공기업을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와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 항목을 기준으로 총 13,028건의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진행 중에 있다⁵⁾

다. 민간위탁의 사회적 문제 및 이슈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일시적이며 책임성 약화 등 민간위탁에 대한 남용과 부작용에 따른 비판도 적지 않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민간위탁문제 사례에서 미국의 경우 이라크 전쟁시 용병의 인권침해 논란 및 과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정부의 공동화현상 등이 이슈화 되고 영국의 보호관찰 및 감독서비스 위탁을 수행하는 Serco사와 G4S사의 비용부당 청구 사건으로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성찰 계기가 되었으며⁶⁾ 영국 공공서비스 관련 연구기관 ASPE의 조사에 따르면 211개의 지방정부 중에서 73%가 인소싱을 고려하고 있고, 59%는 이미 일부 서비스를 인소싱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⁷⁾. 이는 서비스품질 개선이나 비용절감 효과가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결국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⁸⁾.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민간위탁 및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과 심지어 수탁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관측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직원의 인명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험의 외주화’ 등 민간위탁관련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경기 김포시가 3년 여간 안전사고만 100건이 넘는 김포도시철도의 재위탁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갈등이 이슈화된 바 있고⁹⁾ 서울시에서는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유사한 사무의 중복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들어서 민간위탁 운영관리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등¹⁰⁾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

5)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23. 전국지방자치단체 민간협업 사무운영현황1.

6) 김대인, 2019.5.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영국의 민간위탁 법제에 관한연구, 106~109

7) 최순영, 2019.12. 한국행정연구원.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방안, 188

8) 최순영, 2019.12. 한국행정연구원.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방안, 179

9) 서울신문, 2023.10.23.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안전성 우려에도 ‘5년 더’ 민간위탁운영

10) 헤럴드경제, 2022.8.30. 민간위탁관리지침 책으로 나온다

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¹¹⁾.

<표 1>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권고사항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대상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민간위탁 기본조례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9.1.15.)

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

2022년도 행정안전부의 민간 위탁 전수 조사 결과를 볼 때에도 수탁사무독점이 79%, 성과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민간 위탁사무 곳곳에 구멍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 위탁기준의 모호성과 시의회 미동의 등의 문제로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서울시의 경우 민간 위탁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이 56%에 그치고 나머지는 평가를 하지 않거나 향후 계획에 있는 등 44%에 달하는 많은 위탁사무가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¹²⁾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따져보고 원인을 실증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가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공급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1.15,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 6~16

12) 행정안전부, 2023.2.19, 정부사무 민간위탁 곳곳구멍 관리감독 부실 여전

2. 연구 목적

그간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많은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었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전수조사 결과나 감사원등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와 최근 언론에서의 꾸준한 문제제기는 민간위탁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민간위탁 제도의 핵심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대효과 또한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가. 민간위탁 사업의 비용 절감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더욱 정부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행정혁신의 한 방편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치단체에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면서 급속히 민간위탁이 지방행정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민간위탁 예산의 증가와 사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영역에 비용만을 지원해주는데 그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중랑구의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나. 민간위탁의 법령과 제도 보완

지방자치 이후 30여 년간 민간위탁이 증가하고 일상화. 제도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되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에서의 포괄적 위임등 민간위탁의 근거가 법리적으로 미흡하고 민간위탁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탁기관선정의 기준과 평가항목과 배점 등의 모호, 지도감독체계 미흡, 성과평가의 불공정성과 활용의 문제, 수탁기관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재계약의 제한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중랑구의 민간위탁의 법령과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코자 한다

다. 민간위탁의 운영과정 투명화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계약 방법, 수탁기관의 경쟁환경 여부, 관리감독 부실, 성과평가 미흡 등 다양하고도 우려할만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바 민간위탁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 시에는 수탁기관 선정 등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도

투명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민간위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라. 중랑구 민간위탁 문제점의 보완과 개선방안 모색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랑구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개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중랑구의 민간위탁실태를 관련 조례 등 법규와 제도, 담당 공무원 심층인터뷰와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자치구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민간위탁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절감과 지방자치의 효율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비용과 저효율로 행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거에는 폐기물 관리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민간위탁사무가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종합사회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아동키움센터, 장애인도서관, 건강가족센터, 청소년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계층과 사무 및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위임사무도 민간위탁 사무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하여 보육서비스를 폭넓게 공급하고 있어서¹³⁾ 영유아 보육법상 중랑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사무 민간위탁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가. 시간적 범위

2022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의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자료와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시에는 직전 5개년까지로 범위를 확장하여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의 직원, 시설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하되 중

13) 서울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 (seoul.go.kr)

랑구를 중심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타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 내용적 범위

민간위탁이론과 관계 법령 및 조례,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무, 중랑구 민간위탁실태 및 사업 특별조례 등 분석, 민간위탁의 위탁자와 수탁기관 등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 및 운영체계 정비와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라 연구기간 : 2023.7.1.~2023.11.30.(5개월)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자료조사, 비교분석과 민간위탁담당 공무원과 수탁시설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도 병행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지식포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문헌으로 국내외의 연구논문,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 자치단체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현황조사보고서와 그동안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각종 통계포털, 인터넷 뉴스포털 등이다.

둘째, 민간위탁을 보다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사례와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다.

셋째, 실증적 연구와 의견교환을 위해서 중랑구청의 민간위탁 담당자와 수탁기관의 직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위탁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였다.

넷째, 현장감 있는 연구를 위하여 중랑구 의회 정책연구회 의원과 함께 시설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아울러서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제3절 연구내용과 체계

1. 연구내용

가. 민간위탁 이론적 논의 및 관련 법규 검토

민간위탁의 개념적 이해와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계 법령과 조례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향후 중랑구의 민간위탁의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법규로서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그리고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사업특별조례의 규정내용과 우선 적용의 법리, 구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의 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나. 중랑구 민간위탁 현황 조사와 조례 등 법규 조사

중랑구의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과 이와 관련된 사업특별 조례 등 민간위탁과 관련 법규를 조사 분석하고, 사무유형, 위탁 형식 등 분류별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 운영과정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목적, 수탁기관 선정기준, 관리·감독 방안, 민간위탁 수행체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중랑구의 민간위탁사업을 청소년, 아동, 보육, 어르신, 장애인, 보육, 복지지원, 지역경제, 교육 등 분야로 분류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다. 민간위탁 관계자 개별 심층면접 및 이용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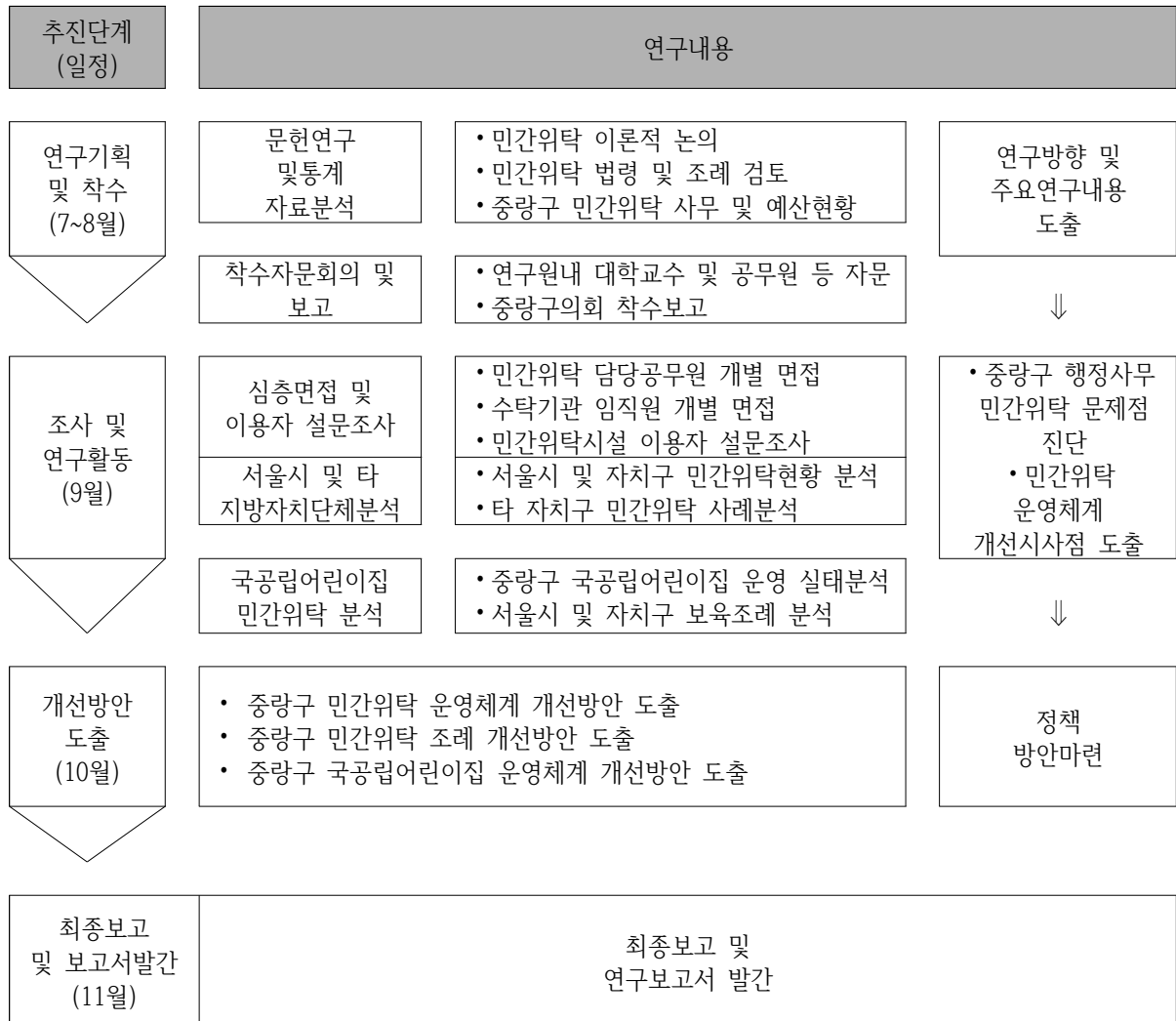
중랑구의 50개의 민간위탁 사무(1개의 민간위탁 담당 부서)중에서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분야별 담당 공무원과의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수탁기관 관계자와도 위탁기관과의 소통창구 활용, 인력운영의 어려움, 개선이 필요사항 등 수탁업무 전반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위탁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다각도로 조사하였다.

라.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민간위탁 조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 관련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도 그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랑구에 적요할 개선점을 도출한다. 아울러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업의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중랑구의 민간위탁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2. 연구체계

<그림 2> 연구체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논의

1. 민간위탁의 개념

정부의 공공서비스공급 방식은 크게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고 시

장경제 매카니즘에 의한 제공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영화와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는 정부업무나 공기업 자체를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공기업을 매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여 오던 것을 민간을 통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로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는 대신에 서비스 공급을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업 등 민간부분으로 이전하여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¹⁴⁾. 즉, 민영화의 하위개념으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생산 및 관리 기능의 일부만을 민간에 이전하여 수행함으로서 정부활동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다¹⁵⁾

<표 2> 민간위탁, 민영화 등 비교표

구분	정부직접생산	민간위탁	민자유치	민영화
서비스 내용의 규정 주체	정부	정부	정부	민간사업자
서비스의 구입자			일반국민 정부포함	일반국민 정부포함
서비스의 생산자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정부(일정기간 운영이후)	민간사업자
자본 자산의 획득·건설		정부		
자본 자산의 소유				

출처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현재 민간위탁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은 없으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이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로서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별·구체적인 사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법 및 개별 사업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제3항에서 민간위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도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4) 송광태, 2005.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7권 2호 (통권50호)

15) 문상덕, 2009.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과 자치행정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8(2):215~235

현재 정부 발의로 21대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민간위탁이란 대행, 용역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와 중랑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 등 특별법의 위임에 의한 「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민간위탁을 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조례 등에서도 민간위탁의 개념을 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종합해 볼 때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3> 위임과 민간위탁 비교

같은 점	차이점	
	위임	민간위탁
행정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수임·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함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 관계 간 발생)	법인·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 관계 간 발생)

출 처 : 서울시민간위탁지침, 2023

2. 민간위탁의 특성

민간위탁의 특성으로는 ①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소관사무 중에서 ②공공성·공익성 있고 ③시민의 권리 의무와 무관하며 ④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사무를 대상으로 ⑤능률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 하에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관 사무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

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무다

공공·공익성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대 구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단,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민간위탁 보다는 공공위탁 또는 직영이 바람직하나 사용수익허가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기대하여 행정 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적재 공급으로서의 수익 활동을 한다

비 권리·의무성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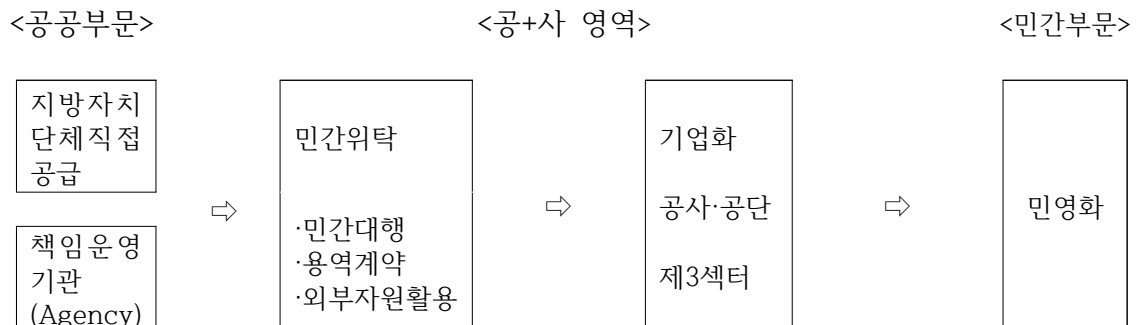
능률성·전문성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하며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 서비스의 전체 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반면 용역은 단순 지원 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경쟁가능성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민간위탁은 유효적절한 사업추진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경쟁가능성은 민간위탁의 필수적인 개념요소라기 보다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경우 실제 시장 경쟁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사업 추진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책임성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義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인 반해, 대행은 행정기관이 그의 명義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다

3. 민간위탁의 공공서비스의 위치

<그림 3>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위치



출처 : 행정자치부(2003)

제2절 민간위탁의 법령과 조례 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법체계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유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법률에서 위임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와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사회복지, 여성의 보육,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다문화가족지원 등 복지사무는 사회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해당 사업조례에 의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법령에서 민간위탁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회입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체계로 볼 때 시행령이 개별 법률에 우선하는 법리적 모순이 있어서 속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표 4> 민간위탁 법체계

구분	법규명	조항	내용
국가	헌법	제96조	법률에 위임
	정부조직법	제6조	국가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민간위탁 기본법
		제10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민간위탁 정의
		제11조	민간위탁 기준
서울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민간위탁의 목적
		제2조	민간위탁 정의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내 각 도서관 설치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위탁의 목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법령과 조례

가.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 개별법 및 관련조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개별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을 기본규범으로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규범으로서 사회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아이돌봄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치매관리법, 정신건강증진법등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특별법에서 개별 위탁사무를 정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등)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시설형 및 자립형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간위탁의 계약 절차는 국가사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에 관한 법률절차·방식, 예산집행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이 추진된다

<표 5>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구분

■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구분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은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는 실무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용어 대신 시설형과 자립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구분	민간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시설형, 자립형)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개념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하는 것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법적책임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계약방법	공개모집 원칙, 예외적 수의 가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무별 개별조례)	공개모집 원칙, 예외적 수의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간	3년 이내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함)	5년 이내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 이내로 함)
계약방법	공개모집, 예외적 수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별조례)	공개모집, 예외적 수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운영지원	예산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예산지원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자 재위탁 가능여부	일부에 대해 시장 승인시 가능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시설형(자립형)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는 시설형(자립형)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3년 이내로 하여 사무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출처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

마. 사업 특별법

민간위탁에 관한 사업 특별법으로서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이 외에 중랑구의 민간위탁 관련 특별법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 「양성평등법」,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정 지원법」, 「영유아보육지원법」, 「대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 「정신건강증진법」,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이 있다.

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현행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에서 민간위탁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라 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민간위탁”이란 각종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51호)

구분	내용	근거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추진 체계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영 제11조 제2항
대상 사업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영 제11조 제1항
수탁 기관 선정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영 제12조 제1항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영 제12조 제2항
업무 위탁 방법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영 제13조 제1항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 제13조 제2항
사후 관리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영 제14조 제1항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영 제14조

있다.	제2항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영 제14조 제3항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 제14조 제4항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영 제16조 제1항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16조 제2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2020.9.18.일 입법발의되어 현재 국회(행정안전상임위)에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민간위탁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제정안은 ① 민간위탁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② 수탁기관을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게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도 공개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③ 위탁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④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조항	제목	주요내용
제8조, 제9조	민간운영위탁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민간위탁 기본계획수립, 관계장관은 소관사무 시행계획작성 행안부에 제출
제4조, 제6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설치	· 행안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본계획수립, 운영상황평가 결과심의, 개선행령권고) · 위탁기관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수탁기관선정, 재계약결정, 성과평가 결과, 존속기한연장등 심의)
제11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 법정위탁을 제외한 수탁기관선정은 공개모집원칙, · 다만,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특수성,등으로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 민간위탁사무

		가 국민생활과 밀접한관계가 있어서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는 모집대상을 제한가능
제13조 제17조	계약체결, 재계약	. 계약체결기간, 내용, 감독, 평가, 재 위탁 등에 관한사항 . 재계약시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 가능
제25조	정보공개	.위탁사무명칭,근거,수탁기관,위탁기관등 현황 공개가능
제18,19조 제20조	관리감독,감사,성과평가	.수탁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감사 가능 .위법.부당 업무시에는 시정조치 및계약해지,관계자징계요구가능, .위탁기관은 계약만료90일전까지 성과평가 실시
제21조	종합평가	. 행안부장관은 각 부처의 시행계획, 관리 감독, 평가등 운영상황을 연1회 평가 실시 및 운영위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 . 필요시 점검 및 평가실시후 결과에 따라서 시정권고 등조치가능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번호 2105422)

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는 2022년 8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절차 상세, 민간위탁 사무관리, 주요 질의 및 답변, 감사 등 지적사례에 이르기까지 관리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 기준으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표 8>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분류

구분	착안 사항
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관리, 보건, 한센병 관리
문화시설	체육시설관리, 박물관·도서관·회관 관리 학습원·소극장·공원 관리 연수원·수련원·학사 관리
산업업무	에너지·기자재 업무 소규모 공사 관리 산업, 자동차, 선박 등
상·하수도 등	상·하수시설 관리

	쓰레기 업무
기타	판매대, 판매기 관리 교육, 대회, 보상업무 등

출처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

3.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랑구의 민간위탁은 「서울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조례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업특별조례인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중랑구 양성평등조례」, 「서울시 중랑구 보육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근거로 하여 위탁사무가 수행된다. 관련하여 본 사업특별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 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동 일반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특별조례를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는 각 지역의 자치여건과 개별법에서 추구하는 특수성을 두루 감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맞도록 자치단체의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적용하거나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위탁은 관련 규정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를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사무의 기준의 수립 및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무분별한 민간위탁의 지양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간위탁 추진,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대상사무의 기준, 지휘·감독 및 처리사항의 감사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4. 중랑구 사업특별조례와 위탁사무

가. 사업특별조례

「서울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소년과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보육, 아이돌봄 등 중랑구의 사회복지 사업의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서울시 중랑구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거로 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별로 사업특별조례에서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 중랑구의 민간위탁 관련 사업특별조례는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중랑구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 사업특별 조례가 15개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내 각 도서관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나. 서울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랑구의 사업특별조례는 청소년 육성사업, 초등학생 돌봄사업, 근로복지 시설운영, 보육사업, 치매안심사업등 대부분이 지역 사회의 복지사무에 대한 위탁사무가 대부분으로 이의 위탁사무에 근간이 되는 기본 조례 성격의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복지 관련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지원시설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서 개별 복지 사무와 관련 조례의 적용에 근간이 된다. 본 조례에서는, 명칭과 위치, 적용범위, 사업,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신청 및 자격, 수탁자의 선정 및 선정위원회, 수탁자의 의무와 감독, 위탁의 취소와 손해 배상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3절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1.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기준(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무 중에서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고(동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외국과의 경제·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상 사무로 정하고 있다(동 조례 제6조). 이와 같은 위탁사무는 민간의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거나, 비영리 단체를 통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적 기능을 담보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때보다 더 기능이 활성화되며 민간이 더욱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검사, 조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인 것이다.

나. 민간위탁의 제한 영역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위탁 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위탁” 용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 등

2. 민간위탁의 유형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민간위탁의 유형으로 크게 예산지원형, 자립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예산지원형에는 시설형 위탁과 사무형 위탁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범위인 중랑구의 민간위탁사무가 대다수 예산지원형이므로 시설위탁형과 사무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가. 시설형 위탁

행정재산(중랑구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키움센타 운영, 건강가정센타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커뮤니티센타, 종합복지관등 각종 복지시설 운영사무 등의 위탁 업무로서 시설형 위탁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물(행정재산)의 운영관리 위탁이 수반되므로 민간위탁 조례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 등의 시설을 서울시가 무상 임대하거나 보증금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시설을 임차해 전세권

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위탁범위에 시설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시설형으로 분류되 표준협약서는 사무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비용에 충당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계상이 가능하다(인센티브 협약체결시) 다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위탁사무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앞서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나. 사무형 위탁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위탁형태로서 예를 들면 산학연 협력지원, 에이즈 예방 홍보 등의 사무가 있다.

제4절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1. 민간위탁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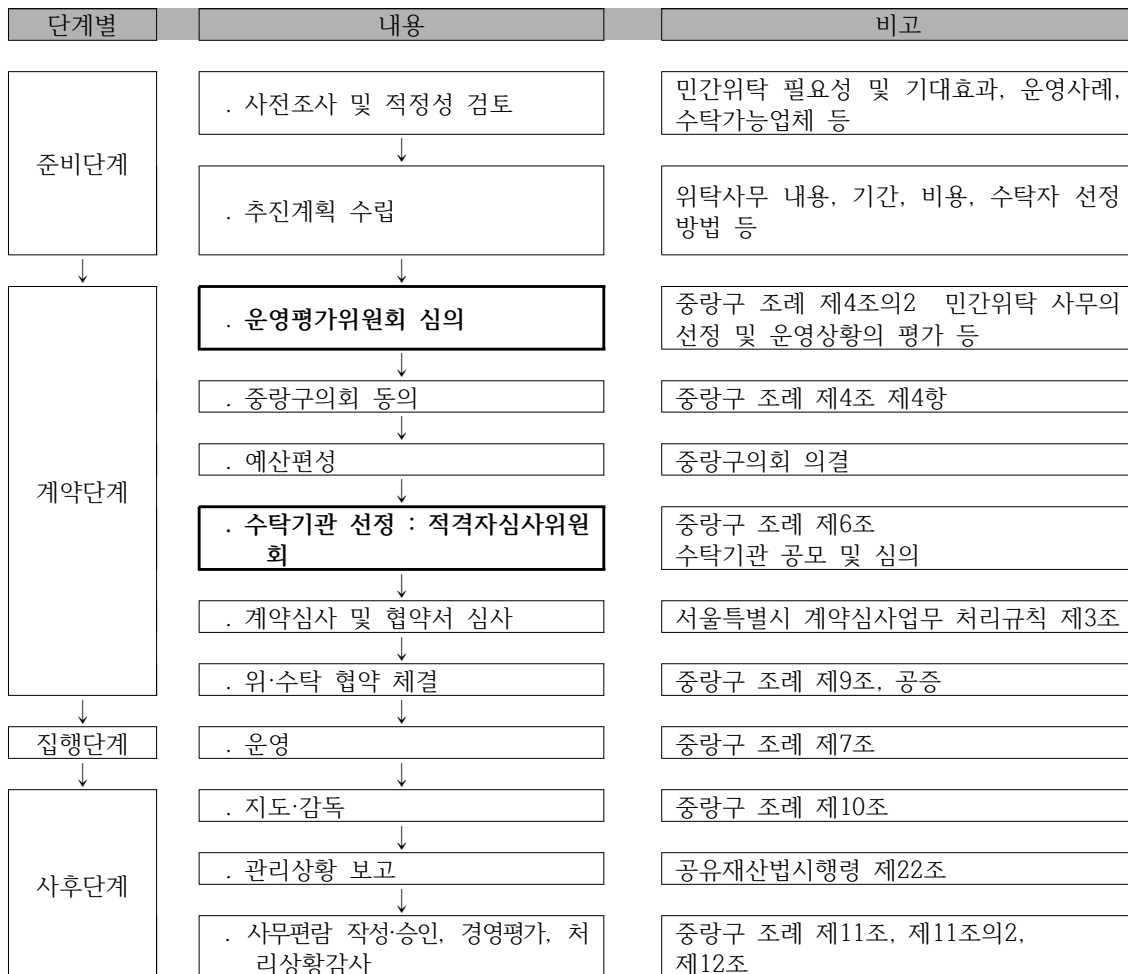
신규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최초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수탁자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어떤 양질의 민간단체 등을 수탁자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1항에서 신규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탁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년)은 민간위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2. 민간위탁 추진과정

①준비단계 ⇨ ②계약단계 ⇨ ③집행단계 ⇨ ④사후단계로 구분하고 준비단계 :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계약단계 :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 구의회 동의, 예산편성 및 의회 의결, 수탁기관 공모 및 심의,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집행단계

: 운영, 사후단계 : 지도점검, 경영평가, 감사, 재계약 등으로 진행된다

<그림 4> 신규위탁 공모절차



출처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

3. 대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서 시장은 제4조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공공성 측면은 대상 사무의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 공급 서비스의 지속성, 서비스 중단에 파급효과 등을 효율성 측면은 민간의 전문성 정도, 경제적 효율성,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표 9>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분석기준

분석기준			분석내용
공공성	공공서비스 특성	사무근거규정 (근거 법령)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무로서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사무(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인지 검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
		서비스 중요성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송파구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공공성이 강한 사무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 추진 가능
		서비스 수혜대상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시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시민인지 또는 전 시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서비스 공급의 대체 가능성 등
효율성	민간위탁 효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가능성 등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민간위탁 조건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관리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가능성, 서비스 공급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출처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

제5절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1.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적자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 없게 되어서

국가의 재정을 재정적자의 보전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지출증대에 충당할 수 있게 되고, 적자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 없어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이상일, 2016). 또한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행할 유인을 갖지 못하는 것이 공기업 비효율의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간위탁을 통한 공기업으로 국가 시설 소유권의 민간 이전은 왜곡된 소유구조를 바로 잡고 시장 기제에 의해 관리 운영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작지만 강한 정부의 실현

공공부문의 지나친 성장은 재정위기와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왔고, 나아가 과도한 정부개입에 따른 민간기능의 상대적 위축과 국가경영의 한계 노출 등 정부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규모 자체가 지양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작은 정부의 논리가 새로운 인식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작은 정부의 개념이 의미하는 정부의 ‘크기’에는 명목적인 크기로서 예산·인력·조직과 함께 영향력 행사의 범위와 방법 등 실질적인 크기도 포함되므로, 정부기능으로 남겨야 할 분야와 민간으로 이양하여야 할 분야를 먼저 구분하여 정하고 이후에 민간으로 이양할 부분에 대하여 정부 조직의 효율성 향상과 정부 영향력의 축소 등을 위한 방편으로서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불필요한 사업조직의 이양 즉, 민간위탁인 것이다.

3. 지역주민의 서비스 소비기회 확대

중앙집권적인 국가 단위의 서비스 공급은 일방적이고도 집권적이므로 지역주민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여 다양성을 결여하게 되고 또한 개인 선호의 무시 등으로 이어져서 선택의 폭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 문제는 도시화와 지방화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고도화에 의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민간위탁은 정부 영역을 확대해 주며, 민간영역에서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일반적으로 배분이 더 공정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게 하고 생산자 위주의 공급에서 소비자 위주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체계를 전환함으로써 소비자로서 지역 주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게 되고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 강화와 자치행정의 합목적성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

제3장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실태 분석

제1절. 민간위탁 사업 및 예산현황

1. 민간위탁 사업현황

중랑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분석은 중랑구청 및 중랑구의회 자료와 예산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업자료, 서울시 및 자치구 정보포털, 지방재정365, 자치법규정보센타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 및 분석을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위탁금(307-05) 및 민간위탁사업비(402-03)의 합으로 정의하고 사업분야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2023)¹⁶⁾의 성질별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정리를 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예산 등 재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재원으로 그 용도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방교부금, 재정보전금과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그 목적이 특정되어있는 국고보조금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2023년 중랑구의 민간위탁 사업과 예산, 수탁기관 및 기간, 사업비 등 위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 중랑구 민간위탁 현황

구분	사업명	수탁기관	기간	사업비 (천원)	최초 위탁일
11개 분야	50개 사업	50개기관		26,430,000	
청소년분야 (아동청소년과 ,10개)	청소년 독서실운영	중랑구 사회복지 협의회	2022~ 2024	610,584	2006
	청소년안전망	한국청소년 연맹	2021.7~ 2024.6	378,244	2013.1.1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	중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021.1~ 2023.12	167,114	2015.4.28

16) 행정안전부,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지침 제6조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2호점)	1318상상 발전소	2023.5~ 2025.4	78,333	2021.5.1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3호점)	희망 나래유스	2022.10~ 2024.9	122,000	2022.1.1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4호점)	1318상상 발전소	2023.4~ 2025.3	133,000	2023.4.1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5호점)	희망 나래유스	2022.10~ 2024.9	87,500	2022.10.1
	민간청소년 커뮤니티공간	1318상상 발전소	2023.1~ 2023.12	82,126	2019.8.1
	민간청소년 커뮤니티공간	희망 나래유스	2023.1~ 2023.12	77,689	2019.8.1
	만간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서울 예술학교	2023.1~ 2023.12	38,400	2019.8.1
아동분야(아동 청소년과,5개)	우리동네키움 센터(신내동)	휴먼해피	2019.11~ 2024.11	467,000	2019.11.20
	우리동네키움 센터(묵동)	여명 복지회	2020.11~ 2025.11	658,000	2020.11.2
	우리동네키움 센터 (면목4동)	중랑구사회복지 회	2021.11~ 2026.11	734,500	2021.11.10
	우리동네 키움센터 (면목7동)	운가 자비원	2022.4~ 2027.3	747,600	2022.4.1
	우리동네 키움센터 (망우본동)	행복나눔 문화재단	2022.4~ 2027.3	747,600	2022.4.1
어르신분야 (어르신복지과 ,4개)	노인종합 복지관(신내)	영안 복지재단	2019.3~ 2024.3	1,381,285	2008.10.6
	경로복지센터	자광재단	2022.1~	464,784	2008.4.4

	(중화)		2026.12		
	경로복지센터 (용마)	신망애 복지재단	2022.10~ 2027.9	514,892	2014.10.1
	경로복지센터 (신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023.3~ 2028.3	396,881	2018.3.1
장애인분야 (장애인복지과 ,5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	2023.1~ 2023.12	742,300	2007.4.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성민 사회복지법인	2022.1~ 2024.12	571,000	2019.4.22
	장애인가족 센터운영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2022.10~ 2025.9	207,390	2022.10.1
	중랑구립직업 재활센터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2022.4~ 2027.3	144,628	2002.4.1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사업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 타	2022.1~ 2024.12	187,660	2008.1.1
보육분야 (보육지원과,6 개)	중랑구성평등 활동센터	초록상상	2022.3~ 2024.12	260,070	2022.3.15
	아이돌봄지원	비전공유 협동조합	2021.7~ 2024.6	3,824,490	2018.7.3
	가족 지원센터운영	사)일일시호	2022.10~ 2025.9	1,381,000	2022.10.1
	구립직장 어린이집운영	유린 보은동산	2023.1~ 2027.12	952,881	1997.6.1
	육아종합지원 센터운영	서일 대학교	2022.11~ 2025.11	830.100	2010.10.1
	장난감 도서관 운영 (1,2,3호점)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2021.6~2 02.6 (1,2호) 2022.11~ 2025.11 (3호)	453,733	2009.6.24. (1호) 2010.11.24. (2호) 2022.11.8. (3호)
보건분야 (보건행정과 2개,	길고양이 보호	사랑이있는 동물병원	2022.1~ 2023.12	120,000	2022.1.1
	유기동물	한국동물구조	2002~	49.716	2002~

위생과1개)	보호지원	관리협회	현재		
	어린이급식 관리센타운영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1~ 2024.12	600,000	2019.9.1
의료분야 (건강증진과2 개 의약과1개)	건강증진 복지센타	서울 의료원	2022.1~ 2024.12	1,380,407	2010.1.1
	치매안심센타	서울 북부병원	2023.1~ 2025.12	1,600,000	2009.9.29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3~ 2023.12	69,430	2008.6.1
복지정책과 (복지지원분야 ,5개)	종합복지관 운영(면목)	자광재단	2022.12~ 2027.12	1,108,126	1992.1.14
	종합복지관 운영(신내)	애원 복지재단	2018.12~ 2023.12	1,199,096	1995.12.20
	종합복지관 운영(시립대)	서울시립 대학교	2019.7~ 2024.6	1,107,926	1996.12.18
	푸드마켓. 뱅크센타운영 (중랑)	서울지체장애인 협회(중랑지회)	2022.11~ 2027.11	181,996	2005.12.22
	푸드마켓. 뱅크센타운영 (면목)	중랑구 사회복지협회	2022.11~ 2027.11	107,985	2020.4.20
교육분야 (교육지원과, 3개)	공공급식센타	주)복지유니온	2022.4~ 2023.6	734,553	2019.4.1
	중랑 아카데미운영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2023.4~ 2024.12	20,000	2022.4.1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타	(주)달꿈	2023.1~ 2024.12	305,800	2021.1.1
지역경제분야 (기업지원과 1개 지역경제과 1개)	패션봉제공용 장비실 운영	한국봉제 산업협회	2023.1~ 2024.12	220,000	2021.11.15
	노동자종합 지원센타	민주노총 중랑지부	2022.9~ 2025.8	371,318	2019.9.1
기타분야 (마을협치과1 개, 체육진흥과 1개, 공원녹지과 1개, 교통행정과	마을지원센타 운영	중랑 마을넷	2023.1~ 2025.12	252,860	2020.1.1
	인공암벽장	서울 산악연맹	2023.4~ 2025.12	171,964	2015.10.22
	어린이공원 정비및유지관리	대한노인회 (중랑지회)	2021.1~ 2023.12	266,000	2008.7.1
	자전거교통 안전체험장	중랑구 체육회	2023.3~ 2026.2	25,327	2017.2.27

1개)					
-----	--	--	--	--	--

출처 : 중랑구청 자료, 중랑구청 예산서(2023)

민간위탁의 사업수는 총 50개이며(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보육 사업 67건별도) 사업 분야별 위탁 현황은 청소년이 10건으로(20%) 가장 많고 아동이 5건으로 10%, 어르신이 4건, 장애인이 5건, 보육분야가 6건(12%)이며 보건과 의료가 각각 3건씩이고 종합복지관 등의 복지지원 분야가 5건, 교육이 3건, 지역경제 2건, 자전거 안전체험장 운영 등 기타가 4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중랑구 민간위탁 분야별 사업현황



출처 : 중랑구 예산서(2023),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23)

2. 민간위탁 예산 현황

민간위탁 예산은 총 27,335백만원으로서 보육 분야가 7,702백만원으로 2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동 분야가 3,355백만원(12.6%), 복지지원 분야가 3,705백만원(14%), 아동 분야가 3,355백만원(12.6%, 의료분야가 3,050백만원(11.5%), 어르신 분야가 2,758백만원(10.4%), 장애인 분야가 1,853백만원(7.0%), 청소년 분야가 1,775백만원(6.7%), 보건 분야가 770백만원(2.9%), 지역경제 분야가 591백만원(2.2%), 기타가 716백만원(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민간위탁 분야별 예산

(단위 : 건, 백만원)

분야	계	청소년	아동	어르신	장애인	보육	보건	의료	복지 지원	교육	지역 경제	기타
위탁 건수	50 (100%)	10 (20%)	5 (10%)	4 (8%)	5 (10%)	6 (12%)	3 (6%)	3 (6%)	5 (10%)	3 (6%)	2 (4%)	4 (8%)
예산액	27,335 (100%)	1,775 (6.7%)	3,355 (12.6 %)	2,758 (10.4 %)	1,853 (7.0%)	7,702 (29.1 %)	770 (2.9%)	3,050 (11.5 %)	3,705 (14.0 %)	1,060 (4.1%)	591 (2.2%)	716 (2.7%)

출처 : 중랑구청 자료, 중랑구청 예산서(2023)

3. 최근 5년간 민간위탁예산 현황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중랑구 민간위탁 예산의 추이를 보면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예산의 비율은 2019년 4.5%에서 2023년 4.7%로 0.2% 증가하였고 금액은 29,847백만원에서 48,157백만원으로 18,310백만원 증가되어 38.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2> 최근 5년간 중랑구 민간위탁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총예산	민간 위탁예산		
		소계 (총액대비 비율)	민간위탁금 (307-05)	민간위탁사업비 (402-03)
2023	1,016,270	48,157 (4.7%)	47,849	308
2022	905,064	40,396 (4.4%)	40,076	318
2021	807,000	38,270 (4.7%)	37,960	310
2020	753,846	35,311 (4.8%)	35,311	777
2019	667,560	29,847 (4.5%)	29,396	451

출처 : 중랑구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서(2019~2023)

예산항목별로 민간위탁금(307-05)이 2019년 29,396백만원에서 2023년 47,849백만원으로 18,453백만원이 증가하여 38.5%의 증가율을 보였고 민간위탁사업비(402-03)가 2019년 451백만원에서 2023년 308백만원으로 143백만원이 감소하여 46.2% 감소하였다.

제2절 민간위탁 단계별 운영실태 분석

1. 사전준비단계

가. 위탁사업별 적용근거

중랑구의 민간위탁 관련법령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규범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이의 위임에 따른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위탁 근거 조례별로 보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가 4건이고 사회복지법 등 특별법과 사업특별조례에 의한 사무가 40건으로 이중에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13건의 민간위탁사무를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4건,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3건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도농상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조례, 영유아보육및지원조례,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강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각 1건씩이고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및 중랑구 동물복지조례가 2건을, 정신건강증진법 등 6개의 특별법에 6건의 사무가 위탁 추진되고 있다.

<표 13> 위탁의 적용근거

구분	중랑구		특별법
	민간위탁 조례	사업특별 조례	
조례건수	1	20	6
사업수 (100%)	4 (8%)	40 (80%)	6 (12%)
비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 복지법 등

출처:중랑구청 자료,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중랑구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로 적용되고 있는 조례는 총 21개로서 민간위탁 일반조례가 1개, 개별사업조례가 20개(서울시 동물보호조례1개)이다. 이처럼 중랑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는 i)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보다는 사업개별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80%(50개중 40개사무)로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위탁사무가 사회, 복지, 문화, 양육, 돌봄, 치매 등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행정사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 민간위탁 조례로서 대응하고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환경과 제반여건 및 사업별 특성에 맞는 조례를 별도로 정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표 14> 민간위탁 관련 조례 현황

구 분	조 례 명	위탁 사업수
계 (21개)	중랑구 민간위탁조례(1개) 중랑구 개별조례(20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50
중랑구민간 위탁조례 (1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중랑구 개별조례 (20개) *개별특별법 위임에 따른 조례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도농상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1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근로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1
	양성평등조례	1
	아이돌봄조례	1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1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	3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1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정신건강 증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1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조례	2
특별법 (6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편의등 증진법, 발달장애인 권리 및 보장에 관한 법 지역보건법,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6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은 지방자치법과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노인, 장
애인, 여성, 청소년 등 복지시설 i)교육, 교양체육 공원 등 사무 ii)문화예술 및 관광

운영 사무 iii)보건, 건강증진 시설운영 사무 iv)환경기초시설, 교통관계시설 청소경비 및 시설관리, 외국과 교류 등의 업무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 키움센터 운영 및 여성의 보육, 청소년시설, 어르신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등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복지관련 사업으로 대상 사무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4건의 위탁사무 외에 20개의 사업특별조례 및 각 특별법에 따른 46개의 위탁사무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 제5조 1항에서도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로 구체적으로 위탁사무의 범위에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대상사무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공급현장에서 혼동을 미리 예방하고 또한 민간위탁 목적과 내용에 합당한 수탁기관의 전문성 도모로 위탁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합목적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2. 수탁기관 선정단계

가.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 및 지표체계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기술보유정도,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수탁기관 기능과 업무 연관성,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 및 배점 또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탁능력 보유상태, 공신력 및 책임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통상 20점을 배점 한도로 하되 전체 배점의 30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정성적 평가 분야는 기술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상호협력단체,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 등 배점 한도를 60점으로 하고 고용안전성 항목을 정성평가 점수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배점 부여토록 하고 있다

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평가항목 간 평가항목을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를 탄력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 비율의 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성적 평가배점 비율을 50점 이하로 하고 정량적 평가 배점을 30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수탁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정성적인 평가의 한계를 계량화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서면 위주의 정성적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관적 평가를 객관

화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의 보완, 그리고 계량적 평가 분야의 배점 확대를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평가지표와 배점을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에 공시한다면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

중랑구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 20건(40%)으로 가장 많고 5년이 16건(32%), 2년이 7건(14%), 2년 이하가 7건(14%)로 나타났고,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에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개최에 있어서 신규 수탁기관 선정 안건이 27회(54%) 개최되었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한 안건이 21회(42%)가 열리고, 적격심사만 판단기 위한 심사가 1회 및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1건이 있었다.

<표 15> 민간위탁 사업기간

구분	2년이하	2년	3년	5년
50건 (100%)	7 (14%)	7 (14%)	20 (40%)	16 (32%)

출처 : 중랑구청 자료

아울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해당 자치구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인력이나 재정부담 능력, 시설 및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토록 하고 있으며 의회동의 등 절차를 거쳐서 선정결과를 자치구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하여 중랑구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에 달하는 사업 특별조례 및 특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준거 법규에 의거 위탁사무의 성격과 가치 및 사업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각기 조례에서 정하는 문서양식과 사업계획서, 해당분야 전문가와 일정비율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랑구 총 50건의 위탁사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신규위탁이 27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재위탁과 재계약을 위한 위원회 개최가 42%에 달하는 21건으로 나타났다. 위탁사무 50건 중 1개의 수탁기관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로 서일 대학교에서 중랑 아카데미와 육아종합센터,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랑구 사회복지사협회가 장난감도서관, 우리 키움센터 운영,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3개 사업의 운영,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 나래유스가 각각 청소년 커뮤니티 2개소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각 위탁사무의 서비스 대상이 아이와 어린이, 청소년, 어른으로 서로 다르고 또한 수탁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이나 기술 역량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서비스 대상을 그에 합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에게 참여의 기회가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탁기관이 여러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방법과 평가체계의 제도적인 보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있는 기관들의 민간위탁 시장에 진입을 가로막아 한 개의 수탁기관이 독점적인 수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서 위탁의 목적도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하겠다.

<표 16>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운영

구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운영			미운영
	신규위탁기관 선정	재위탁(재계약)의결	적격심사	
50건 (100%)	27건 (54%)	21건 (42%)	1건 (2%)	1건 (2%)

출처 : 중랑구청 자료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위원들의 구성과 임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 사례의 경우처럼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관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심사위원의 제청, 기피, 회피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계약 및 운영단계

가. 낙찰자 선정 및 계약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 중랑구는 적격심사 낙찰이 40건으로 80%를 차지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 2건과 최저가 낙찰이 1건, 해당 사항 없음이 3건, 기타가 4건으로 나타났다. 위탁자의 선정은

입찰 참가자의 가격수준을 기초로 하여 위탁사무 운영기관의 재정능력과 기술력, 수탁참여 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수탁사업의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보편적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량지표인 가격항목은 평가의 신뢰도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책임성과 공신력 등 정성적인 지표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량화 지표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7>낙찰자 선정 방법과 현황

낙찰 방법	적격심사 낙찰	협상 계약	최저가 낙찰	해당없음	기타
건수 (100%)	40 (80%)	2 (4%)	1 (2%)	3 (6%)	4 (8%)

출처 : 중량구청 자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계약체결 등 위탁사무의 운영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계약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기간,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민간위탁 기간은 조례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40%에 달하는 20건의 위탁사무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위탁사무도 16건으로 32%에 달한다. 이는 50건의 민간위탁사무 중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무인 관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기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고 또한 사회복지사무의 위탁이 사무형이 아닌 시설유형이므로 민간위탁의 사무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권한도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계약체결 한 것으로 개별 특별법에 의거 위탁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탁기관의 고용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운영 매뉴얼에서 고용연령과 장애인 및 남녀 간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신규직원 채용시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일정한 범위 내 가족은 반드시 공개채용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승계 가이드 매뉴얼에 따라서 각 위탁사업 계약 신규직원은 공개채용하고 기존 수탁기관 근무 직원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다. 16개 위탁사무는 공개채용과 고용승계를 동시에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고 노동법 준수를 계약서에 넣기도 하지만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사무도 10여 건이나 된다. 여하튼 위탁사무의 최 일선에서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수탁자는 그 기관의 직원이므로 다양한 경로를 열어놓고서 인재를 유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주민의 서비스 접점에서 위탁사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때에 양질의 고급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이고도 투명하게 수탁기관의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을 하여야 하겠다.

나. 예산집행과 운영, 이행보증 및 정산

수탁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과 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계약의 내용대로 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 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지역현장에서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수탁기관 직원의 마인드와 태도에 따라서 해당 공공 서비스를 접하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좌우되기에 직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고용 안정을 도모할 때에 성공적인 민간 위탁이 될 것이다. 먼저 민간위탁의 회계는 지방재정법과 소관사업 조례 재무, 회계규칙 그리고 보조금 조례 등을 준수해야 하고 매년 1월에서 12월을 회계연도로 하는 마감과 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매뉴얼에 따라서 수탁기관 직원 공개채용과 고용승계 등 노동법령 준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근로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지방재정법」과 「중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시의 민간위탁 예산, 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각 사업별 조례 등에 따라서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토록하고 있어서 대다수 위탁사업이 본 법령에 따라서 편성되고 집행한 후에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정산 및 잔액을 반납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2개의 위탁사무는 정산과 반납에 대하여 언급이 없기도 하다. 또한 사업비의 정산에 있어 대부분 사업이 자체 정산 및 해당 정산서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검토와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체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43건(86%)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전문회계 감사기관 등에 이행 또는 위임하여 정산하는 위탁사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7개의 사무는 정산조차 시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표 18>사업비 정산방법

구분	자체정산· 반납 및 위탁자 승인	전문회계기관 감사	정산 미실시
50건 (100%)	43건 (86%)	-	7건 (14%)

출처 : 중량구청 자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탁기간 동안 위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과 환경 및 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에 의견차이 등으로 당초의 계약을 원안대로 이행하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치로서 이행강제 및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계약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 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전체 50개 위탁사무 중 총사업비의 10%이상의 보증담보범위를 정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10건(20%)이고 보증담보 범위 없이 이행보증증권만을 제출토록 하는 경우가 14건(28%)이며, 아예 이행보증증권 제출 등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26건(52%)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52%에 달하는 위탁사업이 이행의 보증 장치 없이 위탁되고 있는바 위탁환경의 변화와 수탁기관의 자부담능력 부족 등 수탁능력이 불능 상태가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위탁행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의 이행 보증장치는 빠짐없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9>계약이행보증 방법

구분	계약이행 보증증권		이행보증장치 없음
	총사업비 10%이상 이행보증증권	이행보증증권	
50건 (100%)	10건 (20%)	14건 (28%)	26건 (52%)

출처 : 중량구청 자료

4.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

가. 수탁업체 지도, 감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위탁 주체로서 행정기관은 지도 및 감독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탁업체는 협약서의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중량구는 ‘중량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지휘, 감독을 해야 하며 i)구청장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필요시에는 수탁기관에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고 아울러 각종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와 검사 및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또한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에는 시정요구나 직접 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전체 위탁사무 중에서 60%에 달하는 30개 사업이 지도감독에 대한 연간 횟수를 강제를 하지 않고 필요시에 한하여 지도감독권을 행

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연간 2회 이상 지도감독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처럼 연간 2회의 지도와 감독을 하는 가 하면 반면에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민간위탁 지도감독 실태

구분	연간 1회 이상	연간 2회 이상	필요시 지도감독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평가 실시	지도감독 미 실시
50건 (100%)	18개 (36%)	1개 (2%)	30개 (60%)	1개 (2%)

출처 : 중랑구청 자료

이와 같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수탁업무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조례 제8조에서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지도감독의 중점 방향과 세부 점검항목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 및 공유할때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재계약(재위탁)과 수탁기관의 독과점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에서는 당초 계약 이후에 재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독점 예방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재계약(재위탁)의 제한을 정하고 있다. 재계약은 횟수와 최장 수탁기간에 제한을 두어서 하나의 수탁기관이 여러 개 혹은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여러 개의 위탁사업을 독점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재계약(재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원칙적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이에 따른 재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5에 의거 횟수를 1회에 한하여 제한하고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사목에 의거 최장 수탁기간의 제한으로 동일 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 할 수 없으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지침에 부기하여 민간위탁 유형별로 시설형 및 자립형은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 2회 이상 재계약 가능하되,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무형은 2회 이상 연속하여 재계약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재계약 사유서를 市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21>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한기준

구분	시설형 및 자립형	사무형
위탁기간	3년 이내(민간위탁조례 제11조) .다른 법령·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재계약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사목
재계약 제한	재계약 1회에 한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 할 수 없으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출처 : 서울시민간위탁관리지침(2023)

민간위탁 사무는 하나의 법인·단체 및 개인이 그 전문성을 살려 하나의 위탁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나의 수탁기관이 여러 개의 수탁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일대학교의 중랑 아카데미, 육아종합센터, 어린이급식센터운영, 진광재단의 종합복지관, 중화복지관 운영,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 마켓·뱅크 운영, 장난감도서관, 키움센터, 청소년독서실 운영, 1318상상발전소의 청소년커뮤니티 3개소 운영, 희망나라 유스의 청소년커뮤니티 3개소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기관이 여러 위탁사무와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점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의 복지법인이 여러 개의 민간위탁을 독과점할 경우 법인이 비대화될 것이고 그 비대화는 비능률과 비효율을 넘어서 과도한 조직과 인력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수탁자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하기에 많은 장애를 안게 되어서 본래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규모의 경영과 관리, 전문성과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독과점식 수탁운동을 지양하고 가급적 1~2개 이내에서 법인설립 목적과 능력에 맞는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표 22>재위탁과 재계약시 성과평가활용

구 분	성과평가 결과반영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
-----	-----------	-------------

사업수	14	36
비율(100%)	28%	72%

출처 : 중랑구청 자료

다.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서 민간위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민간의 효율성에 힘입어 정부의 비능률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중랑구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18건(36%)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64%에 해당하는 32건은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성과평가를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8건으로 16%에 그치고 있다.

<표 23>성과평가 실시

구 분	성과평가 실시	성과평가 미실시
사업수	18	32
비율(100%)	36%	64%

출처 : 중랑구청 자료

아울러 협약의 해지만 정하는 경우가 15건(30%)이고 33건(60%)은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의 해제 둘 다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2건은 해지 등을 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비능률과 비효율에 대하여 경제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폭넓게 국정 전반에 걸쳐서 활용해 왔고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그다지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4>계약의 해지 및 취소

구 분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계약의 취소	규정없음
50개 (100%)	15 (30%)	33 (66%)	-	2 (4%)

출처 : 중랑구청 자료

또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사례가 64%로 32건에 달하는 것을 보더라도 민간

위탁을 통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다소 소극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고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20%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결과를 재계약이나 재위탁 등에 연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후 사장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민간위탁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사료 된다. 향후 성과평가 결과의 일정비율을 재위탁이나 재계약 등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연계 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에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은 물론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민간위탁 실태분석

1. 영유아 보육사무 개념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육”으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⁷⁾. 또한 서울시 보육조례(제2조)에서도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중랑구의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보육의 개념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며 구청장이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중랑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¹⁸⁾.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시행령과 규칙, 조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린이집은 보호자로부터의 위탁을 통해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영유아에 대한 건전한 교육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사무, 위임사무로 구분되고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¹⁹⁾. 어린이집의 보육사업이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의 범위, 국가감독의 기준과 수단, 비용의 부담, 지방의회의 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영

17)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3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19) 하상균, 2023. 지방자치와 행정, 129P

유아보육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고 있다²⁰⁾. 그러나 개별적인 시행령이나 규칙 및 조례 등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보건복지부와 시, 도지사, 구청장에게 중복되게 규정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9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외에 보육사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사업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이며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고 사무의 직접적 수혜자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²¹⁾

2. 영유아 보육사무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22.12.31.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총 30,923개소로 운영주체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5,801개(18.7%), 사회복지법인 1,254개(4.0%), 법인 및 단체가 610개(2.0%), 민간이 9,726개(31.4%), 가정이 12,109개(39.1%), 직장이 1,291개(4.1%), 협동이 133개(0.4%)로 민간과 가정에서 7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총 4,712개를 운영 중에 있고 이중 국공립이 1,829개(38.8%)이고 개인 가정이 1,405개(29.8%), 민간어린이집이 1,043개(22.1%)이며, 직장어린이집이 304개(6.4%), 법인·단체 84개(1.8%), 사회복지법인 21개(0.5%), 협동 26개(0.5%)로 개인과 민간에서 51.9%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40%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서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국가나 지방정부보다 민간에서 상대적으로 어린이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영유아보육법령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 영유아어린이집의 유형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 및 사업주가 소속 직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등 그 형태가 매

20) 이승철, 2023. 지방자치론, 129P

21) 이재훈외, 2018.10.15., 한국법제연구원,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46P

우 다양하다.

<표 25>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어린이집의 유형

어린이집유형	개 념	법적근거
국공립어린이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2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학교법인, 종교단체, 근로복지공단,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 기타복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8조의2 1호~4호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6호
민간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

출처 : 이재훈외, 2018.5.15. 한국법제연구원,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입법평가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반면에 영유아 어린이의 보육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등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제 6조, 제12조에서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전체위원 중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0분의 10 이하로 정하고 있다. 조막례외(2021)²²⁾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자치구별로 11명~1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평균 14.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공익위원이

22) 조막례외, 20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정책연구-07,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재) 위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3P

4.6명으로 가장 많고, 보호자 2.8명, 공무원 1.9명, 전문가와 교사가 각각 1.1명, 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보육정책위원 구성



출처 : 조막례외 (20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21정책연구-07)

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관 선정

한국법제연구원²³⁾(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이재훈, 2018)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판단으로 설치·운영하는 반면에 그 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실제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위탁 방식은 공개경쟁의 방식을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²⁴⁾ 반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호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의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따르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권미경(2015)의²⁵⁾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담당자 설문에서 설문시점 기준 3개년간 공개경쟁 이외의 위탁이 80건으로 이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이 9건(11.2%), 국

23) 이재훈외, 2018.10.15., 한국법제연구원,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46P

2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25) 권미경, 2015.10.15., 육아정책연구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무상사용이 57건(71.3%), 주택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11건(13.8%)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대부분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식의 장기임차 방식의 기부채납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식은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를 안게 되고 또한 엄격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권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이고도 엄격하게 지도감독 기제가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²⁶⁾.

<표 26>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 분류

(단위:개소, %)

기간	개소수 (%)	전체	개인	사회 복지 법인	종교 법인	학교 법인	사회적 협동조 합	재단 법인	사단 법인	기타
2019. 6월말	개소수 (%)	1621 (100.0)	769 (47.5)	266 (16.4)	179 (11.0)	54 (3.3)	20 (1.2)	18 (1.2)	20 (1.2)	294 (18.2)
2012~ 16년 개원 ²⁾	개소수 (%)	417 (100.0)	206 (49.5)	46 (11.0)	83 (19.9)	13 (3.1)	10 (2.4)	59 (14.1)		
2013. 6월말	개소수 (%)	692 (100.0)	83 (12.0)	234 (33.8)	216 (31.2)	53 (7.7)	- -	106 (15.3)		

출처 : 조막레외, 20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유형은 개인위탁비율이 47.5%로 가장 높고, 2013년에 비해 개인위탁 비중이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개인위탁 뿐만 아니라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기타법인의 상당수가 종교시설로 나타나 이를 종교법인과 합산할 경우 29.2%에 달하고 있어 종교관련 위탁비중도 높게 나타났다.²⁷⁾

라. 위탁방법 및 기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 위탁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되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며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26) 조막레외, 20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정책연구-07,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제) 위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16P

27) 김송이, 20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19), 어린이집의 함께 돌봄 가치 확산방안, 3P,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기간 3년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위탁을 보육사무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운영권 까지도 위임을 하는 시설관리운영 위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그 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행정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기간 5년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심사기준

서울시 위탁체의 심사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 신규 위탁 사항목별 심사항목을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로 운영단체의 대표와 원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높이고 있고 재위탁 시에는 심사항목을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 운영체의 운영실적 3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로 그동안의 위탁체의 운영실적을 중요한 재위탁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김송외(2021)²⁸⁾에 따르면 2020년 초 보육 관련 제도 및 정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과 세부항목 일부를 개정하였다. 유사한 심사항목을 통합하고 운영체의 책무성 항목을 신설하였고 원장(내정자)의 역량 평가지표를 강화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하고 위탁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 신설, 재 위탁지표에 서류간소화 실적, 보육교직원 휴가운영 실적 등을 추가하여 보육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운영체의 노력도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주요 심사기준 개선 내용을 정리하면 ‘신규·변경 심사기준서’내용 중 1.어린이집 운영계획’ 세부항목 중 ‘⑤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과 ‘⑦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계획’을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으로 통합하였고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항목을 ‘2. 원장(내정자)의 전문성’으로 수정하고, 원장(내정자)의 인터뷰 점수를 상향함(10점→15점), ‘4.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세부 항목에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계획 현황(5점)’을 신설하였으며 재위탁 심사기준에서는 ‘3.어린이집 운영계획’ 세부항목 중 ‘⑦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계획’을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으로 개선하였다. 반면 서울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의 가중치를 5점 감점하고 이를 운영체의 공신력으로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여 배점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심사 결정 방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위원의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28) 김송이, 20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19), 어린이집의 함께 돌봄 가치 확산방안, 3P,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하고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하며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표 27> 국공립어린이집의 선정 심사기준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신규위탁	재위탁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5
운영업체 대표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35	30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30
운영체의 공신력	10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5
합계	100	100

출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 표8의2

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 및 선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 가능(「영유아보육법」제6조)하고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토대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을 검토 후 조정 가능케 하여 자치단체 간 특성에 맞도록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사. 재위탁 심사항목과 배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7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 위탁할 수 있고 제24조의2 별표8의2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어린이집 운영계획 25점,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점, 운영체의 운영실적 30점,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재정능력 5점으로 심사항목을 신규위탁과 동

일하며 배점만은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위탁은 기존 위탁체에 대한 위탁성과의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전제 될 때 보육 재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공개경쟁을 통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위탁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8> 국공립어린이집의 선정 세부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소계	세부항목	배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35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5 4 3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	5 4 3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5 4 3										
		④ 전반적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5 4 3										
		⑤ 특별활동 운영계획	5 4 3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5 4 3										
		⑦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절성	5 4 3										
		2.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① 평가인증(또는 평가제) 참여여부 • 참여하여 통과(평가제 A,B등급) • 참여중(평가제 C,D등급) • 평가제 미참여 평가인증 미통과	10 5 0								
② 어린이집 근무 경력(원장+교사) <table><tr><td>위탁시설 정원 21인 이상</td><td>위탁시설 정원 20인 이하</td></tr><tr><td>14년 이상</td><td>12년 이상</td></tr><tr><td>12년이상 14년 미만</td><td>10년이상 12년 미만</td></tr><tr><td>10년이상 12년 미만</td><td>3년이상 10년 미만</td></tr><tr><td>5년이상 10년 미만</td><td>3년 이상 3년 미만</td></tr></table>	위탁시설 정원 21인 이상			위탁시설 정원 20인 이하	14년 이상	12년 이상	12년이상 14년 미만	10년이상 12년 미만	10년이상 12년 미만	3년이상 10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0 8 6 4
위탁시설 정원 21인 이상	위탁시설 정원 20인 이하												
14년 이상	12년 이상												
12년이상 14년 미만	10년이상 12년 미만												
10년이상 12년 미만	3년이상 10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③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계획	15 10 6												
3.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 실적	10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②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정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5 3 1 0										
4.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15	① 운영체의 유형(법인 또는 개인)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5										

			4 3 2
		③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 계획 현황	5 3 1 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 2 별표 8의2)

4. 영유아 보육조례 실태분석

가. 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공포된 후 보육사무는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대부분 기관위임사무로 분류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9년 서울시에서는 보육사무를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로서 인식하여 지방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방과후 보육, 비용 등 자치사무로 규정되는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서울시 보육조례를 1999.5.10일 공포하게 되었고 자치구에서도 영유아 보육조례 또는 보육조례,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영유아보육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 76%에 해당하는 19개 자치구가 ‘보육 또는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표 29> 2023년 서울시 보육 조례 명칭

조례명칭	보육조례	영유아보육조례	보육 및 어린이집운영에 관한조례	영유아보육시설및지원에관한조례	어린이집운영 및지원에관한 조례
자치구	도봉구, 관악구, 강서구, 마포구, 노원구, 영등포구	양천구,광진구, 성북구,중구, 서초구,서대문구, 용산구,성동구,은 평구,종로구,금천 구,강북구,도봉구	동작구	동대문구, 중랑구,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25개	6	13	1	4	1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또한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시행지침 제 24조의 2“별표8”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임기가 5년 이내인 경우에 3~5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치구는 5년을 위탁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표 30> 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의 위탁기간

위탁기간	5년	3년
자치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동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 광진구	-
25개	25	-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아울러 재위탁에 대한 횟수의 제한도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허용하는 자치구가 양천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등 17개인 반면,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등 8개 자치구는 재위탁이 가능하고 그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기적인 수탁운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투명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서 횟수를 제한하든지 수탁기간을 제한하든지 개선이 필요하다.

<표 31> 서울시 자치구 조례의 재위탁 횟수와 제한

재위탁 횟수	1회 제한	제한 없음
자치구	양천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중랑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갯수	17개	8개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위탁대상기관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18개의 자치구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중이나, 중구, 광진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가 직영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관내에서 개인 및 법인이나 단체의 위탁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중랑구와 영등포구, 서초구가 개인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의 수탁을 금지하고 있고 동대문구나 은평구, 서대문구가 법인.단체나 개인이 수 개 이상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나. 중랑구 보육조례

중랑구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른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고 함으로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만 이행하면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국가법령 포털, 2023.8).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육조례에서 처럼 중랑구의 보육 및 지원조례에서는 구의회의 동의 절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5. 중랑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

가. 서울시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

2022.12.31.기준 전국의 어린이집은 총 30,923개소로 운영주체별로 보면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5,801개(18.7%), 사회복지법인 1,254개(4.0%), 법인 및 단체가 610개(2.0%), 민간이 9,726개(31.4%), 가정이 12,109개(39.1%), 직장이 1,291개(4.1%), 협동이 133개(0.4%)로 민간과 가정에서 7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가 총 4,712개를 운영 중에 있고 이 중에서 국공립이 1,829개(38.8%)이고 개인가정이 1,405개(29.8%), 민간어린이집이 1,043개(22.1%)이며, 직장어린이집이 304개(6.4%), 법인.단체 84개(1.8%), 사회복지법인 21개(0.5%), 협동 26개(0.5%)로 개인과 민간에서 50%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40%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국가나 지방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영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현황

2022.12.31.현재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 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 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 집	가정 어린이 집	협동 어린이 집	직장 어린이 집
계		30,923	5,801	1,254	610	9,726	12,109	132	1,291
서울 특 별 시	소계	4,712	1,829	21	84	1,043	1,405	26	304
	종로구	71	32	2	1	5	2	0	29
	중구	64	23	0	6	3	9	0	23
	용산구	106	36	2	7	17	32	0	12
	성동구	151	81	0	3	17	42	0	8
	광진구	152	56	0	0	53	38	1	4
	동대문구	184	77	0	3	43	53	0	8
	중랑구	191	67	0	5	63	52	1	3
	성북구	210	87	2	11	42	60	2	6
	강북구	122	60	1	2	36	19	2	2
	도봉구	170	66	1	1	43	54	2	3
	노원구	306	93	2	0	38	166	0	7
	은평구	217	90	0	6	79	37	1	4
	서대문구	136	64	0	2	31	33	1	5
	마포구	187	85	0	5	27	48	4	18
	양천구	236	88	0	1	37	101	0	9
	강서구	312	92	1	5	76	118	3	17
구로구	266	99	3	4	58	91	3	8	
금천구	128	55	1	9	35	21	0	7	

출처 :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서울시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은 2022년말 기준 총 4,712개소로 국공립이 1,829개(38.8%), 민간이 1,043개(22.1%), 가정이 1,405개(29.8%), 기타 435개(9.3%)이고 0~6세 총 영유아수는 345,083명으로 이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166,235명(48.2%), 유치원이용이 66,488(19.3%), 가정양육이 112,360명(32.6%)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육교직원이 50,946명, 어린이집 정원이 223,628명이며 현원이 167,427명으로 이용율이 74.9%를 보이고 있다²⁹⁾. 서울시 자치구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1,829개로 자치구 평균 73개이고 송파구가 107개로 가장 많고 종로 30개, 중구가 24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랑구는 국공립이 67개로 자치구 평균보다도 적은 편이고, 서초구와 송파구, 강서구, 은평구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고 종로구나 중구, 용산구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은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⁰⁾ 아울러서 서울시 자치구의 보육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 재위탁에 대한 제한도 대다수가 두지 않고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수탁 독점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³¹⁾.

29)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2022,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

30)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2023.8,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

31) 이서영, 2017.8, 사회복지법제연구원, 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 분석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

<표 33> 서울시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자치구	개소	평균대비 (증감)	자치구	개소	평균대비 (증감)
종로구	30	-43	서대문구	64	-9
중구	24	-49	마포구	85	+12
용산구	36	-37	양천구	85	+12
성동구	81	+8	강서구	94	+21
광진구	56	-17	구로구	96	+23
동대문구	78	+5	금천구	55	-18
중랑구	67	-6	영등포구	83	+10
성북구	85	+12	동작구	71	-2
강북구	61	-12	관악구	80	+7
도봉구	65	-8	서초구	92	+19
노원구	91	+18	강남구	65	-7
은평구	91	+18	강동구	87	+14
합계	1,828		송파구	107	+34

출처 : 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나. 중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중랑구의 어린이집을 운영 주체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67개소, 법인 및 단체가 6개소, 개인이 63개소, 가정이 52개소, 직장이 3개소, 기타 1개소로 총 192개의 어린이집 시설을 통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34.8%로 6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정이나 개인이 59.9%로 115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중랑구의 영유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는 대다수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국공립어린이집 67개소가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94.7%에 달하는 중랑구 지역 내 영유아 보육사무가 민간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34>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대비 충원율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서울시 아동정원 (명)	223,628	103,678	1,533	4,954	65,662	25,770	805	21,226

탁)운영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59~78P

전 체	아동현원 (명)	167,427	81,969	991	3,404	47,079	21,258	597	12,129
	정원 충족률	74.9%	79.1%	64.6%	68.7%	71.7%	82.5%	74.2%	57.1%
중 랑	아동정원 (명)	9,760	4,166	0	325	4,019	952	26	272
	아동현원 (명)	7,387	3,182	0	220	3,068	736	17	164
	정원 충족률	75.7%	76.4%	0.0%	67.7%	76.3%	77.3%	65.4%	60.3%

출처 : 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2023년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총보조금은 15,468백만원으로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로 운영이 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린이집의 인가(개원)일자 별로 1985년 이전이 10개소로 14.9%이고, 이후에 1990년까지가 4개소(5.9%), 2000년까지가 8개소(11.9%), 2010년까지가 2개소(2.9%), 2011에서 2020년까지가 가장 많은 35개소(52.2%)이고, 2021년에서 2023년 현재까지가 8개소로 11.9%로 나타나고 있다. 2017~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의 인가가 이루어졌고 이후까지를 포함하면 전체의 64.1%인 43개의 어린이집이 동 기간 중에 개원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명인어린이집은 1977년 5월에 진광교회에서 인가를 받은 가장 오래된 중랑구의 어린이 보육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다.

<표 35> 인가 기간별 어린이집 현황

인가 기간	~ 1985	1986~ 1990	1991~ 2000	2001~ 2010	2011~ 2020	2021~ 2023	비고
개소	10	4	8	2	35	8	명인어린이집가장 오래 (1977.5 월인가)
비율 (%)	14.9	5.9	11.9	2.9	52.2	11.9	

출처 : 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국공립 어린이집은 67개소 모두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10개(14.9%), 사단법인이 4개(5.9%), 종교법인이 5개(7.4%), 단체가 7개(10.4%)이고 개인이 37개로 55.2%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랑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부분은 개인에게 인가하여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린이집

의 정원규모별로 30명 이내가 21개(31.3%), 30~50명 규모가 12개(17.9%), 50~70명 규모가 9개소(13.4%), 70~100명 규모가 20개(29.8%), 100명이상 규모가 5개(7.4%)로 소규모 어린이집과 중대형 규모의 어린이집이 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36>어린이집 수탁기관별 운영현황

수탁 기관	사회복지 법인	사단 (재단)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단체	개인
개소	10	4	4	5	7	37
비율 (%)	14.9	5.9	5.9	7.4	10.4	55.2

출처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특히 학교법인 열린학원 2개, 조계종계열의 법상사 3개, 중랑구 사회복지사협의회 4개, 천태종복지재단 2개, 영안복지재단 2개소 등 2개~3개의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법인단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만나교회, 동일교회, 법상사 등은 신내동 성화교회, 한마음교회, 동부제일교회 등이 종교법인의 형태로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는 반면에 법인격 없이 일반단체의 자격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이원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제4장 민간위탁 심층면접 및 이용자 조사 분석

제1절 관계공무원 및 수탁자 심층 면접 분석

1. 심층 면접 개요

가. 기간 : 2023년 8월 24일 ~ 9월 22일(4주간)

나. 방법 : 개별 심층 인터뷰

다. 주요 인터뷰 내용 :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 기관 선정, 계약사항, 업무수행

및 회계시스템 운영,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관리지침 및 구민의 참여 등

라. 인터뷰 대상 : 민간위탁사무 담당 부서직원 16명 및 수탁기관 관계자 14명

2. 심층 면접 결과 분석

가) 민간위탁 조례 관련

①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할 사항 :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②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신설할 사항 :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에 없는 성과평가지표 개발이나 구의회 보고 등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요 답변>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재계약과 재위탁간의 개념적 구분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 및 절차 등이 미흡
- . 적격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이나 성과평가 등에 대한 관리지침이 포괄적이어서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민간위탁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례에 미리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위탁사무 수행이 가능
- . 관리감독의 구체적인 방향과 중점사항을 조례에서 사전에 제시하고 특히 회계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가도입 등 필요
- . 장애인 평생교육 센터의 학업기간 5년에 맞추어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를 현행 3년에서(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적용) 5년으로 개정이 필요
- . 정량적 성과평가지표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개발하여 적용토록 조례에 보완 반영 검토
- .조례에 수탁업체의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현 조례는 수탁기관의 대응만 규정) 방안도 규정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등 의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시의회에 동의 및 보고는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임.

나) 민간위탁 제도와 관련

①중랑구 민간위탁관리 지침 개선사항 : 중랑구 민간위탁관리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②민간위탁제도에 참여하도록 제공되는 유인책 : 중랑구 민간위탁 정책 중 민간위탁시장에 참여를 유인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③회계정산시스템 단일화 문제 : 민간위탁의 기존 회계결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

며, 제도의 단일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요답변>

- . 현 회계 결산 시스템 활용의 연속성과 숙련을 위하여 업무변경 및 신규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 민간위탁금의 시비 및 구비 등 부담과 수탁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법인 전입금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 법인전입금의 폐지 시에는 능력이 없는 법인이 난립 우려
- . 수탁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위탁사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소통창구 보장을 위한 지침이나 기구가 부족한 실정
- . 과도한 서류 작업, 복잡한 승인 과정 등 민간위탁 사업에 불필요한 장애요인과 지연을 야기하는 행정절차의 개선 검토
- . 회계 및 결산제도의 민간위탁 사무성격, 복잡성 및 재정적 측면 등에서 서로 업무가 다를 수 있고 또한 이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양한 위탁사무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표준화가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화 필요.

다) 민간위탁 대상업무 및 기관 선정상의 문제

- ①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 중랑구의 민간위탁제도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선정기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②민간위탁 계약단가와 적정이윤의 문제 : 계약단가의 과다 계상 등으로 적정 이윤 초과 지급 등의 사례는 없는지요?
- ③위탁대상 사무의 적절성 문제 : 위탁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나 분석을 하지 않고 업무를 민간위탁에 위탁하는 등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주요답변>

- . 행정기관의 핵심 사무나 핵심역량 등 전문 분야를 민간위탁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과 수준 이하의 위탁성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
- . 민간위탁기관은 위임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또는 자원이 부족하여 지연, 오류 또는 손상된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은 맡겨진 작업의 품질과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 초래
- . 위탁사무에 대한 적절한 검토나 분석 없이 부적절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전문지식과 맞지 않는 작업시간과 노력 및

재정적 자원 등 낭비가 발생 우려

- . 민간위탁과정에 법적 조항이나 지침이 모호할 경우 업무처리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에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
- . 시장의 불완전 경쟁으로 신규법인의 진입이 곤란하고 평가지표의 불확실성으로 이를 토대로 한 수탁기관 선정의 신뢰도 저하
- .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과 과정을 통하여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이 필요

라) 특정 기관이 장기간 독점적 지위 보유

- ①특정기관이 독점적 수탁기관의 지위를 보유하는 문제 : 특정기관이 독점적 수탁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②수탁기관 선정시 심사평가위원회 선정의 실효성 문제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위원회의 의례적은 심사와 평가 등 기관 선정의 통과의례 문제는 없는지?
특정기관이 독점적 수탁기관의 지위를 보유하는 문제 : 특정기관이 독점적 수탁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주요답변>

- . 특정 기관이 장기적, 독점적으로 수탁 시 공정성 문제와 특혜시비는 물론 시장의 비경쟁구도로 민간위탁의 성과 미흡 우려되고 업무의 혁신 노력 미흡과 도덕적 해이로 혁신의지 부족,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려는 동기 감소로 이어져서 서비스의 질적 저하우려,
- . 경쟁 시장의 결여는 자격을 갖춘 다른 민간기관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서비스 제공의 개선 노력을 잃을 가능성 존재
- .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위탁 시에 동일 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서 당초 행정 사무의 위탁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나 애로사항이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이 미흡
- . 하나의 수탁기관이 여러 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여 법인의 전문성을 살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비대화 초래로 비효율을 가중
- . 단일기관에 위탁사무를 의존 시 해당 기관에 대하여 운영이 종속되고 이는 운영실패, 재정 불안정 또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서 민간위탁 성과에 문제가 발

생 및 상황의 효과적 해결이 어려움

- 위탁시장의 독점화는 결국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능력 감소로 이어지고 폐쇄적이고 편향된 운영으로 감독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공정한 성과평가를 보장하기 어렵게 만들

마) 수탁기관 선정 시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의 구성

①수탁기관 선정 시 대부분 정성지표 구성의 문제 : 민간위탁제도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대부분 정성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요?

<주요답변>

-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선택 과정에서 불일치와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 기관 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를 방해하여 최적이지 아닌 선택으로 이어질 우려
- 객관적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 계약에 명시된 목표를 충족하는지 판단 여부가 어려워져서 업무의 투명성, 효과적인 관리의 평가를 저해
-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칠 경우에 특정 주체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갈 수 있고 이러한 객관성의 결여는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자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평가의 공정성이 손상

바) 민간위탁업무 수행 관련

①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무처리의 어려운 문제 : 민간위탁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무처리에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요?

②예산관리의 어려움 문제 : 민간위탁에서 예산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요?

③위탁업무 부실수행으로 관리소홀 및 부실측정·관리 등의 문제 : 위탁업무의 부실로 인한 관리 소홀 및 측정·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요?

④근로인원 및 예산의 부족 : 민간위탁의 수행에 있어 근로인원 및 예산의 부족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고려하거나 구현하고 있는지요?

⑤안전 규정 준수 문제 : 수탁기관 현장에서 사고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수칙 및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⑥의사소통 및 보고 : 민간위탁기관의 수탁기관 현장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통 및 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주요답변>

- . 부적절한 예산관리는 비효율적인 자원 할당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자금이 최적으로 할당되지 않아 중요한 영역에서 자원부족이 발생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과도한 지출이 발생 가능
- . 민간위탁 작업 중 부적절한 의사소통 창구, 열악한 정보공유, 이해관계자 간의 불충분한 협업,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조정이 부족하면 오해, 기대치의 불일치,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
- . 재계약에 있어서 관행적인 평가, 의례적인 재계약이 이루어 지면 계약 분쟁 및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고 감시 및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서 위탁사무 자체의 목적성을 상실 우려
- . 근로자에 대한 보상, 복리후생, 근무조건 등 처우의 격차는 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주민의 서비스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
- . 근로인원과 예산 부족시에 원활한 위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고 공공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직원이 서비스 동력과 직결되어 있어 필요한 인원과 예산의 지원이 필수
- . 사건 또는 사고시 직원, 계약자, 중랑구민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불안 증가로 사건 또는 사고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협력을 방해할 수 있음

사)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체계와 평가 관련

①성과평가 및 재계약 제도 미흡 문제 :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평가

의 시기와 방법 등 재계약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②민간위탁 관리 및 감독 시 현장점검 방법 : 민간위탁의 관리 및 감독에서 현장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의 중점사항은 무엇인지요?

③재계약의 관리·감독 소홀 및 조례 미비 : 위탁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재계약이 반복되는 등 관리감독의 개선책은 무엇인지요?

<주요답변>

- . 민간위탁 담당자 변경 및 신규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의 부재로 관리 감독의 연속성 부족 우려
- . 관리감독권 중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과평가 체계와 평가 기구가 없으면 기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평가의 불일치 및 투명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관리 감독의 사후적인 효과보다는 성과평가의 항목과 지표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체계화되고 정교한 평가지표와 시스템의 운영이 중요
- . 수탁기관의 관리 역량과 자원 및 전문기술 등의 부족은 관리 및 감독에 의하여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위탁사무의 사후 대응에 한하므로 민간 위탁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효과를 손상시킬 수 있음
- . 재계약시에 수탁기관에 대한 기관의 성과, 역량 및 이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계약이 갱신될 경우 실적이 저조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제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
- . 부적절한 계약 갱신과정은 보다 나은 서비스와 비용절감,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관의 진입 기회 방해
- . 부적절한 관리감독은 수탁기관의 성과 및 의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구가 작동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업무처리 지연, 비용 초과 및 위탁된 작업이 수준 이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 매년 전문기관에서 성과를 종합평가 후에 그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 및 일몰제 적용 검토 및 재계약 전에 그동안의 지도감독 실적과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추진

아) 지역주민의 참여 관련

①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 등 : 중랑구민의 민간위탁시설에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②이용자 중심의 논의기구 : 민간위탁의 중랑구민 참여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이용자 중심의 논의기구가 있는지요?

③민간위탁사업의 성공사례나 실패사례 등 주목할 만한 사항 : 중랑구의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사례나 실패 등 주목할 만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요?

. 민간위탁사업의 개선 또는 건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주요답변>

. 위탁시설 이용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등 다자간 협의체의 활발한 참여가 제한될 시에 위탁사무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이 어렵고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도 충족을 시키기가 어려움

. 비공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보 또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을 가진 계층은 위탁사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접근을 본의 아니게 차단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중랑구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

. 주기적인 민간위탁 담당의 교육과 예산 및 지도점검, 매뉴얼,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의 세부적인 안내와 교육 및 수탁기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중랑구민에게 할인 등의 혜택도 필요.

. 지역경제과 ; 연 2회 지도 감독실시 및 상반기에는 타 자치구 담당 부서와 교차지도 감독, 하반기에는 회계사 전문가와 테마별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도감독 시행,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 후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피드백 시행

제2절 수탁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가. 이용자 조사범위

- 지역적 범위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상자 범위 : 중랑구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중 무작위 81명 조사
- 장소 범위 : 중랑구 관내 14개 위탁시설

나. 조사기간 : 2023. 9. 1. ~ 2023. 9. 20.(20 일간)

다. 조사 대상 시설

키움센터, 육아보육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커뮤니티, 아이돌봄센터, 어린이급식센터 등 14개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자 81명 무작위 선정조사

라. 조사내용 : 성별, 연령, 이용횟수, 서비스 수준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설이용의 편리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

2. 설문 조사결과 분석

가. 성별 특성

민간위탁시설 이용 응답자 총 81명 중 남성이 18명(22.2%), 여성이 63명으로 77.7%를 보여,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37>성별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성	18	22.2
여성	63	77.7
계	81	100

나. 연령대 특성

연령대별로 50대가 28명으로 34.5%, 40대가 16명(19.7%), 30대가 11명(13.5%), 20대가 9명(11.1%), 70대가 7명(8.6%), 10대가 4명(4.9%)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44명으로 54.2%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8> 연령별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10대	4	4.9
20대	9	11.1
30대	6	7.4
40대	16	19.7
50대	28	34.5
60대	11	13.5
70대	7	8.6
계	81	100

다. 월 이용횟수

이용횟수는 매일 51.8%, 매주 1~2회가 16.0%, 한 달에 1~2회가 13.5%, 보름 1~2회 6.1%, 첫 번째 이용이 2.4%의 순서로 나타났고 월 이용 횟수는 매일 51.8%가 가장 많고 처음 이용도 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 월 이용횟수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일	42	51.8
매주 1~2회	21	25.9
보름 1~2회	5	6.1
한달 1~2회	11	13.5
첫 번째 이용	2	2.4
계	81	99.7

라. 직원들 서비스 평가

서비스 평가는 매우 만족이 85.1%로 이고 약간 만족이 12.5%, 그저 그렇다가 2.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97.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은 없었으며 직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자가 87.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직원의 서비스 평가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긍정적·부정적 평가비율(%)
긍정적	매우 만족	69	85.1	97.6
	약간 만족	10	12.5	
그저 그렇다		2	2.4	2.4
부정적	약간 불만족	-	-	-
	매우 불만족	-	-	
계		81	100.0	

마.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의 수준 평가

매우 만족이 81.4%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약간 만족이 18.5%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응답은 100%로 응답자 거의 모두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의 수준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긍정적·부정적 평가비율(%)
긍정적	매우 만족	66	81.4	100
	약간 만족	15	18.5	
그저 그렇다		-	-	
부정적	약간 불만족	-	-	-
	매우 불만족	-	-	
합계		81	99.9	

바. 이용자 요구 충족 수준

매우 만족이 74.0%, 약간 만족이 23.4%, 그저 그렇다가 1.2%, 약간 불만족이 1.2% 순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응답은 응답자의 98.8%인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1.21%에 불과해 민간위탁기관의 이용자 요구충족 수준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이용자 요구충족 수준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긍정적·부정적 평가비율(%)
긍정적	매우 만족	60	74.0	98.8

	약간 만족	19	23.4	
그저 그렇다		1	1.2	
부정적	약간 불만족	1	1.2	1.2
	매우 불만족	-	-	
계		81	100	

사. 시설 이용자의 편리성

매우 만족이 65.4%, 약간 만족이 29.6%, 그저 그렇다가 3.7%, 약간 불만족이 1.2% 순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응답은 응답자의 95.1%인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1.2%에 불과해 민간위탁기관의 시설 이용자 편리성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시설 이용자 편리성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긍정적·부정적 평가비율(%)
긍정적	매우 만족	53	65.4	95.1
	약간 만족	24	29.6	
그저 그렇다		3	3.7	3.7
부정적	약간 불만족	1	1.2	1.2
	매우 불만족	-	-	
계		81	100	

아. 이용자 중심의 개선 정도

매우 만족이 66.6%, 약간 만족이 27.1%, 그저 그렇다가 2.4%, 약간 불만족이 1.2%, 매우 불만족이 2.4%의 순서로 나타났고 '긍정적' 응답은 응답자의 94.0%인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3.6%에 불과해 민간위탁기관의 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이용자 중심 개선 정도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긍정적·부정적 평가비율(%)
긍정적	매우 만족	54	66.6	94.0
	약간 만족	22	27.1	
그저 그렇다		2	2.4	2.4
부정적	약간 불만족	1	1.2	3.6
	매우 불만족	2	2.4	
합계		81	99.7	

자. 개선이 필요한 분야

민간위탁 시설에 개선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48.1%의 응답률을 보인 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23.4%, 운영개선이 17.2%, 프로그램 개선이 6.1%, 서비스 수준 개선이 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개선이 필요한 분야 분포도

구분	빈도(명)	비율(%)
운영 개선	14	17.2
서비스 수준 개선	4	4.9
시설 및 환경 개선	39	48.1
프로그램의 개선	5	6.1
기타	19	23.4
합계	81	99.7

차. 건의사항

키움센타의 기저귀 등 물품을 풍족하게 비치, 키움센타의 장소가 협소하여 확장이 필요, 식당의 환경도 개선이 필요, 중랑구 발달 장애인센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개선 희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음 등의 문제로 독립건물 마련 검토, 등하교시 주차장 협소로 학생과 학부모 등 불편, 여름과 겨울방학 등 2주간 연속 운영으로 개선이 필요, 교직원 및 운영인력의 확대 검토 희망, 운영비 및 시설예산의 확충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센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대중교통 노선 등 접근성 개선, 주차공간의 부족, 시설 노후로 개선이 필요,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에 대한 다양한 건의가 있었다.

3. 조사결과 요약

총 81명의 이용자가 설문에 응답하고 이 중 22.2%인 18명이 남성이고 77.7%가 여성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54%로 절반 이상의 분포도를 보였고 월 이용횟수에 있어서도 51.8%가 매일 이용자로 나타났다. 직원의 서비스 평가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의 수준에 있어서도 81.4%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탁기관의 대응도 74%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자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65.4%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을 하였으나 29.6%는 약간 만족으로 나타나서 위탁시설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 및 환경이 48.1%로 높게 나타나서 수탁시설의 시설과 환경의 개선에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고 운영개선과 서비스 수준 개선도 각각 17.2%, 4.9%로 나타나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키움센타, 발달장애인센타 등 전체적인 시설의 노후로 개보수가 필요하고 특히 주차장 협소에 따른 이용불편과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실태분석

제1절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현황

1. 민간위탁 사무현황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민간위탁 서비스를 민영화의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신뢰로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강력한 국가를 향하여 전략적 변화와 시도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위탁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하면서 주민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분출하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요구에 대하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인력, 재정적 능력 등의 한계로 감당이 어려워지자 정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위탁제도가 확산일로에 길을 걷게 되고 예산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1998년의 외환위기는 정부 주도의 국가운영이 실패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대다수 국가가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사태에 이르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IMF국제금융을 통하거나 자국의 재정파탄의 요소인 복지 재정과 정책을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경제파탄의 파고를 넘어가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큰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신 공공관리론으로부터 시작하여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을 발판으로 확산되면서 1998년 외환위기라는 정부실패의 정점을 극복하면서 30여 년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공공서비스가 점차 증가하고 확대되어 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업은 총 1,548건으로 각 자치구별로 평균 62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 중에 있고 그중 강서구가 121건, 강동구 108건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 반면 서초 및 광진구는 각 33건, 중구 21건으로 가장 적게 위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본청은 220건이고 자치구 평균은 62건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50건인 중랑구는 자치구 평균보다는 적다.

<표 46> 서울시 자치구별 민간위탁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건)	민간위탁금 항목	민간위탁비 항목
계(건)	1,543	1,472	71
강남구	51	47	4
강동구	108	107	1
강북구	63	58	5
강서구	121	116	5
관악구	36	35	1
광진구	33	32	1
구로구	80	79	1
금천구	53	52	1
노원구	56	51	5
도봉구	55	52	3
동대문구	43	42	1
동작구	78	77	1
마포구	84	76	8
서대문구	55	49	6
서초구	33	32	1
성동구	60	60	-
성북구	63	57	6
송파구	68	58	10
양천구	102	99	3
영등포구	56	54	2
용산구	56	56	-
은평구	71	68	3
종로구	48	45	3
중구	21	21	-
중랑구	50	50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공공데이터

2. 민간위탁 예산 현황

민간위탁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성질별 예산항목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등의 이전 재원은 제외하고 민간위탁금 항목(307-05)과 민간위탁사업비 항목(402-03)을 기초로 하고, 각 자치구의 전체예산

을 합하여 총예산을 산출 후에 자치구의 평균 예산을 도출하였다. 자치구 총 22,121,653 백만원 중 민간위탁예산이 1,588,618백만원으로 7.18%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민간위탁금(307-05)이 1,548,156백만원으로 총예산의 6.99%를 차지하고 민간위탁사업비(402-03)는 40,462백만원으로 총예산의 0.18%를 차지하여 규모가 미미하며 강남구가 전체예산 1,284,662백만원 중 14.37%인 184,67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로구가 전체예산 524,310백만원 중 6.95%인 36,445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평균 민간위탁예산은 63,544백만원으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 서초구 등 9개 자치구가 평균 이상이고 반면 동대문구가 32,484백만원으로 평균의 1/2 규모이고 중구 36,014백만, 종로구 36,44백만원, 광진구가 38,571백만원 등 16개 자치구가 평균 이하의 민간위탁 예산 규모로 나타났다.

<표 47>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예산	민간위탁예산		
		소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계	22,121,653	1,588,618 (7.18)	1,548,156 (6.99)	40,462 (0.18%)
종로구	524,310	36,445 (6.95)	36,299 (6.92)	146 (0.03)
중구	575,633	36,014 (6.25)	35,884 (16.23)	130 (0.02)
용산구	594,017	50,305 (8.46)	50,291 (8.46)	14 (0.002)
성동구	698,950	63,733 (9.11)	63,360 (9.06)	373 (0.05)
광진구	782,696	38,571 (4.92)	38,199 (4.88)	372 (0.04)
동대문구	797,730	32,484 (4.07)	32,239 (4.04)	245 (0.03)
중랑구	1,016,270	48,157 (4.73)	47,849 (4.70)	308 (0.03)
성북구	965,051	45,629 (4.72)	44,546 (4.61)	1,083 (0.11)
강북구	878,482	55,060 (16.26)	54,547 (6.20)	513 (0.006)
도봉구	791,953	40,257 (5.08)	39,127 (4.94)	1,130 (0.14)
노원구	1,227,764	75,144 (6.12)	73,853 (6.01)	1,291 (1.02)
은평구	1,087,000	75,569 (6.95)	75,236 (6.92)	333 (0.03)
서대문구	753,788	47,152 (6.25)	46,380 (6.15)	772 (0.10)

마포구	778,400	68,506 (8.80)	68,043 (8.74)	463 (0.05)
양천구	909,160	81,390 (8.95)	80,792 (8.88)	598 (0.06)
강서구	1226,185	110,422 (9.00)	109,065 (8.89)	1,357 (0.11)
구로구	909,750	52,112 (5.72)	51,348 (5.64)	764 (0.08)
금천구	710,356	43,634 (6.14)	43,578 (6.13)	56 (0.001)
영등포구	829,319	51,892 (6.25)	51,488 (6.20)	404 (0.04)
동작구	800,130	59,029 (7.37)	57,894 (7.23)	1,135 (0.14)
관악구	971,494	40,774 (4.19)	40,774 (4.19)	-
서초구	853,012	108,754 (11.81)	97,669 (11.44)	3,085 (0.36)
강남구	1284,663	184,676 (14.37)	174,622 (13.59)	10,054 (0.78)
송파구	1175,203	75,653 (6.43)	73,746 (6.27)	1,907 (0.16)
강동구	980,337	6,469 (6.27)	61,327 (6.25)	142 (0.14)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공공데이터

제2절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전역을 동남권에 송파구, 서남권에 영등포구, 서북권에 서대문구, 동북권에 노원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태를 파악하였고 총예산에 대한 민간위탁 예산의 비율, 민간이전 재원의 지출 근거, 낙찰자 선정방법, 계약 체결방법, 계약기간, 운영비 정산, 성과평가 실시 여부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1. 민간 위탁예산 규모

4개 자치구 민간위탁 예산은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63,544백만원 보다 높고 노원구는 평균의 2배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총예산 대비 민간위탁 예산은 평균 6.27%이고 민간위탁금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8> 자치구 민간위탁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노원구	송파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총예산		1,227,764	1,175,203	753,788	829,319
소계		75,144 (6.12)	75,653 (6.43)	47,152 (6.25)	51,892 (6.25)
민간위탁예산	민간위탁금	73,853 (6.01)	73,746 (6.27)	46,380 (6.15)	51,488 (6.20)
	민간위탁사업비	1,291 (1.02)	1,907 (0.16)	772 (0.10)	404 (0.04)

출처 :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2023)

2. 민간 이전 자원 지출 근거

민간이전의 지출 근거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출이 20.1%인 45건이고 조례에 직접규정에 의한 지출이 24.6%(55건)이며 국고보조재원이 8.0%인 8건이고 시도 정책사업비가 6.2%이며 기타가 38.1%인 85건으로서 이는 송파구가 1건을 제외한 55건 모두가 기타 재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며 특히 법률에 의한 규정과 병행하여 조례의 규정도 이전 재원의 지출근거로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이전재원의 지출의 근거가 송파구를 제외하면 미미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표 49> 민간이전자원 지출근거

(단위:건, %)

구분	계	노원구	송파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계	223	56	56	55	56
법률에규정	45 (20.1)	10 (17.8)	1 (1.7)	19 (34.5)	15 (26.7)
국고보조재원	18 (8.0)	11 (19.6)		4 (7.2)	3 (5.3)
조례직접규정	55 (24.6)	13 (23.2)		20 (36.3)	22 (39.2)
지자체권장사업	6 (2.6)	4 (7.1)		2 (3.6)	
시·도정책 및 재정사업	14 (6.2)	5 (8.9)		1 (1.8)	8 (14.2)
기타	85 (38.1)	법률과 조례9 기타4	55 (96.4)	법률과 조례7 기타2	법률과 조례4 기타4

출처 :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2023)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계약기간으로 3년이 42.6%로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한 계약기간 5년으로 19.7%로 나타나고 1년과 2년 단기계약도 6.2%, 4.4%이고 해당없음 및 기타도 16.5%, 9.4%로 적지 않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표 50> 계약기간

(단위 : 건, %)

구분	계	노원구	송파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1년	14 (6.2)	10 (17.8)		1 (1.8)	3 (5.3)
2년	10 (4.4)	5 (8.9)		4 (7.2)	1 (1.7)
3년	95 (42.6)	23 (41.0)	36 (66.6)	11 (20.0)	25 (44.6)
5년	44 (19.7)	1 (1.7)	8 (14.8)	24 (43.6)	11 (19.6)
해당없음	37 (16.5)	10 (17.8)		15 (27.2)	12 (21.4)
기타	23 (9.4)	7 (12.5)	12 (21.4)		4 (7.1)

출처 :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2023)

4. 계약체결 방법

계약체결 방법으로 일반경쟁이 34%이고 제한경쟁 6.7%, 수의계약 8.5%, 법정위탁 5.8%, 해당사항 없음이 23.7%이고 기타가 21%로 양자를 합하면 44%를 상회하여 민간위탁 사무가 공개 경쟁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서 민간위탁의 투명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표 51> 계약체결 방법

(단위: 건, %)

구분	계	노원구	송파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일반경쟁	76 (34.0)	24 (42.8)	16	9 (16.3)	27 (48.2)
제한경쟁	15 (6.7)	4 (7.1)	5	3 (5.4)	3 (5.3)
수의계약	19 (8.5)	3 (5.3)	8	1 (1.8)	7 (12.5)
법정위탁	13 (5.8)	3 (5.3)	3	7 (12.7)	-

해당사항없음	53 (23.7)	15 (26.7)	10	15 (27.2)	13 (10.7)
기타	47 (21.0)	7 (12.5)	14	20 (36.3)	6 (23.2)

출처 :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2023)

5. 낙찰자 선정 방법

낙찰자의 선정은 적격심사가 5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위탁사무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자치구의 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기타 11.6%, 해당 없음도 31.3%로 나타나서 낙찰자의 선정 방법에 있어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 52> 낙찰자 선정방법

(단위 : 건, %)

구분	계	노원구	송파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적격심사	119 (53.3)	19 (33.9)	23 (42.5)	39 (70.9)	38 (67.8)
협상계약	8 (3.5)	3 (5.3)	3 (5.5)	1 (1.8)	1 (1.7)
해당없음	70 (31.3)	26 (46.4)	14 (25.9)	15 (27.2)	15 (26.7)
기타	26 (11.6)	8 (14.2)	16 (28.5)	-	2 (3.4)

출처 :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2023)

6. 운영비 정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의 정산은 내부정산이 6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와 외부의 병행 정산이 11.6%이며 정산 해당사항 없음이 11.9%, 미실시도 5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운영비용의 정산에 공정하고도 전문적인 프로세스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53> 운영비 정산

(단위 : 건, %)

구분	계	노원구	송파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내부정산	155 (69.5)	42 (75.9)	37 (66.0)	42 (76.3)	34 (60.7)
외부정산	6 (2.6)	1 (1.7)	4 (7.4)	1 (1.8)	-
내.외부정산	26	3	7	7	9

	(11.6)	(5.3)	(12.9)	(12.7)	(16.0)
미실시	5 (2.2)	3 (5.3)	2 (3.7)	-	-
해당없음	31 (13.9)	7 (12.5)	6 (11.1)	5 (9.0)	13 (23.2)

출처 :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2023)

7. 성과평가 실시

민간위탁 성과의 평가에 있어서 57.8%가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계획이 12.5%이고 해당사항 없음이 30.3%로 나타났으며 미실시도 4.4%인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성과평가 실시

(단위 : 건, %)

구분	계	노원구	송파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실시	129 (57.8%)	21 (37.5)	43 (76.7)	36 (65.4)	29 (51.7)
미실시	10 (4.4)	2 (3.5)	2 (3.7)	-	6 (10.7)
향후계획	28 (12.5)	10 (17.8)	4 (7.4)	10 (18.1)	4 (7.21)
해당없음	56 (25.1)	23 (41.0)	7 (12.9)	9 (16.3)	17 (30.3)

출처 :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2023)

제3절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분석

1. 민간위탁 조례 현황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체계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착안점을 도출함으로써 중랑구 행정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공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25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를 통하여 분석하고 조사범위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한정하여 조사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관련 조례등 관련 법령 및

조례는 별도로 조사하였다.

이런 조사범위를 토대로 서울시 자치구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는 도봉구청에서 1999.5.4.일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송파구가 1999.6.30.에 제정하고 이어서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12개 자치구가 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중랑구가 가장 늦은 2016.9.20.일 제정하였다. 조문 수는 구로구가 16개 조문으로 가장 적고 양천구와 강서구가 26개 조문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20~2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강북구는 1회만 개정하였으나 구로구는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시행 중에 있고 또한 강서, 도봉, 은평, 서초, 서대문구는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제정 운영 중에 있다.

<표 55>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일 및 조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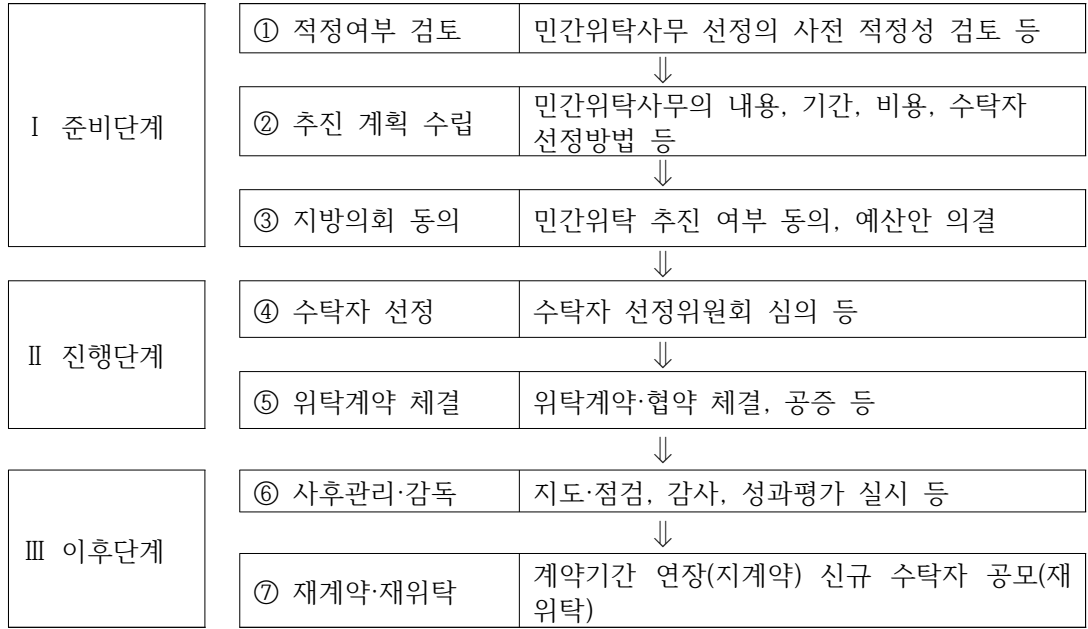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명	조문수	조례제정일자	연번	자치구명	조문수	조례제정일자
1	종로구	24	1999.09.16	14	마포구	23	2008.12.11
2	중구	23	2010.03.25	15	양천구	26	2009.07.27
3	용산구	23	1909.07.10	16	강서	26	2012.07.18
4	성동구	19	2013.11.25	17	구로구	16	2012.10.11
5	광진구	24	2009.04.07	18	금천구	17	2000.05.18
6	동대문구	21	2015.04.23	19	영등포구	23	1999.11.25
7	중랑구	22	2016.09.29	20	동작구	24	2015.02.20
8	성북구	18	2011.10.21	21	관악구	23	2013.08.01
9	도봉구	23	1999.05.04	22	서초구	22	2005.06.16
10	강북구	23	2000.03.28	23	강동구	19	2015.10.28
11	노원구	24	2011.04.21	24	강남구	20	1999.11.05
12	은평구	22	2011.09.22	25	송파구	13	1999.06.30
13	서대문구	22	1999.10.1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례분석 체계

서울시 자치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추병주·정운수(2009)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전수 조사 연구에서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단계, 민간위탁운영 단계, 민간위탁 성과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유정원(2020)은 사회복지시설의 경기도내 자치단체조례를 전수 분석하면서 준비단계, 진행단계, 이후단계로 분석하였으며 박기묵외(2020)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민간위탁의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평가단계로 분류 연구하였다.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실무편람(2003)에서는 민간위탁 관리과정을 ①준비단계 ②진행단계 ③이후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2018.11)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를 권고하면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단계별 체계도



출처:국민권익위원회, 2018,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권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수탁자선정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계약과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프로세스로 확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사후관리단계를 평가의 적합성과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민간위탁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①사전준비단계 ②수탁자 선정단계 ③계약 및 운영단계 ④사후관리 및 평가단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우선 사전준비단계로서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성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운영기준 부재에 대한 보완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위탁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견제하고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과정을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행사로서 예방적 노력인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신용규, 2017). 다음은 수탁자선정 단계로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및 법적기준과 이에 대한 사전공개와 수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여부, 선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 및 운영단계에서는 계약체결내용과 계약기간 및 재계약(위탁)에 대한 규정여부를 그리고 사후관리 및 평가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검사, 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위탁취소 또는 해지사유의 명시여부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6>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분석틀

구분		조례 내용
단계	과정	
사전 준비단계	적정성여부 검토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검토
	지방의회의 동의	지방의회의 동의여부
	위탁사무기준	위탁사무 범위와 기준
수탁자 선정단계	수탁기관선정 기준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수탁기관 선정방법	모집방법, 선정지표 공개 등
	선정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위촉비율 등
계약 및 운영단계	계약체결 내용	계약내용 및 계약기간
	재계약 및 재위탁	재계약, 재 위탁 절차, 및 제한 기준 등
사후관리 및 평가단계	사후 관리감독	지도, 점검, 검사 등
	성과평가	평가 심사여부 및 평가결과 활용
	위법행위 취소 등	수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취소 또는 해지 등

3. 단계별 조례 분석 내용

가. 사전 준비단계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권한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i)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ii)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iii)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iv)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조례가 거의 동일하게 위탁사무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성과측정의 용이, 관리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22~23개 서울시 자치구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반면 구로구, 성북구, 송파구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서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송파구는 타 자치구와는 달리 민간위탁 시행사무의 선정,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 및 인력의 적정성,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적정성 등을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표 57>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분	해당 자치구	미 해당자치구
경제적효율성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22개)	성북구, 구로구, 송파구(3개)
성과 측정의 용이성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22개)	성북구, 구로구, 송파구(3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송파구(23개)	성북구, 구로구(2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송파구(23개)	성북구, 구로구(2개)

민간 서비스의 공급시장 여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송파구(22개)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3개)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로구, 중랑구(2개)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송파구(23개)

또한 사전단계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역할론 관점에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당연히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사무만을 의회의 동의사항으로 정하는 성동구와 금천구 이외에는 대다수 서울시 자치구가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다. 반면 광진구, 중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동작구, 서초구 등 자치구는 6년 경과 시 또는 수탁 3회 차시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표 58> 자치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 규정

연번	자치구	최초위탁	재계약 등 제한
1	종로구	동의	재계약만 상임위 보고
2	중 구	동의	매 3회차 마다 동의
3	용산구	동의	6년 경과 동의, 위탁기간 5년 이상 사무는 매회 동의
4	성동구	동의	
5	광진구	동의	매 3회차 마다 동의
6	동대문	동의	
7	중랑구	동의	
8	성북구	동의	
9	강북구	동의	6년 경과 재위탁 동의
10	도봉구	동의	
11	노원구	동의	매 3회차마다 동의

12	은평구	동의	10년 경과시 동의
13	서대문	동의	
14	마포구	동의	6년 경과시 동의
15	양천구	동의	매 3회차마다 동의
16	강서구	동의	10년 경과시 동의
17	구로구	동의	
18	금천구	동의	
19	영등포	동의	
20	동작구	동의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은 제외
21	관악구	동의	
22	서초구	동의	6년 경과시 동의
23	강남구	동의	
24	송파구	동의	
25	강동구	동의	
계		25개구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치법규

다만, 1년 단위 반복위탁사무 또는 1억 이하 등 일정금액 이하의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위임사무는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사무로 나누어지고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위임기관장의 승인으로 위탁이 가능하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 지방의 분권이라는 가치에 비추어 과연 합당한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59>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와 의회동의

조례내용	서울시자치구수	비 고
민간위탁사무기준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등	25개	지방자치법 및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위임 및 위탁규정에 의거 조례에서 규정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및	20개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송파구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의회동의 및 보고 -소관 상임위 동의 및 보고	25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하여 규정 위임사무→위임기관장 승인 자치사무-의회승인 및보고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치법규

나. 수탁자 선정단계

민간위탁의 수탁자선정 과정에서 수탁자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운영과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이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i) 위탁사무 수탁에 필요한 인력, 기구장비, 시설수준 ii) 재정적 부담능력 iii) 책임능력과 공신력 iv) 위탁사무 관련분야 전문성 확보 등으로 대다수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도 동 선정기준에 터 잡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탁자 선정기준을 25개 자치구가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선정지표와 항목별 배점은 공고시에 사전 공개토록 하고 선정 결과 또한 각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면서도 세부적인 수탁자 선정항목과 지표의 배점 등 세부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는 자치구는 없다.

<표 60>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

구분	해당 자치구	미 해당 자치구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5개)	-
구의회 추천의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1개)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강동구(4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자격증 소지한 전문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6개)

	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광진구, 은평구, 송파구(19개)	
관련 분야 전문기관·시민단체 추천한 사람	종로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송파구(14개)	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11개)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탁 관련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9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은평구, 송파구(16개)
그 밖의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15개)	도봉구, 동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10개)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치법규

수탁자 선정단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요인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인데, 민간위탁 사무관련 공무원, 구의회 추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들을 위원 위촉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시민단체 추천한 사람(14개 자치구) 및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부서장(9개자치구), 그 밖의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5개 자치구)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은 9명 내외로 위촉하되 해당 자치구 공무원의 비율을 1/4~1/2이하로 위촉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악구, 강동구, 은평구, 서대문구는 위원회 특정 성비의 구성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치구 주민의 참여와 자치행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한 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유형으로써 이는 종로구, 중구, 광진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11개 자치구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6개 자치구가 있으며 조례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규정한 유형으로서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7개 자치구가 있다. 또한 위원장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한 유형으로는 송파구가 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방식도 성동구와 강서구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중구, 종로구, 광진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는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탁기관선정에 대하여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19개 자치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간위탁 처분에 대한 자치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자치행정 참여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를 일반 민원절차에 따르는 것이 합당한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61>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구분	문서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또는 구청장 심사	이의신청 결과 문서 통보	연장 사유 통보
해당자치구(19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미 해당자치구(6개)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센터

또한 각 자치구가 조례에서 위원회운영과 심사위원 위촉 및 민간전문가를 1/2이상 위촉토록 하고는 있지만 대다수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조례에 미리 적시함으로서 이해관계자가 미리 인지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공공서비스의 공정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서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 자치구는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자치행정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각 자치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제적, 기피신청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의 안전과 위원간의 이해 충돌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참여를 배제하는 운영의 엄격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³²⁾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32) 국민권익위원회, 2019.1.15,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 6~16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해촉)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수탁자선정 결과의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62>수탁자 선정단계의 조례분석

조례내용	자치구수	비고
수탁자 선정기준 -필요인력 및 장비 등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위탁사무 전문성 등	25개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선정지표와 배점공개 -선정결과 공개	25개	
선정위원회 운영 -위원 9명 내외 -전문가 1/2이상 위촉 -위원 제척,기피, 회피 등	23개	• 중구, 종로, 광진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는 수탁기관 선정과 민간위탁운영위원회로 위원회를 2원적으로 운영 • 성동구, 강서구 별도선정위원회 없음
수탁자 선정결과 이의신청	18개	종로구, 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다 계약 및 운영단계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자치단체장은 위탁의 목적과 사무의 내용 위탁수수료 및 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와 준수사항, 계약 위반 시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있는 강서구와 강남구를 제외하고 23개 자치구가 3년 이내를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있고(서울시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상 3년) 계약체결 결과는 물론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계약결과까지도 대부분의 자치구가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재계약 또는 재위탁과 관련하여 대다수 25개 자치구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적 정의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으로써 의회동의를 갈음하고 있다. 반면 서대문구, 종로구, 강동구는 재계약 시로, 구로구, 송파구, 양천구는 재위탁 시로 구분하여 의회 보고 및 승인토록 달리 정하고 있다.

재위탁, 재계약 시 수탁기관을 정하는 기간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이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이고,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등이 60일이고 관악구, 마포구, 강서구, 용산구 등이고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을 근거로 시설유형은 재계약을 1회만으로 수탁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사무유형은 지방계약법(제25조1항)을 근거로 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장기 수탁할 수 없고 차기 위탁 시에는 공개모집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 수탁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구와 광진구는 재계약을 1회에 한하여 가능토록 하여 수탁기관 독점을 제한하고 있고 은평구는 5년 이상 수탁 시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고 서대문구는 연속해서 10년 이상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 모집토록 조례에 적시함으로써 서울시의 지침을 따를 뿐 아니라 여러 기관과 단체가 지역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등은 재계약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재위탁과 재계약과 관련하여 중구와 구로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치구가 민간위탁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랑구, 용산구, 광진구, 서대문구, 도봉구, 마포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는 재위탁과 재계약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정할 경우에 반드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광진,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10개 자치구는 성과는 평가하되 그 결과를 반영토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민간위탁의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주민 서비스의 품질의 측정을 통하여 정부 대신에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성과 위탁의 가치를 제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성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다면 좀 더 신뢰할수 있는 위탁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3>계약 및 재위탁 규정

조례내용	자치구조례	비고
계약내용 -수탁기관 명칭 및 주소 -위탁사무 내용 및 기간 -시설안전관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약체결 : 25개	공고 : 자치구 홈페이지 등
	계약결과공고 : 25개	
계약기간	3년 이내 : 23개	

	5년 이내 : 2개	5년 이내 : 강서구, 강남구
재계약, 재위탁 -위탁기관 만료 전 수탁기관 결정 -성과평가 연계 반영	-특별규정없음 : 7개 -30일전 : 4개 -60일전 : 4개 -90일전 : 6개 -기 타 : 4개	.특별규정 없는 자치구 : 중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기타 : 재계약 등 기한 없거나(도봉구, 성북구, 양천구, 의회동의(성북구))
	결과 반드시 반영 : 12개 별도규정 없음 : 10개	.반드시 성과평가 반영: 중랑구, 용산구, 광진구, 서대문구, 도봉구, 마포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사후관리 및 평가단계

사후관리 및 평가단계에서 위탁자로서 자치단체장은 수탁기관을 상시지도, 감독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관련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제15조) 및 관리지침(제4절)은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0억 원이 넘는 사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점검.검사.지시.조치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조치 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의 지도점검에 있어서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구 등 11개 자치구는 연간 횟수 제한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64>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규정

구분	지도·점검·검사·지시·조치	수탁기관의 보고	위법·부당 시 시정조치, 취소·정지	시정조치 시 문서통보, 의견진술기회 제공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 행정절차법 절차 준수
해당 자치구 (25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5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	영등포구(1개)

		북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4개)	
미 해당 자치구	-	중구(1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4개)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치법규

이는 지도감독에 임의성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성향이나 의지 지역의 여건과 상황 등에 따라서 지도 감독이 더욱 세밀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을 놓고 방임할 수도 있어서 어느 경우이든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 위탁사무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지역주민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감독을 정례화하고 규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민간위탁의 예산 및 회계의 집행과 인력운영 등에 대하여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필요시 탄력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 기능까지도 부여하고 있어서 이는 지도 감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25개 자치구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성과평가의 미실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위탁 성과의 평가 시기도 서울시의 18개의 자치구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120일 전 평가가 2개, 60일 전 평가가 1개, 30일 전 평가가 2개 자치구이고 그 평가를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두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자치구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성동구와 구로구는 성과평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나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성과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기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와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중랑구, 종로구, 강북구 이외에는 전문기관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65>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규정

구분	해당 자치구	미 해당자치구
성과평가실시, 전문기관 의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5개)	-
평가기준 별도로 정함	동작구, 강남구(2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강동구, 서초구, 노원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3개)
전문기관 성과지표 개발	종로구, 중랑구, 도봉구(3개)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2개)
성과평가 미대상시 지도·점검	광진구(1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4개)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치법규

이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공공 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당초 민간위탁의 목적성을 간과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운영평가 대신 경영평가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의 경영마인드와 기법을 통하여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특히 강남구와 동작구는 성과평가의 기준을 구청장에게 일임함으로써 구청장의 성향이나 의도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 질수 있는 임의성과 평가 기준의 사전 공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계를 노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³³⁾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33) 국민권익위원회, 2019.1.15,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 6~16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재계약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에 대해 의무화하였으며,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자치구가 계약의 효력을 소급시키는 계약(위탁)취소 및 해제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해지 및 정지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위탁사무 수행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의 취지를 살려서 중랑구, 성동구, 강서구 등 8~9개 자치구는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능력이 없고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공익상 위탁운영 불가사유, 수탁기관의 계약해지 요구 시에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 임직원의 징역형 선고 등은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해지의 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표 66> 계약의 해지 관련 규정

구분	해당 자치구	미 해당자치구
의무 미이행	성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강동구, 동작구, 강서구, 강남구(9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 서초구, 노원구, 구로구, 강북구, 성북구, 송파구(16개)
수행능력 없음	성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동작구, 강서구, 강남구(8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 서초구, 노원구, 구로구, 강북구, 성북구, 강동구, 송파구(17개)
위탁협약 조건위반	성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동작구, 강서구, 강남구(8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 서초구, 노원구, 구로구,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송파구(17개)
공익상 위탁운영 불가사유	중랑구, 동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강서구, 강남구(6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강북구, 성북구, 송파구(19개)
수탁기관의 계약해지 요구	중랑구, 동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강서구, 강동구(6개)	
임직원	강동구(1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징역형·벌금형 선고	도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24개)
------------	--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치법규

권경선(2021)³⁴⁾은 민간위탁의 여러 역기능과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들, 즉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수탁기관의 자격)과 배점을 공개하며, 공개모집원칙, 부정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장치를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시 반영하게 하고, 수탁기관의 중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4. 시사점 요약

단계	시사점
사전준비단계	· 민간위탁 사무가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복지사무로 민간위탁의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와 아울러서 사회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한 위탁사무가 많고 절차와 방법 등에서 서로 상이하고 · 특히 국가의 위임사무 중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구분 없이 의회 동의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 민간위탁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사전검토에 있어서는 25개 자치구가 유사하게 정하고 있으며 · 민간위탁의 사무내용에 대하여는 종로구 등 16개 자치구는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나 중랑구 등 9개 자치구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 재계약,재위탁 시에는 구의회에 소관상위임위원회의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고 있으나 중구청은 일정금액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송파구는 민간위탁 심의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 재위탁에 대하여는 개념을 재계약과 달리 정하고 있고 중랑구의 조례와 같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적시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선정단계	·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위탁사무 심의 시마다 구성을 하고 해제

34) 권경선, 2021. 한국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법제에 관한 연구

	시 심의기준적용과 결정에 일관성 저하 우려로 상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가 있고 · 구성에 있어서 대다수 자치구가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중랑구는 특정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치구의 사례가 시대적 흐름과 참여자치의 구현에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선정항목과 배점 등의 비율을 정하고 사전에 조례에 명시하여 공시하고 · 공개시기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서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 위탁사무의 공정성이 대부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장치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이의신청이 처리되도록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계약 및 운영단계	· 위탁계약 체결 결과등을 대다수 자치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 계약내용 중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성동구등 자치구가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 수탁기관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근로약정을 용산구 등 자치구가 노동부 예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 광진구는 사업계획에 성과목표를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 강남구는 중대재해 발생 방지 및 연간 결산서 제출토록 수탁기관의 의무도 특별히 도입(2021년) 운영하고 있고 · 계약시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개념을 구분하여 명기 하고 · 성과 평가의 결과 반영도 용산구 등 11개 자치구만이 정하고 있듯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 재계약시 소관상임위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고 있으나 성북구 조례와 같이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방안도 검토 실익이 있을 것이다.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	·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에 일반원칙과 횡수 등은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도 감독의 방향성과 중점사항은 언급이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 지도감독의 방법도 소관부서의 지독 감독에 의존하고 있어서 회계감사 또는 결산 감사 등으로 다각화가 필요하며

	·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열린 행정을 촉진하고 ·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지표를 수시로 자치행정 환경에 맞도록 개발을 하고 또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의 길도 열어 둘 필요가 있으며 · 정성평가지표와 정량지표 간에 비율을 점차 정량적 지표의 비중을 높여 나아가고 · 성과평가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하여도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 기준과 배점 등 사전 공개가 필요하고 · 중랑구 등의 조례와 같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제한하고 서초구 등에서는 일정 기간을 경과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특정 기관의 독점 예방에 힘쓰고 있다
--	--

제6장 국내외 민간위탁 우수사례

제1절 국외 민간위탁 우수사례

1. 일본의 성과연동형 민간위탁 계약제도(Pay for Success: PFS방식)³⁵⁾

가) 배경

PFS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위탁계약금액을 사업성과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의욕을 향상시키고 종래의 위탁사업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외사례를 모델로 도입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들을 기반으로 2020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년 신경제 재정재생계획 개혁공정표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나). PFS 위탁사업의 특징

기존형의 위탁사업과 PFS 사업은 사업활동 재량의 정도나 사업 종료 시의 평가 방법, 리스크, 인센티브 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35) 최무현외, 2021.12.17., 한국행정학회. 주요국가 민간위탁현황 및 사례분석 보고서, 209~220P

1) 민간사업자의 성과계약서와 성과지표

PFS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서 제출 시 성과지표를 담은 성과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내용은 사업목적(사업목표), 계약기간, 사업실시기간, 평가시기, 사업대상자, 위탁 내용, 성과지표, 성과지표치 측정 등 평가방법(데이터 등을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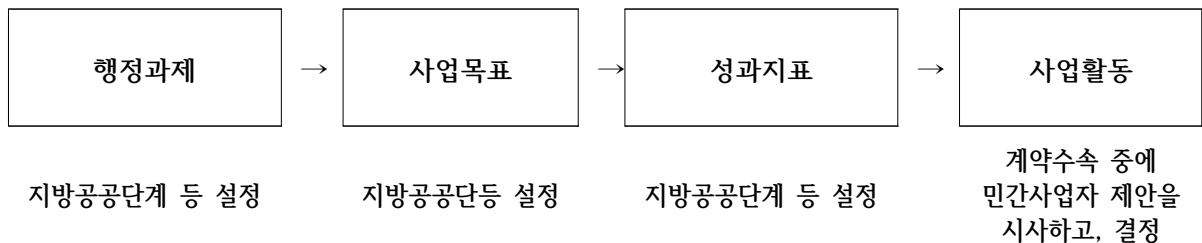
2) 민간위탁 시행과정의 절차 강조

성과연동 민간위탁의 경우 성과지표의 측정, 평가, 지불상한액 결정 등 전 과정에 서 지방공공단체 등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나 서비스 제공 상황을 포함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실시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탁자인 민간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중간지원조직, 제3자 평가기관 등 연계조직들의 의견 반영 과정을 중시한다. PFS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상한치 등이나 지불조건 설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의욕을 상실해 버려 사업참가를 하지 않거나 기대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의견, 중간조직이나 자금제공자, 제3자 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하고자 의견청취를 사업실시 과정, 모니터링 과정을 중요한 절차적 과제로 인식한다.

3). 운영 체계

PFS 사업은 아래에 ‘PFS 사업 성과 체계도’의 흐름에 의해 행정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지방 공공단체 등은 행정과제, 사업목표, 성과지표까지를 선정, 설정하는 동시에 성과지표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활동의 실시방법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의 선정·계약절차 과정 중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요구하여 심사하고 결정한다

<그림 8> PFS 사업 성과체계도



출처 : 최무현외, 2021.12.17., 한국행정학회,

다) 성과연동형민간위탁(PFS민간위탁) 적용 사례

1) 의료, 건강, 돌봄, 분야의 PFS 민간위탁사례

일본에서 의료, 건강 및 돌봄 분야의 주요 행정과제로 의료비, 돌봄 급부비의 적정화³⁶⁾ ‘주민의 건강수명 등의 목표가 있었으나 이러한 행정과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위한 사업실시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직접 서비스 제공 혹은 기존의 민간위탁방식을 실시한 결과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 기존 민간사업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끌어내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PFS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돌봄대상자의 자립지원 및 중증화방지 사업(오무타시 사례)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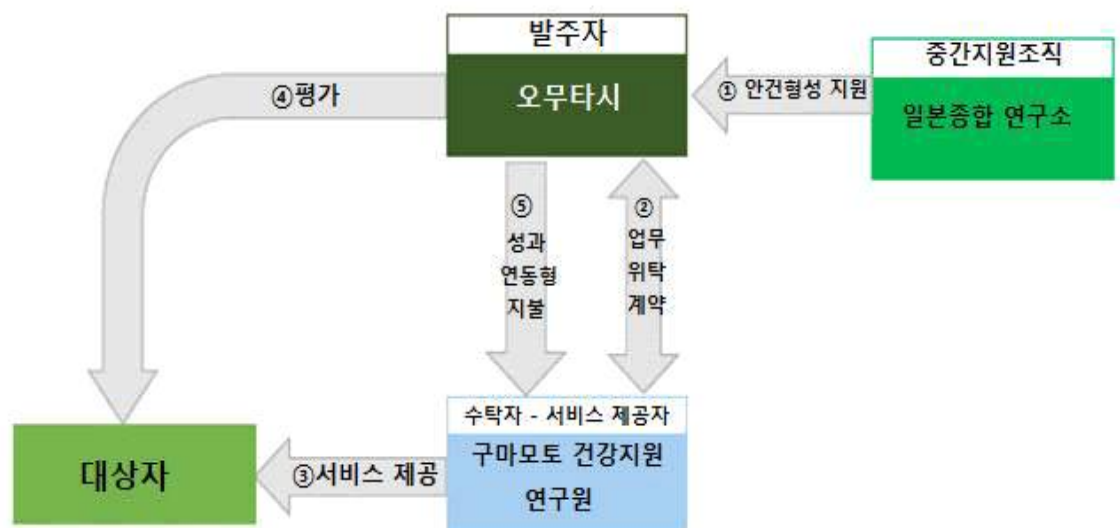
①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목표: 돌봄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진행억제
- 성과지표: 연수회 참가 사업소 수 및 방문설명실시 사업소 수, 개별 개입실시 사업소 수, 셀프케어 정착지원툴 사용대상자 수, 체력측정결과, 대상자의 개선유지율

② PFS 사업 추진체계

- PFS계약: 오무타시(위탁자)⇔ 구마모토 건강지원연구소 (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선정: 공모방식
- 사업규모: 4년간 13,644(천엔)
- 성과평가방법: 기존 데이터와의 사전사후 비교

<그림 9> PFS 사업 추진체계도



출처 : 최무현외(2021.12.17.)

36) 최무현외, 2021.12.17., 한국행정학회. 주요국가 민간위탁현황 및 사례분석 보고서, 209~220P

③ 사업기간 설정 및 평가시점

- 본 사업은 4년 기간으로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진행.
- 평가는 각 연도 3월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 실시.

2. 영국의 민간위탁 제도³⁷⁾

가. 민간위탁 현황

영국은 1979년 보수당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민간화, 민영화,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고용 서비스 분야, 법원 관리 분야, 지방정부, 사회보장 분야라 할 수 있다(TUC, 2015: 27), 고용지원 서비스 분야는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인데, 결과를 기반으로 한 대가지급이나 포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분야에서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져 민간의료서비스 제공자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민간위탁이 많이 활용되어 재택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나. 영국 민간위탁의 특징

민간위탁을 받는 민간기업이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형회사들이 여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웃소싱 회사의 대형화는 규모 경제 달성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데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 원래 민간위탁의 목적인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National Audit Office, 2013: 14).

· 이러한 맥락에서 인소싱 또는 재직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에 노동당이 다수인 지방정부 중 42%, 보수당이 다수인 지방정부의 33%가 민간위탁된 서비스를 다시 직접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1994년 규제완화 및 민간위탁법」(이하 민간위탁법)에서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능으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또는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기능, 개인의 자유에 침해를 가져오거나 영향을 미치는 기능, 개인의 재산에 출입하거나, 이를 수색 또는 압수를 하는 기능, 행정입법(subordinate legislation)을 제정하는 기능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동법 제71조 제1항)

37) 최무현외, 2021.12.17., 한국행정학회. 주요국가 민간위탁현황 및 사례분석 보고서, 209~220P

라. 민간위탁 계약 운영

영국에서의 민간위탁은 명령을 통해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부 장관은 명령(order)에 의해 자신의 관할에 속한 정부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서는 정부기능의 행사에 대한 권한부여(authorization)를 할 때 1) 전적으로 또는 일부 기능만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2)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례나 분야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3) 무조건적으로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일반적 선정기준(selection criteria: general principles)은 전문적인 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적합성, 경제적 및 재정적 상태, 기술 및 전문적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계약규칙 58조), 경제적 및 재정적 상태와 관련하여, 계약 당국은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및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술 및 전문 능력과 관련하여, 계약 당국은 사업자가 적절한 품질 표준에 따라 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및 기술 자원과 경험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선정평가 절차로서 특정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전략평가, 경제적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업타당성평가, 조달전략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투자계획 및 조달절차의 적절한 진행 여부에 대한 평가, 서비스의 제공이 잘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바. 수탁기관 재위탁

재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하여 재위탁 계약 체결 후 늦어도 재위탁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계약자는 관련 내용을 계약 당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계약 당국은 하청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배제에 대한 강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하청업체는 주계약자에게 교체하도록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즉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어 계약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 위탁받은 공급자에 대한 선정요건을 검토하여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사. 계약체결 및 재계약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계약은 공공계약규칙을 준용하며, 민간위탁서비스계약권고

안을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명령에 의한 민간위탁 권한부여가 이루어질 경우 이 기간은 1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부의 장관 또는 업무책임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권한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된 권한을 다시 각부 장관이나 업무책임자가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되고 낙찰 및 계약체결은 계약 당국의 관점에서 평가된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을 기반으로 공공 계약을 낙찰하여야 하며 해당 입찰은 비용 효율적 방법을 사용하여 가격 또는 비용을 기반으로 특정한다.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가치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아) 관리, 감독의 책임과 성과평가

위탁자의 책임은 명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한 각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수탁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는 위탁자인 각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간주 된다. 운영 서비스에 적용되는 핵심 성과지표(KPI) 및 보조성과지표(PI)는 다음과 같다.

<표 67> 핵심성과지표 및 보조성과지표

번호	핵심성과 지표명	정의 (별표에 의해 간추림)	측정빈도	심각도	서비스점수	공개가능한 성과정보 기관은 공개할 KPI/PI를 3개 이상 선택해야 함*
KP 11	서비스 이용성 *	다음 공식에 따라 서비스 기간의 총 시간에 대한 백분율로 측정 $(MP-SD) \times 100$ ----- MP MP : 총 서비스 시간 SD: 총 서비스 불가 시간		목표 성과 수준: [99%]* 사소한 KPI 실패: [98.0%~98.9%]* 상당한 KPI 실패: [97.0%~97.9%]* 심각한 KPI 실패: [96.0%~96.9%]* KPI서비스 임계값: [96% 미만]*	0 [1] * [2] * [3] * [4] *	[예/아니오] *
KP 12	공급자 시스템 응답시	IT 환경 및 서비스의 메시지 • 요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왕복 시간으로, 특정 메시지와 관련된 데이터		목표 성과 수준: [X]초%* 사소한 KPI 실패: [X]초%* 상당한 KPI 실패: [X]초%*	0 [1] * [2]	[예/아니오] *

	간	의 마지막 패킷이 IT 환경의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수신된 순간부터 응답이 생성되고 데이터의 첫 번째 블록이 외부 인터페이스를 떠날 때까지 측정		심각한 KPI 실패: [X]초%* KPI서비스 임계값: [X]초%*	* [3] * [4] *	
KP 13	안내 데스크 응답 시간	•헬프 데스크 응답 시간 측정은 헬프데스크 직원이 전화에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동 응답을 받거나 대기 시스템에 배치된 전화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목표 성과 수준: [X]초%* 사소한 KPI 실패: [X]초%* 상당한 KPI 실패: [X]초%* 심각한 KPI 실패: [X]초%* KPI서비스 임계값: [X]초%*	0 [1] * [2] * [3] * [4] *	[예/아니오] *
KP 14	시정 시간	•문제상황이 공급자에게 보고된 시점부터 해결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해결”은 다음 두가지의 상황임 (1)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었으며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됨 (2)기관은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서비스 사고와 관련된 해결 방법을 제공받음		목표 성과 수준: [X]분%* 사소한 KPI 실패: [X]분%* 상당한 KPI 실패: [X]분%* 심각한 KPI 실패: [X]분%* KPI서비스 임계값: [X]분%*	0 [1] * [2] * [3] * [4] *	[예/아니오] *

출처 : 최무현외(2021.12.17.)

이는 ‘사전적인 권한부여나 사후적인 권한승인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행위는 해당 부처의 장관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Carltona 원칙이 민간수탁자와 국가의 관계에 확대된 것으로(Donnelly, 2007: 204-205; 김정해 외(2006)에서 재인용)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제2절 국내 민간위탁 우수사례

1. 대전광역시의 성과평가 지표 사례³⁸⁾

대전광역시는 2007년에 모든 민간위탁시설을 평가대상으로 기본적인 조직, 예산 및 경영실태와 함께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서비스 수준 등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시행과 행정·재정적인 지원 강화를 평가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였다³⁹⁾. 대전광역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 도입 초기에는 정성지표보다는

38) 이정석외, 2020.2, 부산연구원, 부산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개발연구, 19~50P

39) 김용동, 2011.2, 대전발전연구원,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 지표개발,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였으나, 민간위탁 운영시설이나 사무의 성격과 목적에 따른 차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목표성과제와 권한의 위임,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개발, 재정적 효율성, 경제적 효과성, 관리감독 기능의 확보 등이 있다 대전광역시 2011년에 민간위탁 성과평가체계를 효율성, 효과성, 조직혁신 및 공공성의 4개 평가지표별로 세부평가 내용을 구성하였고 민간위탁시설의 사업별 유형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부여하였으며 사업별 유형을 종합복지시설, 문화레저시설, 보육시설, 병원시설 및 기타 (무료이용)시설로 5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68>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지표 체계⁴⁰⁾

평가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효율성 평가	효율성	①전/후 총사업비 비율 ②재정자립도
		③사업수지비율 ④목적사업 프로그램 수
		⑤직원 1인당 이용자 수 ⑥방문자(이용자) 비율
		⑦전문인력 확보율 ⑧교육훈련비 비율
		⑨자금운용계획 작성 여부
		⑩전년도 회계검사 결과 및 결과의 반영 여부
효과성 평가	효과성	①이용자 만족도 조사
		②사업수입 목표 달성도
		③예산의 목표 달성도
		④프로그램의 민간위탁사업 목적 부합도
		⑤프로그램의 적정성
조직 혁신 평가	조직혁신	①전문인력의 보수교육
		②외부 전문가집단 활용여부
		③외부 후원금 활용의 적정성 및 관리실태
		④관련 기관 네트워크 활용 정도
		⑤민원발생 추이 및 해결 노력
		⑥조직 내 공식 및 비공식 소모임 활성화
공공성 평가	공공성	①자체 개·보수 비율
		②환경정비 및 시설물 청결도
		③기초시설(조명, 환기 등) 관리실태
		④위험방지시설(안전펜스, 비상구 등) 관리 상태
		⑤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⑥근무자 복지 증대 노력
		⑦노사화합 노력

출처 : 김문현(2021.2)

2. 대구광역시 성과평가 지표체계⁴¹⁾

40) 김문현, 2021.2, 울산연구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연구, 77P

41) 이정석외, 2020.2, 부산연구원, 부산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개발연구, 19~50P

대구광역시는 104개 사무에 대해 대분류(사업분야), 중분류(사업기능), 소분류(이용자) 및 세분류(세부 사업활동)등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유형화를 하고 대분류에서는 4개 사업분야인 보건·복지, 문화·체육, 산업·경제 및 기타로 세분화하고 중분류는 6개 사업기능인 교육, 상담·컨설팅, 네트워킹, 시설활용, 홍보 및 특정사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소분류는 12개 이용자 유형으로, 일반시민, 근로자, 기업인, 장애인, 노인, 주거약자,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 등으로 총 49개 세부사업 활동을 추출하였다.

<표 69>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지표 체계⁴²⁾

평가 영역	평가 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공동 지표	계획	CEO리더십 과 책임경영	CEO의 전문성과 책임경영 의지
			사정목표 및 시정방향의 사업계획 반영 및 실천 노력
			내부구성원과 적극적 소통 및 문제파악·해결 노력
			사업추진상의 애로점 파악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
			자체 사업실적평가회 개최 및 차기계획에의 반영
		사업운영 계획수립 및 관리	중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
			연차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 운영계획 실천을 위한 인력·조직, 예산·재무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 운영계획 달성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증진 활동
	활동	조직·인사 관리	업무종사자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비율
			지원가능 인력 비율
			인력자원관리의 적정성
			노사관리의 적정성
			민간위탁 시설 담당자 공무원교육원 교육(연4회) 이수 (미이행 시 감점 1점)
		시설 및 환경관리	각종 수탁재산 관리의 적정성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관리의 적정성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의 적정성
			시설 이용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의 적정성
		재무·예산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일반관리비 충당률
			회계처리의 투명성
			조달계약 실적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사업활성화 노력	신규 이용자 발굴/유치 노력의 적정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 노력의 적정성
			사무처리의 정보화 노력의 적정성
			외부 및 타 기관 공모사업 응모 사업비 확보
			경영혁신 우수사례(가점 부여 : 1점)
		지적사항 이행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건수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적
			외부평가 시 지적 및 제안사항 이행 실적

42) 이정석외, 2020.2, 부산연구원, 부산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개발연구, 38P

개별 지표	성과	사업성과 관리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계획 이행의 적정성
			사업 실적 평가의 적정성
			자체감사 실시의 적정성
		고객만족도	외부고객 만족도 평가
			전년대비 외부고객 만족도 개선실적
		시설유형별 사업실적	교육인원수 목표달성률
			교육인원수 개선 실적
			프로그램 운영횟수 목표달성률
			프로그램 운영횟수 개선실적

출처 : 김문현(2021.2)

3. 서울특별시 성과지표 체계⁴³⁾

서울특별시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최초로 도입한 2015년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사무.시설의 성질에 따라서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선정하여 평가 실시하고 2016년에서야 위탁사무.시설의 유형을 나누었다. 관리대상 시설의 자체적인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①시설형, ②사무형으로 구분하고 정책당국인 시와 민간위탁 수행기관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③중간지원조직형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2023)는 민간위탁사무의 유형을 ‘예산지원형’과 ‘자립형으로 나누고 예산지원형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시설형 위탁과 관리위탁 없이 사무만을 위탁하는 사무형 위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과평가지표는 공통지표, 개별지표, 사용자 만족도 및 감점사례로 구성하여 공통지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4개의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성평가로 진행되고(배점은 37점), 개별지표는 각 유형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것으로서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를 정량 및 정성지표로 평가한다(배점은 48점), 사업자 만족도의 평가내용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 노력 등이 포함되며 전화조사로 진행된다(배점은 15점), 기타 5개의 감점사례를 두고 있는데 법률이나 협약사항 위반 건, 이행 지연 등에 대해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표 70> 서울특별시 성과평가지표 체계⁴⁴⁾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공통사무	사업인프라	①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적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①-3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3) 이정석외, 2020.2, 부산연구원, 부산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개발연구, 19~50P

44) 이정석외(2020.2)

			①-4 의사소통 노력도
		②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활동	③사회적가치기여	③-1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③-2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①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수준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②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②-3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
			②-4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개별사무	사업성과	※위탁사무별 사업성과 지표 개발	
		①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 이행능력	②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③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사용자만족도	만족도	①시민 만족도 조사(전환조사)	
	제고노력	②시민 만족도 제고노력	
감점사례		②-1 임금체불(사전 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②-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 보험 미지급	
		②-3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②-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담 취득	
		②-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출처 : 김문현(2021.2)

제3절 시사점 요약

일본의 성과연동형 민간위탁은 행정과제, 사업목표, 성과지표까지를 설정하는 동시에 성과지표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활동의 실시방법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요구하여 심사하고 결정하고 영국은 민간위탁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자격심사 및 경쟁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성과평가 지표를 비교 결과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구분하고 있고 정량지표 보다는 정성지표의 비중이 크며 대전광역시나 부산광역시는 4가지로 크게 유형화하여 자치단체마다 자치환경과 여건에 맞게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성과지표는 민간위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척도로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의 원칙을 지

키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얼마나 담보하느냐에 대한 실증적 결과물이고 이를 토대로 위탁사무의 정책이 결정되고 그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공공성 측정 지표와 효율성 지표 간에 각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균형적인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고 개별지표 선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정책적 목표를 지표화할 경우 측정 가능 하면서도 지자체 간 비교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7장 중랑구 민간위탁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1절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방안

중랑구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된 조례와 개별사업 조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생산·공급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양하고도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에 대한 미비점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조례의 보완 필요, 소수 수탁기관의 독점 운영의 문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과 투명성 제고, 수탁기관과의 소통 및 관리감독 시스템 미흡, 재계약과 재위탁의 개념 및 평가지표의 혼용, 성과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및 공개 등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전준비 단계

가. 민간위탁조례의 보완 개선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적격심사와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한 지침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평가지표의 고도화를 위한 지표개발,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의 활용 비율, 지도감독 시 구체적인 방향성의 사전제시,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 도입과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사무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중랑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정의를 달리하면서도 재위탁과 재계약 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의회 동의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재계약의 개념과 기준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고 재위탁은 신규위탁의 절차를 준용하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연장하는 효과로 인하여 독점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평가의 방법과 항목, 재계약 시 성과평가의 의무화 및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비율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건강한 경쟁 여건이 풍성한 지역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의 평가지표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하여도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 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고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의무화도 필요하며, 수탁기관의 선정과 성과평가의 결과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수탁기관의 이의신청 절차의 마련과 아울러서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쌍방향 자치행정 구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도 있겠다.

나. 민간위탁 제도개선 및 지방의회와 협치 강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과도한 서류작업과 복잡한 승인과정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위탁사무의 회계 정산 시스템의 상이로 업무지체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에 따른 통합회계 시스템 마련검토 및 신규직원 업무숙지 교육, 법인 전입금 제도의 활용으로 능력없는 법인의 위탁사무 시장에 진입 억제 및 수탁기관의 내실화 도모, 수탁기관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위탁사무 과정에 참여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서비스 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을 위한 구의회와의 협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본다. 중랑구의 민간위탁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기본조례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50개의 위탁 사무중 46개의 위탁사무 대부분이 특별법의 위임에 의한 개별 사업조례에 의하여 위탁사무가 추진되고 있다. 먼저 특별법과 개별 사업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탁사무는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서 구의회의 적정한 관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확장과 주민서비스의 풍성한 공급 측면 등을 두루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 보고 또는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특히,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의회와 유기적 관계의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동의안에 대한 내용으로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그 밖

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구의회에 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함으로써 예산조치 까지도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 선정 단계

가. 수탁기관 선정 평가 항목과 지표 체계화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시 수탁기관 선정항목 및 지표가 주로 정량적인 지표가 아닌 정성적인 지표를 토대로 평가함으로써 정성적 인식에 기반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게 되어서 객관적 신뢰도가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성과평가의 지표와 항목 및 배점, 정확한 측정척도를 통하여 위탁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이 가능하고 더욱 건실하고 능력있는 기관이 위탁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업무의 효율은 물론 지역주민이 더욱 고품격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기술보유정도,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수탁기관 기능과 업무 연관성,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 및 배점 또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서 수탁능력 보유상태, 공신력 및 책임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통상 20점을 배점 한도로 하되 전체 배점의 30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정성적 평가 분야는 기술전문성,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상호협력단체,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종사자 고용안정성 등 배점한도를 60점으로 하고 고용안전성을 의무적으로 정성평가 점수의 10%이상 배점 부여토록 하고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정량적 지표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 간 평가항목을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개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의 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성적 평가배점 비율을 50점 이하로 하고 정량적 평가배점을 30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탁기관 평가위원회의 평가방식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 등 서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에 더하여 민간위탁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평가의 정합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평가지표와 배점을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에 적시하여 공시한다면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더욱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중랑구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에 달하는 사업 특별조례 및 특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준거 법규에 의거 위탁사무의 성격과 가치 및 사업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각기 조례에서 정하는 문서양식과 사업계획서, 해당분야 전문가와 일정비율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다.

한 개의 수탁기관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각각 위탁사무의 서비스 대상이 아이와 어린이, 청소년, 어른으로 다르고 또한 수탁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이나 기술역량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일대학교에서 중랑 아카데미와 육아종합센터,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랑구사회복지사협회가 장난감도서관, 우리 키움센터 운영,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3개 사업운영,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 나래유스가 각각 청소년 커뮤니티 2개소씩 위탁 사무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 개의 기관이 여러 개의 위탁사무를 운영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수탁기관의 독점, 다른기관의 진입기회 상실, 경쟁환경의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바 민간위탁 심사 시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항목 및 평가 지표 등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성적인 평가 기준을 정량적인 지표로 개선하여 주관적 평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사례처럼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관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의 선임에 객관성을 담보하고 심사기준도 계량적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척과 기피조항을 엄격하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위탁위원회 인원 구성과 자격요건 등을 공개하고 특히 외부위원은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심사위원회 활동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구청의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고 또한 공공서비스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위탁 심사가 대부분 서류 심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심사의 정합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모 과정에서 수탁희망기관이 심사 과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활동에 상호 대등성을 점증적으로 높여 나아감으로써 성숙한 민간위탁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23.9.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3. 계약 및 운영 단계

가. 계약 및 낙찰자 선정절차 투명화

위탁사무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 조건이 명확해야 계약이행 중 각 당사자가 자신의 역할, 책임 및 권한에 대해 서로 불일치 및 법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서비스 품질과 고성과의 위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또한 계약서상에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될 때 위탁된 작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고 각자의 역할 및 성과가 배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주민의 서비스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고 동일한 산업 또는 조직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할 때에 위탁사무의 생산성은 물론 업무성도 높아지므로 계약서에 근로조건 등을 적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위탁기관의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으로서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화를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서 제한경쟁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중랑구는 적격심사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이 29건으로 58%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경쟁 3건, 제한경쟁 2건, 협상에 의한 계약과 최저가 낙찰이 각각 1건, 수의계약도 9건이나 된다. 정량지표인 가격항목은 평가의 신뢰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나 책임성과 공신력 등 정성적인 지표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량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수탁기관의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운영 매뉴얼에서 고용연령과 장애인 및 남녀 간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신규직원 채용 시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일정한 범위 내 가족은 반드시 공개채용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승계 가이드 매뉴얼에 따라서 각 위탁사업 계약 신규직원은 공개채용하고 기존 수탁기관 근무 직원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16개 위탁사무는 공개채용과 고용승계를 동시에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고 노동법 준수를 계약서에 넣기도 하고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사무도 10여 건이나 된다. 여하튼 위탁사무의 최 일선에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수탁자는 그 기관의 직원이므로 다양한 여러 경로를 열어놓고서 인재를 유

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주민의 접점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수탁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설장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 채용 공정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하겠다(2022.8.30.,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 개정)

나. 예산집행과 운영 및 이행보증 절차 보완

사업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지방재정법과 중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시의 민간위탁의 예산. 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각 사업별 조례 등에 따라서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있어서 대다수 48개의 위탁사업이 본 법령에 따라서 편성되고 집행한 후에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정산 및 잔액을 반납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2개의 위탁사무는 정산과 반납에 대하여 언급이 없기도 하고 또한 사업비의 정산에 있어 대부분 사업이 자체 정산 및 해당 정산서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검토와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43건(86%)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 회계 감사기관 등에 위임하여 정산하는 위탁사무는 없으며 그나마 7개 사무는 정산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체 50개 위탁사무 중 총사업비의 10%이상의 보증담보 범위를 정하여 보증요구하는 경우가 10건(20%)이고 보증담보 없이 이행보증증권만을 제출토록 하는 경우가 14건(28%)이며, 아예 이행보증증권 제출 등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26건(52%)에 달하고 있는바 위탁환경의 변화와 수탁기관의 자부담능력 부족 등 수탁능력이 불능 상태가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위탁행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의 이행 보증장치는 빠짐없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

가. 민간위탁 지도 감독의 실효성 강화

민간위탁의 관리감독권 중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과평가 체계와 평가 기구를 통하여 기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사전에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방향과 중점관

리 대상 분야를 공지하고 공유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업무 효율을 유인하고 파트너십을 견고히 함으로써 서비스 창출의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감독의 사후적인 장치와 운영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의 지도항목과 중점관리지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공개할 때에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본다. 특히 재계약 과정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수탁기관에 대한 기관의 성과, 역량 및 이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실적이 견실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시장에 유입될 때에 지역 주민의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저비용 고품질의 자치행정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매년 전문기관에서 성과를 평가 후에 그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 또는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재계약 등에 대한 횡수 또는 기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고 재계약 전에 그동안의 지도감독 실적과 종합성과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전체 위탁사무 중에서 중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연간 2회의 지도와 감독을 하는가 하면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60%에 달하는 30개 사업이 지도감독에 대하여 연간 횡수 강제를 하지 않고 필요시에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연간 2회 이상 지도감독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최소 연간 1회 이상 지도감독 실효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업무수행 프로세스와 방법 및 기준 등 지도감독의 내용을 고도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관리감독의 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이외에 법령과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남용이나 부적절한 사용 등의 반복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도 일정비율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나. 성과평가 체계화 및 결과활용 명문화

민간위탁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체감지수로서 가장 중요한 위탁사무의 방향타가 되므로 본 평가 절차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역량과 자원 및 전문기술 등의 수준과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공급 규모와 질적 변화의 정도를 가늠하게 되는 척도인 것이다.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것과 보유 자원의 배분방법과 우선순위 재배치, 서비스 대응성과 확대 등이 좌우되므로 성과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하고 결과의 활용도 명문화해서 행정기관과 수탁기관이 지역주민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감으로써 지역자치의 가치를 한층 고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평가의 평가항목과 지표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체계화되고 정교한 평가지표와 시스템

의 운영이 중요하고, 평가지표도 위탁사무의 유형에 따라서 공통지표와 각 사업에 특성을 감안한 개별지표 체계로 분류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재계약 시에 수탁기관에 대한 기관의 성과, 역량 및 이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 이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됨은 물론 부적절한 계약 갱신과정은 경쟁력 있는 기관의 진입에 방해가 주게 되므로 특히, 재계약 시에 성과평가 결과와 활용은 민간위탁의 본연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서 민간위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공급이 민간의 효율성에 힘입어 정부의 비능률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중랑구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18건(36%)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64%에 해당하는 32건은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성과평가를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8건으로 16%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재계약 시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향후 성과평가 결과를 재위탁이나 재계약 등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연계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과 투명성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도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 재계약 등 평가항목의 구체화 및 공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재위탁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함이 없다. 이는 2023년도 기준 총 50건의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신규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54%이고 재계약과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21회로(42%)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한 개 기관이 서로 다른 성격의 위탁사무를 2개에서 3개씩 수탁 운영하는 등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 활용, 독점적 수탁환경 조성의 방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재위탁과 재계약의 독점적인 수탁 환경을 미리 예방하고 민간위탁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 평가항목과 배점, 위원선임의 공정성,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를 보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랑푸드마켓,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재위탁 심사 시에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

신력 40, 재정능력 20, 사업능력 40으로 평가한 반면, 중랑아카데미운영, 스포츠클라 이밍장 운영, 중랑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면북종합합복지관 등 재계약 대상 사무 의 심사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참석위원의 평가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재위탁은 신규위탁의 기준에 준 하여 엄격히 대상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재계약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준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사업수행 실적의 적정성 50, 향후 사업운영계획 20을 가중하여 평가하되 각 심사항목을 동 서울시의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정량적 지표 개 발등 세부적으로 심사기준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재계약 기간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3년이고 사회복지법 등 특별법과 개 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재계약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기존 수탁기관의 독점화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기준에 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거나 또는 하나의 수탁기관이 10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차기 민간위탁 시에는 공개모집토록 개 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재위탁을 기존 위 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계약 횟수는 1회 로 제한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며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3.9.8.,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5. 민간위탁 지원 강화

현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과 서비스 수준,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에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으나 일부 위탁 시 설에 있어서는 시설과 환경 및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 움센터의 주차장 확장 및 물품의 부족 문제에 대한 세밀한 확인과 지원이 필요하고 발달장애인 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도 등하교시 주차장 협소로 이용학생과 학부모의 불편 요인이 되고 있고 건물의 노후와 운영인력 및 예산의 부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관이 장기적, 독점적으로 수탁시 공정성 문제와 특혜시비는 물론 시장의 비경쟁 구도로 민간위탁의 성과 미흡 우려로 위탁사무의 경쟁력 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위탁사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에 합당한 예산의 지원과 관리는 효율적인 자원의 할 당과 중요한 영역에서 적시에 자원을 공급하고 과도한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다.

민간위탁 업무 중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의사소통과 조정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는 정보공유 부족, 이해관계자 간의 불충분한 협업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오해와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지역주민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수탁기관 간에 상시적 소통의 창구를 가동하여야 한다. 근로인원과 예산부족 시에 원활한 위탁사무의 수행이 불가하고 공공서비스의 최 일선에 있는 직원이 서비스만족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의 지원이 원활해야 한다. 안전사고 및 재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고 대응 및 해결이 지연되므로 사건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강력한 보고 기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위탁관련 각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여 책임과 권한의 위탁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민간위탁 점담기구 운영과 사회복지, 체육 등 분야별 예산에 대한 통합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위탁사무의 효율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다(2023.8.29.,강남구의회)

제2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선방안

1.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항에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중 하나일 경우로 하고 있다.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가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

어 중랑구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위 법리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서 구청장은 제5조 각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중랑구를 포함한 25개 서울시의 자치구가 대등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중랑구는 2021.4.1. 일자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조례를 개정 운영을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사무에 구청장의 임의적 기준과 개연성을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겠다.

3. 민간위탁의 사무내용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1. 4. 1.>, 8. 외국과의 경제·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 4. 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21. 4. 1.>을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고 있다. 중랑구 등 9개 자치구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서 위탁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나머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는 조례에 위탁사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

4. 수탁자 선정기준 규정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하여 동 조례가 신규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여 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각 항목간의 세부적인 평가 배점 및 평가 지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성적인 평가에 그쳐서 평가 결과의 신뢰에 대한 논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송파구는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뿐만 아니라, 동별 균형분포를 수탁자 선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별 균형 분포 조항이 중랑구의 지역과 자치여건에 합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

5. 민간위탁의 기간

조례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는 3년 이내와 5년 이내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강서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기간에 있어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는 기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타 법령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인 관련법 등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5년을 위탁 기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간위탁사무는 위탁사무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권도 위탁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5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있고 중랑구에 있어서도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시설의 민간위탁 사무 등에 대하여는 개별사업 조례에 따라서 5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

6. 민간위탁의 구의회 동의 및 동의안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 동의안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규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위탁 시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의 체결 등은 대다수 자치구 조례의 동의안에서 위탁계약 체결 시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 중구의 경우처럼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송파구는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각 자치단체의 자치 환경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

7. 위원회 구성

조례 제8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구의회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으로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한 후 위원회에서 호선하거나 선출하는 유형,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고 규정한 유형, 위원장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한 유형의 3종류가 있는바 중랑구는 두 번째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간에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이 시대적 흐름이나 자치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발전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총 9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는 ‘민간위탁사무와 관계한 공무원’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은 광진구처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거나 동대문처럼 민간위원을 전체 위

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랑구는 위촉직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성 간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8. 계약의 체결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자치구 대다수가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만 각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정하고는 있다. 다만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의 최 일선에 있는 수탁기관 직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관련 기관의 지침도 이행하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자 고용 근로 조건 개선 권고 지침을 계약 내용에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계약내용 중 민간위탁 예산·운영지원사항의 규정은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13개 자치구가 규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또는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규정은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3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22개 자치구가, 계약위반 시 책임·계약해지·조치사항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규정하고 유일하게 도봉구는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자 고용 근로조건 개선 노력의 규정은 중구, 용산구, 광진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8개 자치구가, 사업 계획에 따른 성과목표의 규정은 광진구가 유일한 자치구로서 2021.12.30.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는 2023.5.19. 조례 개정 시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9.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 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송파구를 비롯하여 종로구, 중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12개 자치구에서는 수탁사무 근로자의 고용·근로 조건 개선에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랑구 등 13개 자치구는 본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반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10. 수탁기관의 지도·감독·감사 규정

조례 제18조(지도·감독·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횡수 등은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도의 방향성과 감독의 방법론 등을 조례에 반영 공시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 현장에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사무의 집행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지도 감독의 결과를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서 재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강제하거나 일정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위탁사무 운영의 합리화나 지역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검토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강남구는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정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2023.5.19 조례를 신설하였다.

수탁기관의 감사와 관련하여 조례 제18조(지도·감독·감사)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대다수 자치구가 민간위탁 사무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가 가능하나 구로구가 유일하게 감사 실시 규정이 없으며, 금천구는 일반적인 감사 실시 규정 없이 재계약 시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실시 결과 위법 부당에 따른 시정조치 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는 규정이 구로구 등 4개 자치구 이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없고 유일하게 강남구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항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2017년 7월 5일, 신설)하고있다

11.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규정

조례 제19조(운영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또한 전문기관에 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 기관에 의한 평가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운영성과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기준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통지표와 개별 사업지표로 혹은 계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조례 또는 지침 등에 공표함과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여 및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민간위탁의 투명화와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수탁기관의 위탁의 취소 등

조례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

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랑구는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무능력 등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를 하고 의견의 진술 기회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 대부분도 이와 같은 취지의 계약 해지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다만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의 해제, 계약의 정지 등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여 정하고 있는바 해지와 해제, 취소와 정지등의 법률상의 효과가 서로 다르기에 좀 더 세밀하게 법리와 효과를 따져서 취소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13. 계약해지 사유 및 이의신청 등

계약의 해지 조건 중 1년 이상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과 관련 조문은 강동구가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는 2023.5.19.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등 4개 자치구는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위탁계약 해지 시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송부하는 규정은 강동구가 유일하고 위탁의 취소,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송파구가 유일하게 민간위탁조례에 내용이 없고 강남구는 제13조(지휘·감독) 제3항에 규정한 유일한 자치구이며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성동구, 은평구, 강서구, 강동구 4개 자치구는 이에 대한 불복의 이의신청 제도가 없다. 이의신청 관련하여 조례 제21조(이의신청)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나 민간위탁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의신청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일반 민원사무로 간주하여 처리토록 한 것으로 수탁기관을 계약의 당사자 지위로서 인정하는 인식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14. 재계약 규정

조례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심사 시에는 제19조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계약 관련하여 대다수의 자치구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 60일전, 9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자치구가 가장 많고 재계약과 관련 규정이 없는 자치구는 송파구를 비롯하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등 11개 자치구가 있다. 광진구와 강북구, 서대문구 3개 자치구는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10개 자치구는 6년, 10년 경과시, 매 3회차 마다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15. 재위탁 규정

조례 제2조(정의) 4.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면서도 이에 대한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와 재계약 기간, 심사방법과 이외에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급적 신규위탁 절차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개선방안

민간위탁에 관한 통일적인 기본법이 아직 없어서 2020.9월 입법 발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중에 있다. 현행 민간위탁은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과 시행령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및 각 부처의 규칙 등에 의해서 추진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및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사무, 노인복지법의 어르신관련 사무,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 활동지원 사무,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보호사무, 양성평등법에 의한 성 평등사무, 학교급식법등에 의한 급식사무 등 다양한 형태의 개별적인 사무들이 개별법령과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진행하고 있다.

1. 영유아보육 사업의 법 적용문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무는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중랑구의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고 민간위탁 시에는 영유아 보육법 제 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2, 서울시의 보육조례, 중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공신력10, 시설운영실적10, 어린이집원장35, 어린이집운영계획40, 재정능력5)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법령과는 다르게 영유아 복지시설에 맞는 규범체계를 세운 것이고 이를 통하여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에 합당한 보육사무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별적인 규범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법률로서 정하고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대통령령인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겠다.

2. 보육 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와 보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외국에서는 주로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97%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이서영, 2017). 영유아보육법령과 「서울시 보육조례와 중랑구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사무의 민간위

탁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위탁체 선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고 있고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⁴⁵⁾. 따라서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시에 구의회의 동의나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법령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위탁체를 정하고 있고 재위탁 시에도 같은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73%가 개인위탁하고 있으며 이중에 재위탁률이 99%에 이르고 있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는 정책이 무색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⁴⁶⁾.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처럼 보육조례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함은 물론 각 지자체의 육아보육의 특성과 효율 및 합목적성을 두루 감안하여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위탁체 수탁 횟수 제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탁수를 1회로 제한하는 자치구가 16개이고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자치구도 9개나 되고 있으며 중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3개 자치구는 개인에게 2개 이상 위탁을 금지하고 있고 동대문구와 은평구, 서대문구, 은평구는 수 개 이상 위탁을 금지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니는 공공성과 위탁 운영체의 비영리성 담보를 위해서는 수탁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편중되어 사유화의 성격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 위탁자의 경우 복수 수탁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⁴⁷⁾. 각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탁 허용 개수에 대한 융통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탁체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총 위탁기간에 대한 제한

45) 권미경, 2015.10.15, 육아정책연구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46) 대한뉴스, 2022.10.21.

47) 권미경, 201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적시함으로써 92%에 달하는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도봉구와 금천구 2개 자치구만이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자치구 조례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기간 수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회 재위탁만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실제 위탁 기간은 최소 10년 정도가 될 정도로 위탁 운영 기간이 길어진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그와 동시에 시설 운영의 해이와 사유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능력 있는 위탁 희망 주체가 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고, 참여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다(권미경, 2015). 원칙적으로 신규위탁 5년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 위탁제도 동일한 조건에서 완전히 공개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⁴⁸⁾.

5. 재 위탁제 선정기준 강화

대한뉴스(2022.10.21.)는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에서 2022년도에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318개소 중 단 4곳(1.3%)만 재위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은 337개소 중 10개소(3.0%)가 탈락했으며, 2021년은 365개소 중 16개소(4.4%)가 탈락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다수가 재위탁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총 3,099명으로 2022년말 기준 3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14명이나 있었고 20~29년째인 원장이 78명(2.5%), 10~19년째인 원장이 275명(8.9%)으로 총 367명(12%)이 1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위탁은 위탁 기간 종료 전에 운영과정에서 평가가 가능하나 현재의 기준은 제출하는 서류에만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현장 관찰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실제 운영현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재 위탁 심사시 현장관찰 및 부모의견조사 반영 등 다면적인 평가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⁴⁹⁾.

6. 기타 개선 검토사항

48) 이서영, 2017.8. 사회복지법제 연구, 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 분석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 운영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권미경 2015. 육아정책연구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보육정책위원 구성운영의 공정화이다. 서수경 외(2013)⁵⁰⁾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심사, 공표의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성단계에서 보육정책위원회 3배수를 추천받아 이를 공표하고, 심사단계에서는 이해집단에 속하는 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심사단으로 하여금 추천받은 보육정책 위원들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위탁제 선정기준 강화로 권미경(2015)⁵¹⁾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 4항 및 5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인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만으로는 위탁제의 전문성과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평가 시에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 인사 및 회계 운영관리, 위탁전입금 지원 계획 등의 관련 자료를 심의기준으로 추가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8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민간위탁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

- ①민간위탁 적격심사와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평가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 비율 적시, 지도감독 시 구체적인 방향성 사전제시, 평가 결과의 일정비율을 재계약 시 의무 반영, 수탁기관의 과도한 서류작업과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제도 개선, 회계 통합회계 시스템 마련 검토와
- ②특히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수탁기관 선정단계가 공정해야 한다.

- ①심사위원회를 구성 시 관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의

50) 서수경외, 20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방안. 95~108p

51) 권미경, 2015. 육아정책연구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선임에 객관성을 담보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23.9.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②수탁기관 선정 평가 항목과 지표를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개별사업 평가지표를 중점개발하고 배점 비율도 조정 및 사전공시, 수탁 희망기관이 공모심사 과정에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고

③수탁기관 평가방식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과 함께 위탁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계약 및 운영과정이 명확하여야 한다.

①위탁사무의 계약 시 당사자간 역할, 책임 및 권한에 대해 계약 조건이 명확화, 또한 공공서비스 생산과 서비스질을 좌우하는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상태 또는 계약 조건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낙찰자 선정방법 중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②사업예산의 집행과 정산이 아무런 견제와 모니터링 없이 자체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확인이 필요하며 이행보증장치도 마련하고

③아울러 수탁기관의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설장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 채용 공정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하겠다

4.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를 실효화 해야 한다

①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지도항목과 중점관리 지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특히 재계약 시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성과를 종합평가 후에 그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 또는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재계약 등에 대한 횡수 1회 제한 또는 기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②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이외에 법령과 회계 분야에 대한 위탁사무에 감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탁사무의 신뢰를 제고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성과평가 결과뿐 아니라 감사결과도 일정비율 재계약 등에 반영하여 관리감독의 역량을 확대하는 실효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③평가항목과 지표를 사전에 공표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지표

도 위탁사무의 유형에 따라서 공통지표와 각 사업에 특성을 감안한 개별지표 체계로 분류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계약과정에서 부실한 수탁기관이 계속해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서 치밀하고도 공개적인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5. 위탁사무 운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현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에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으나 일부 위탁시설에 있어서는 시설과 환경 및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특히, 키움센타의 주차장 확장 및 물품의 부족 문제에 대한 세밀한 확인과 지원이 필요하고 발달장애인 센타와 국공립어린이집도 등하교시 주차장 협소로 이용학생과 학부모의 불편 요인이 되고 있고 건물의 노후와 운영인력 및 예산의 부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아울러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민간위탁 전담기구 운영과 사회복지, 체육 등 분야별 예산에 대한 통합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위탁사무의 효율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고 수탁기관 간에 상시적 소통의 창구를 가동과 수탁기관에 대한 필요한 인원과 예산의 지원이 원활해야 하겠다.

6.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①민간위탁사무와 별도의 법령체계 및 수탁기관 선정 등의 절차와 기준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운영 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 혼란 초래하므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민간위탁 기본법이 속히 제정 공포되어야 하겠다

②관련하여 보육사무는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로 자치사무임이 분명함에도 소관상임위원회의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의회와 긴밀한 협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③어린이집 인가 후 수탁기관이 1회 계약기간이 5년으로 재계약 시에 최소 10년의 장기 수탁환경이 조성되고 대다수의 수탁기관이 변동이 없어서 독점화의 성향을 보이므로 재계약 평가의 지표와 항목 등에 대한 사전 공개와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관이 항상 지역보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적 조언

첫째, 지방자치 여건과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구조와 정치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물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집행부의 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민간위탁 사업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통계와 현황에 대하여 긴밀한 관심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각종 통계를 단순한 숫자로 이해한다면 숫자에 담긴 지역주민 생활의 실체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며 민간위탁제도는 지역주민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로써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정책적 수단과 방법, 정책의 실효성, 정책의지 등을 알 수 있어 집행부의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감독과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민간위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가 사회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비용 또한 국비.시비.구비의 매칭 형태로 일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지역의 개별적 환경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치여건이나 재정여건 및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맞지 않는 공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가 반영된 위탁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위탁 대상 서비스는 사회복지 및 단순시설관리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부분이 많다.

셋째, 민간위탁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통찰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사무는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향력 또한 빠르고도 크기에 위탁사무의 환경 변화에 대한 통찰력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정세나 정부의 정책 등의 대외적 환경 변화를 읽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정책결정의 한 축인 의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국제경제의 침

체 또는 최근의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의 위기가 글로벌화 하고 있어서 사회 공공지역서비스 수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어린이,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위탁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연구가 의원들의 취약계층 관련 민간위탁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지속가능한 생산과 공급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넷째, 민간위탁제도의 실효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과 정책적 아젠다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수 있다. 비용절감이나 서비스 수준향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도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담당직원 1인이 위탁사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총괄 전담부서 없이 각 부서별로 서로 다른 법령과 프로세스에 따라서 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재무회계도 위탁사무별로 운용됨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혼선과 비효율은 물론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위탁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민간위탁 사무가 과거 시설관리 업무에서 이제는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대되어 위탁사무의 중심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민간위탁 서비스가 사회 구성원의 취약계층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위탁 사무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만도 아닌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계층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영역이 된 것이기에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수탁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버넌스적 접근 및 운영 즉, 각 주체간의 연합과 이들 간 노력이 결집될 때에 위탁 성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인, 2019.5.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영국의 민간위탁법제에대한 연구, 106~122p
- 김문현, 2021.2. 울산연구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연구, 58~85p
- 김송이외, 20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19), 어린이집의 함께 돌봄 가치 확산 방안, 3p.
- 김용동, 2011.2. 대전발전연구원. 민간위탁 시설 운영 평가지표 개발
- 김정해, 2019.8.26.,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공청회, 민간위탁에 대한 분석과 논의
- 김정해외, 2020.8.14.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 ISSUE 민간위탁 문제 사례분석
- 권미경, 2015.10.15. 육아정책연구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 권경선, 2021. 한국외법논집 제45권 3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법제에 관한연구
- 류춘호. 2013. 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성과와 방향”, 「2013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문상덕. 2009.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과 자치행정법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8(2): 215-235p
- 박동운, 2019.5.13. 시장경제학회. 마거릿 대처, 구조개혁으로 영국과 세계 시장경제로 바꾸다
- 박기묵외, 2020.12. 한국지방자치학보, 제17권 제3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01~138p
- 서수경외, 20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방안. 95~108p
- 송광태. 2005.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7권제2호(통권50호).
- 이상일외, 2016.1.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결정 요인에 관한연구, 129~163p
- 이서영, 2017.8, 사회복지법제연구, 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 분석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59~78p
- 이정석외, 2020.2. 부산연구원, 부산시 민간위탁 성과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이재훈외. 2018.10.15. 한국법제연구원.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46p
- 이효외, 2009.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제고방안,

10p

조막레외 20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07),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시 국
공립어린이집(재)위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3p

최길수.원구환, 2021. 대전세종연구원,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15~36p

최무현외, 2021.12.17., 한국행정학회, 주요국가 민간위탁 현황 및 사례분석 보고서,
209~220p

최순영, 2019.12. 한국행정연구원,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05422/

중랑구의회,<https://council><https://>

중랑구의회,의원홈페이지,[council.jungnang.go.kr/member/09040/main.do.jungna
ng.go.kr/](https://council.jungnang.go.kr/member/09040/main.do.jungnang.go.kr/)

국민권익위원회. 2019.1.15. <https://www.acrc.go.kr/board.es?mid=>

행정자치부(2003),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법제처, 법제업무정보.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10000>

지방재정365, <https://www.lofin365.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spa.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알리오 <http://www.alio.go.kr/alio/main/main.jsp>

재정고 <http://lofin.mospa.go.kr/main.jsp>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

<http://ebook.seoul.go.kr/Viewer/OR34EWKNE5YL>

중랑구청홈페이지 <https://www.jungnang.go.kr/portal/main.do>

서울특별시청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강남구청홈페이지 <https://www.gangnam.go.kr/main.do>

강동구청홈페이지 <http://gangdong.go.kr/>

강북구청홈페이지 <https://www.gangbuk.go.kr/www/index.do>

서울강서구청홈페이지 <https://www.gangseo.seoul.kr/index>

관악구청홈페이지 <https://www.gwanak.go.kr/site/gwanak/main.do>
광진구청홈페이지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main.do>
구로구청홈페이지 <http://guro.go.kr/>
금천구청홈페이지 <https://www.geumcheon.go.kr/portal/index.do>
노원구청홈페이지 <https://www.nowon.kr/www/index.do>
도봉구청홈페이지 <https://www.dobong.go.kr/>
동대문구청홈페이지 <https://www.ddm.go.kr/www/index.do>
동작구청홈페이지 <https://www.dongjak.go.kr/portal/main/main.do>
마포구청홈페이지 <https://www.mapo.go.kr/site/main/home>
서대문구청홈페이지 <https://www.sdm.go.kr/index.do>
서초구청홈페이지 <https://www.seocho.go.kr/site/secho/main.do>
성동구청홈페이지 <https://www.sd.go.kr/main/index.do>
성북구청홈페이지 <http://www.sb.go.kr/>
송파구청홈페이지 <https://www.songpa.go.kr/www/index.do>
양천구청홈페이지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main.do>
영등포구청홈페이지 <https://www.ydp.go.kr/www/index.do>
용산구청홈페이지 <https://www.yongsan.go.kr/portal/main/main.do>
은평구청홈페이지 <https://www.ep.go.kr/www/index.do>
종로구청홈페이지 <https://www.jongno.go.kr>
서울중구청홈페이지 <https://www.junggu.seoul.kr/main.do>
뉴스스, 2023.2.19.,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
대한뉴스, 2022.10.22.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9>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서울신문, 2013.7.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한국헤럴드경제, 2022.8.30.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

부 록

1. 민간위탁 담당부서 현황
2. 민간 위탁시설 주요 질문내용
3. 민간위탁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표
4. 중랑구 민간위탁 현황
5. 중랑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6. 주요 인터뷰 내용
7. 심층면접 민간위탁 담당 부서(공무원) 현황
8. 심층면접 수탁기관 관계자 현황
9. 수탁시설 이용자 설문지
10.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1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2. 서울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3.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1. 민간위탁 담당부서 현황

구분	사업수	담당부서(과)	해당팀(인원)
계	50	16개과	20개팀(16명)
청소년분야	1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아동분야	5		아동정책팀
어르신분야	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
장애인분야	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보육분야	6	보육지원과	양성평등팀 보육행정팀
보건분야	3	보건행정과 위생과	동물보호팀 식품안전팀
의료분야	3	건강증진과 의약과	정신건강팀 검진팀
복지지원분야	5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교육분야	3	교육지원과	학교시설팀 평생교육팀 방정환교육지원팀
지역경제분야	2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패션봉제팀 일자리지원팀
기타분야	4	마을협치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마을지원센터 체육진흥팀 공원관리팀 교통시설팀

2. 민간 위탁시설 주요 질문내용

1). 민간위탁 조례관련

-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할 사항 :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신설할 사항 :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에 없는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나 구의회 보고 등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2) 민간위탁 정책 관련

- 중랑구 민간위탁관리 지침 개선사항 : 중랑구 민간위탁관리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민간위탁제도에 참여하도록 제공되는 유인책 : 중랑구 민간위탁 정책 중 민간위탁시장에 참여를 유인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3) 민간위탁 제도 관련

- 회계정산시스템 단일화 문제 : 민간위탁의 기존 회계결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제도의 단일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법인전입금 폐지와 민간위탁수수료 보전 문제 : 법인전입금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며,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보전은 무엇입니까?

4) 민간위탁 대상 업무 관련

-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 중랑구의 민간위탁제도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선정기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민간위탁 계약 단가와 적정이윤의 문제 : 계약단가의 과다 계상 등으로 적정 이윤 초과 지급 등의 사례는 없는지요?
- 위탁대상 사무의 적절성 문제 : 위탁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나 분석을 하지 않고 업무를 민간위탁에 위탁하는 등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5) 민간위탁기관 선정 관련

- 특정기관이 독점적 수탁기관의 지위를 보유하는 문제 : 특정기관이 독점적 수탁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수탁기관 선정시 대부분 정성지표 구성의 문제 : 민간위탁제도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대부분 정성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요?
- 수탁기관 선정시 심사평가위원회 선정의 실효성 문제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위원회의 의례적은 심사와 평가등 기관 선정의 통과의례 문제는 없는지?

6) 민간위탁 계약 관련

- 계약 조건의 모호성 문제 : 민간위탁 계약에서 계약 조건의 모호성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인지요?.
- 성과지표 및 측정척도의 부족 : 민간위탁계약에서 성과지표와 측정척도의 미흡과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7) 민간위탁업무 수행 관련

-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무처리의 어려운 문제 : 민간위탁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무처리에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요?
- 예산관리의 어려움 문제 : 민간위탁에서 예산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요?
- 위탁업무 부실수행으로 관리소홀 및 부실측정·관리 등의 문제 : 위탁업무의 부실로 인한 관리 소홀 및 측정·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요?
- 근로인원 및 예산의 부족 : 민간위탁의 수행에 있어 근로인원 및 예산의 부족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고려하거나 구현하고 있는지요?

8) 수탁기관 현장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 안전 규정 준수 문제 : 수탁기관 현장에서 사고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수칙 및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 개선 조치 및 예방 조치 : 수탁기관 현장에서 사고나 사고 발생 후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장하는 개선책과 예방책은 무엇인지요?
- 의사소통 및 보고 : 민간위탁기관의 수탁기관 현장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통 및 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9) 민간위탁업무 관리 감독체계

- .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제도 미흡 문제 :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 재계약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 . 민간위탁 관리 및 감독 시 현장점검 방법 : 민간위탁의 관리 및 감독에서 현장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의 중점사항은 무엇인지요?
- . 재계약의 관리·감독 소홀 및 조례 미비 : 위탁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재계약이 반복되는 등 관리감독의 개선책은 무엇인지요?

10) 중랑구민 참여

- .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 등 : 중랑구민의 민간위탁시설에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 . 이용자 중심의 논의기구 : 민간위탁의 중랑구민 참여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이용자 중심의 논의기구가 있는지요?

11) 성과 및 실패사례, 건의사항

- .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등 주목할 만한 사항 : 중랑구의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사례나 실패등 주목할 만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요?
- . 민간위탁사업의 개선 또는 건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3. 민간위탁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표

민간위탁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중랑구의회에서는 중랑구 관내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하여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 공공정책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하여 위탁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1호 카목“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중랑구의회	조사 수탁 수행 기관	(사)한국공공정책 개발연구원
------	-------	----------------	--------------------

반갑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중랑구 민간위탁기관을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시설에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잘 공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중랑구민 여러분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내실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바쁘시지만 민간위탁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잠시 시간을 내셔서 진솔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될 것이며, 본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일 010-6385-4606

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이상

3. 귀하(또는 자녀)께서는 이곳 시설을 지난 1개월 동안에 몇 번 정도 이용하였습니까?

① 매일

② 매주 1~2회

③ 보름에 1~2회

④ 한달에 1~2회

⑤ 첫 번째 이용

4.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 직원들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이 이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충족

②약간 충족

③그저 그렇다

④약간 미흡

⑤매우 미흡

7.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이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8.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의 환경이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개선

② 약간 개선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미개선

⑤ 매우 미개선

9.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운영 개선

②서비스 수준 개선

③시설 및 환경개선

④프로그램 개선

⑤기타()

10.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이곳 시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나 불편하신 점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중랑구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4. 중랑구 민간위탁 현황

구분	사업명	수탁기관	기간	사업비 (천원)	최초 위탁일
11개 분야	50개 사업	50개		26,430,000	
청소년분야 (아동청소년 과,10개)	청소년독서실운영	중랑구 사회복지협의 회	2022~ 2024	610,584	2006
	청소년안전망	한국청소년연 맹	2021.7~ 2024.6	378,244	2013.1.1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중랑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021.1~ 2023.12	167,114	2015.4.28
	청소년커뮤니티 공간(2호점)	1318 상상발전소	2023.5~ 2025.4	78,333	2021.5.1
	청소년커뮤니티 공간(3호점)	희망 나래유스	2022.10~ 2024.9	122,000	2022.1.1
	청소년커뮤니티 공간(4호점)	1318 상상발전소	2023.4~ 2025.3	133,000	2023.4.1
	청소년커뮤니티 공간(5호점)	희망 나래유스	2022.10~ 2024.9	87,500	2022.10.1
	민간청소년 커뮤니티공간	1318 상상발전소	2023.1~ 2023.12	82,126	2019.8.1
	민간청소년 커뮤니티공간	희망 나래유스	2023.1~ 2023.12	77,689	2019.8.1
	만간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서울 예술학교	2023.1~ 2023.12	38,400	2019.8.1
아동분야 (아동청소년 과,5개)	우리동네키움센터 (신내동)	휴먼해피	2019.11~ 2024.11	467,000	2019.11.20
	우리동네키움센터 (목동)	여명복지회	2020.11~ 2025.11	658,000	2020.11.2
	우리동네키움센터 (면목4동)	중랑구 사회복지회	2021.11~ 2026.11	734,500	2021.11.10
	우리동네키움센터 (면목7동)	운가 자비원	2022.4~ 2027.3	747,600	2022.4.1
	우리동네키움센터	행복나눔	2022.4~	747,600	2022.4.1

	(망우본동)	문화재단	2027.3		
어르,신분야 (어르신복지 과,4개)	노인종합복지관 (신내)	영안 복지재단	2019.3~ 2024.3	1,381,285	2008.10.6
	경로복지센터 (중화)	자광재단	2022.1~ 2026.12	464,784	2008.4.4
	경로복지센터 (용마)	신망애 복지재단	2022.10~ 2027.9	514,892	2014.10.1
	경로복지센터 (신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023.3~ 2028.3	396,881	2018.3.1
장애인분야 (장애인복지 과, 5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	2023.1~ 2023.12	742,300	2007.4.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운영	성민 사회복지법인	2022.1~ 2024.12	571,000	2019.4.22
	장애인가족센터 운영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2022.10~ 2025.9	207,390	2022.10.1
	중랑구립 직업재활센터	한국지체장애 인협회	2022.4~ 2027.3	144,628	2002.4.1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사업	장애인편의 증진기술센터	2022.1~ 2024.12	187,660	2008.1.1
보육분야 (보육지원과, 6개)	중랑구성평등 활동센터	초록상상	2022.3~ 2024.12	260,070	2022.3.15
	아이돌봄 지원	비전공유 협동조합	2021.7~ 2024.6	3,824,490	2018.7.3
	중랑구가족지원 센터 운영	사)일일시호	2022.10~ 2025.9	1,381,000	2022.10.1
	구립직장어린이집 운영	유린 보은동산	2023.1~ 2027.12	952,881	1997.6.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일대학교	2022.11~ 2025.11	830.100	2010.10.1
	장난감도서관운영 (1,2,3호점)	중랑구사회 복지협의회	2021.6~ 202.6 (1,2호) 2022.11~ 2025.11 (3호)	453,733	2009.6.24. (1호) 2010.11.24 (2호) 2022.11.8. (3호)
보건분야 (보건행정과2 , 위생과1)	길고양이 보호	사랑이있는 동물병원	2022.1~ 2023.12	120,000	2022.1.1
	유기동물보호지원	한국동물 관리협회	2002~현재	49.716	2002~
	어린이급식관리	서일대학교	2022.1~	600,000	2019.9.1

	센타 운영	(산학협력단)	2024.12		
의료분야 (건강증진과2 의약과1)	건강증진 복지센타	서울 의료원	2022.1~ 2024.12	1,380,407	2010.1.1
	치매안심센타	서울 북부병원	2023.1~ 2025.12	1,600,000	2009.9.29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3~ 2023.12	69,430	2008.6.1
복지정책과 (복지지원분 야,5개)	종합복지관운영 (면목)	자광재단	2022.12~ 2027.12	1,108,126	1992.1.14
	종합복지관운영 (면목)	애원 복지재단	2018.12~ 2023.12	1,199,096	1995.12.20
	종합복지관운영 (면목)	서울 시립대학교	2019.7~ 2024.6	1,107,926	1996.12.18
	푸드마켓.뱅크센 타운영(중랑)	서울지체장애 인협회 (중랑지회)	2022.11~ 2027.11	181,996	2005.12.22
	푸드마켓.뱅크센 타운영(면목)	중랑구사회 복지협의회	2022.11~ 2027.11	107,985	2020.4.20
교육분야 (교육지원과, 3개)	공공급식센타	주)복지유니온	2022.4~ 2023.6	734,553	2019.4.1
	중랑아카데미운영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2023.4~ 2024.12	20,000	2022.4.1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타	주)달꿈	2023.1~ 2024.12	305,800	2021.1.1
지역경제분야 (기업지원과1 지역경제과1)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운영	한국봉제 산업협회	2023.1~ 2024.12	220,000	2021.11.15
	노동자종합지원 센타	민주노총 중랑지부	2022.9~ 2025.8	371,318	2019.9.1
기타분야 (마을협치과1 , 체육진흥과1, 공원녹지과1, 교통행정과1)	마을지원 센타운영	중랑 마을넷	2023.1~ 2025.12	252,860	2020.1.1
	인공암벽장	서울 산악연맹	2023.4~ 2025.12	171,964	2015.10.22
	어린이공원 정비및유지관리	대한노인회 (중랑지회)	2021.1~ 2023.12	266,000	2008.7.1
	자전거교통안전 체험장	중랑구 체육회	2023.3~ 2026.2	25,327	2017.2.27

5. 중랑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명	주소	연락처	위탁체	위탁기간	원장
금강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00길 20 (망우동)	02-434-9669	학교법인 열린학원	2023.01.01 ~2027.12. 31(5년)	이영애
금강펜테리움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160 관리동 (망우동)	02-2208-6366	한국아동 보육복지 협회	2021.10.01 ~2026.09. 30(5년)	형경희
금파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520-5 (망우동)	02-434-0600	개인	2023.01.01 ~2027.12. 31(5년)	홍인실
금호어울림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10길 75 금호어울림 관리동 (망우동)	02-434-0678	개인	2022.03.01 ~2027.02. 28(5년)	양난주
꼬마사랑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6길 9 (면목동)	02-432-0097	개인	2020.04.01 ~2025.03. 31(5년)	백경라
꿈마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검재로50나길 71 (면목동)	02-433-8734	개인	2019.12.01 ~2024.11. 30(5년)	박영옥
꿈터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2길 90 두산아파트 관리동(면목동)	02-435-3382	개인	2019.10.01 ~2024.09. 30(5년)	이영희
다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145-1 5동 103 호(신내동, 중앙하이츠아파트)	02-6212-0330	개인	2018.12.01 ~2023.11. 30(5년)	조양순
동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공원로3길 40 (망우동)	02-432-6461	대한불교 조계종법 장사	2021.01.01 ~2025.12. 31(5년)	김지영
동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14길 19 (목동)	02-974-6893	개인	2023.01.01 ~2027.12. 31(5년)	김영란
드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검재로64길 23 (면목동)	02-493-1692	영안복지 재단	2019.10.01 ~2024.09. 30(5년)	김혜경
딸기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5길 19 106동P층 (망우 동,중랑숲리가아파트)	02-2208-7707	대한불교 조계종법 장사	2023.01.01 ~2027.12. 31(5년)	김명숙
또또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584 (면목동)	02-434-8998	대한예수 교장로회 만나교회	2023.01.01 ~2027.12. 31(5년)	윤미애
라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1길 23 (면목동)	02-432-5592	개인	2023.02.01 ~2028.01. 31(5년)	염수연
면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9길 13 (면목동)	02-495-4604	밀알복지 재단	2023.01.01 ~2027.12. 31(5년)	오경숙
명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3길 70 (면목동)	02-434-4651	대한예수 교장로회 진광교회	2023.01.01 ~2027.12. 31(5년)	윤성미
배꽃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	02-494	개인	2020.01.01	맹미숙

	로109길 18 (망우동)	-5511		~2024.12.31(5년)	
배봉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15 (신내동)	02-3422-1891	서울시립대학교	2019.07.01~2024.06.30(5년)	이재희
보경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77길 12 (망우동)	02-438-3368	기독교대한감리회태은교회	2023.01.01~2027.12.31(5년)	오윤숙
보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286 101동 101호(묵동, 현대아이파크)	02-948-0533	개인	2020.03.01~2025.02.28(5년)	선계자
봉화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65 (상봉동, 신내12단지아파트 내 신내종합사회복지관,1층)	02-3421-2535	사회복지법인애원복지재단	2018.12.20~2023.12.19(5년)	김현정
사가정아이파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92길 40 (면목동)	02-496-8077	개인	2020.09.01~2025.08.31(5년)	김수진
사랑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43길 12-12 (묵동)	02-973-2396	개인	2023.01.01~2027.12.31(5년)	이종현
상봉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6길 57 (상봉동)	02-432-3421	주님손교회	2023.07.01~2028.06.30(5년)	김희정
새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2길 22 (면목동)	02-494-7612	개인	2019.03.01~2024.02.29(5년)	김성신
새솔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165 (신내동, 신내우디안2단지아파트 관리동)	02-3422-1592	개인	2019.03.17~2024.03.16(5년)	김순임
새싹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18길 9 (상봉동)	02-496-0866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2020.01.01~2024.12.31(5년)	윤이경
새우개하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9다길 17 (신내동)	02-438-1318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0.07.01~2025.06.30(5년)	황성미
새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16 관리동 1층 (신내동)	02-3421-7900	개인	2023.03.01~2028.02.29(5년)	양호원
서일대학교부설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90길 28-5 (면목동)	02-492-3993	학교법인세방학원	2019.10.01~2024.09.30(5년)	윤란호
세화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23길 125 (중화동)	02-492-4789	개인	2023.01.01~2027.12.31(5년)	임지은
수자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72길 26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 단지내 (면목동)	02-432-8366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2020.03.01~2025.02.28(5년)	최윤정
신나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길 22 (면목동)	02-432-5799	개인	2021.03.01~2026.02.28(5년)	정다운
신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25가길 39-26 (신내동)	02-432-0880	개인	2020.01.01~2024.12.31(5년)	장명희
신사임당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02-494	개인	2019.09.01	한현주

어린이집	51 104동 103호(신내동, 성원아파트)	-2179		~2024.08.31(5년)	
아름뜰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8길 76 1509동 101호 (상봉동)	02-6231-2848	개인	2022.08.01~2027.07.31(5년)	주은숙
아미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112 101동 102호 (신내동)	02-436-3859	대한예수교장로회신내성화교회	2023.03.01~2028.02.29(5년)	김정은
아이누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752 107동 102호 (중화동, 한신아파트)	02-433-1642	동부제일교회	2023.03.01~2028.02.29(5년)	지미예
아이숲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48길 62 104동 105호 (상봉동, 건영아파트)	02-432-2890	개인	2019.03.01~2024.02.29(5년)	김명자
알콩달콩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5 808동 109호 (신내동)	02-3423-3577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2023.03.01~2028.02.29(5년)	김경진
어울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3길 47 (망우동)	02-496-9497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2022.01.01~2026.12.31(5년)	최미선
엘스타시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10길 47 엘스타시온관리동 (망우본동)	02-433-9702	개인	2022.03.01~2027.02.28(5년)	이진경
열린꿈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9길 42 612동 101호 (신내동, 신내대주아파트)	02-3423-0079	학교법인열린학원	2022.08.14~2027.08.13(5년)	김선야
열매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0길 26 (면목동)	02-433-9889	개인	2023.01.01~2027.12.31(5년)	전지혜
예쁜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10 13동 106호(신내동, 동성아파트)	02-438-5751	개인	2022.08.01~2027.07.31(5년)	이정은
예술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7나길 24 212동 102호 (상봉동, 건영2차아파트)	02-434-6563	개인	2018.12.01~2023.11.30(5년)	문정화
용마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393 (면목동)	02-439-5595	사단법인여명복지회	2020.01.01~2024.12.31(5년)	안현주
우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51 101동 101호 (신내동, 우남프리미아파트)	02-3422-5790	개인	2019.03.01~2024.02.29(5년)	이혜정
우리들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4길 18-13 (묵동)	02-973-0577	개인	2019.12.01~2024.11.30(5년)	현순용
유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332 102동 106호(묵동, 한국아파트)	02-976-9066	개인	2021.10.01~2026.09.30(5년)	이혜영
이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18길 59 105동107호(묵동,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	02-949-8915	개인	2019.03.01~2024.02.29(5년)	김영주
이화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7길 85 (면목동)	02-432-4425	영안복지재단	2022.07.01~2027.06.30(5년)	신예희
자람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71길 11 101동 101호	02-435-6806	개인	2021.09.01~2026.08.	김화영

	(면목동, 용마2차한신아파트)			31(5년)	
중랑숲어울림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 로 18	02-493 -4833	개인	2023.03.01 ~2028.02. 29(5년)	박은숙
천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 로64길 10-4 (면목동)	02-220 7-8004	개인	2019.03.17 ~2024.03. 16(5년)	박향미
초롱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 로3길 28 (중화동)	02-436 -9439	기독교대 한성결교 회 동일교회	2023.03.13 ~2028.03. 12(5년)	허현순
키즈어울림어린 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 로 18 108동 107호 (망 우동)	02-433 -3401	개인	2021.11.01 ~2026.10. 31(5년)	박영숙
푸른숲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 로94길 94 (면목동)	02-220 8-3004	개인	2020.03.01 ~2025.02. 28(5년)	이지연
하늘빛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 로21길 14 (중화동)	02-434 -7117	개인	2020.11.01 ~2025.10. 31(5년)	지미경
하늘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 로 210 102동(면목동, 용 마산하늘채)	02-491 -0901	중랑구사 회복지협 의회	2023.09.01 ~2028.08. 31(5년)	박지희
하람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 로1길 85 (신내동, 신내 우디안1단지아파트 관리 동)	02-342 3-3733	기독교대 한성결교 회 동일교회	2019.09.22 ~2024.09. 21(5년)	송영옥
한내들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39라길 24 (중화동)	02-434 -2666	대한불교 조계종법 장사	2023.01.01 ~2027.12. 31(5년)	유혜주
햇살아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 로 131 (신내동)	02-342 3-0150	한국어린 이안전재 단	2022.03.01 ~2027.02. 28(5년)	신혜경
행복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 로 92 (망우동)	02-220 8-1891	함께사는 세상	2022.05.01 ~2027.04. 30(5년)	고은경
혜성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36나길 29-6 (중화동)	02-439 -5431	기독교대 한감리회 한마음교 회	2023.01.01 ~2027.12. 31(5년)	엄인자

출처 : 중랑구청 자료

6. 주요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민간위탁조례	. 민간위탁 조례 추가 또는 개정사항 . 조례시행규칙 신설 또는 관리지침 필요성
.민간위탁기관선정	. 위탁사업 수탁기관선정의 경쟁환경 . 특정기관 장기간 독점지위보유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항목 및 배점
. 민간위탁계약사항	. 계약서 표준화 및 지위의 대등성 . 계약내용의 모호성과 부적절한 사항 . 계약방법 및 위탁료산정 기준
. 민간위탁업무수행	. 위탁사무 수행의 독립성 및 어려움 . 위.수탁 기관간 소통창구 운영 및 방법 . 인력채용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문제점
. 민간위탁 회계운영시스템	. 예산청구,집행체계의 복잡성 및 개선사항 . 정상 보고 및 승인체계의 적절성 . 사업별운영시스템 개선방안
. 민간위탁지도.감독체계	. 지도 감독 방법 및 횡수(현장방문, 실적보고등) . 지도감독의 중점사항(계약이행,회계처리등) . 지도감독시 감사기구 활용여부등
. 민간위탁 평가 및 활용	. 성과 평가 방법 및 횡수 .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효율성, 서비스성과등) . 평가결과의 활용(재계약등)
. 관리지침 및 선정기준	. 민간위탁관련 정책 및 지침 개선사항 . 민간위탁기관 선정기준 보완사항
.구민참여 및 성공.실패사례등	. 민간위탁시설 이용구민의 위탁사무 참여정도 . 성공 또는 실패사례 . 주목할만한 성과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

7. 심층면접 민간위탁 담당 부서현황

구분	사업수	담당부서(과)	해당팀(인원)
계	50	16개과	20개팀(16명)
청소년분야	1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아동분야	5		아동정책팀
어르신분야	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
장애인분야	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보육분야	6	보육지원과	양성평등팀 보육행정팀
보건분야	3	보건행정과 위생과	동물보호팀 식품안전팀
의료분야	3	건강증진과 의약과	정신건강팀 검진팀
복지지원분야	5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교육분야	3	교육지원과	학교시설팀 평생교육팀 방정환교육지원팀
지역경제분야	2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패션봉제팀 일자리지원팀
기타분야	4	마을협치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마을지원센터 체육진흥팀 공원관리팀 교통시설팀

8. 심층면접 수탁기관 관계자 현황

연번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관계자	연락처
1	청소년커뮤니티운영 (2호점)	사)1318상상발전소	송은혜 센터장	02)2207-7942
2	청소년커뮤니티운영 (3호점)	사)희망유스레스	정철희 센터장	020978-7933
3	목동키움센터 (2호점)	사)여명복지회	이용미 센터장	02)972-6633
4	면북7동키움센터 (4호점)	사)운가자비원	윤유정 센터장	02)6212-0232
5	구립노인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김현숙 과장	02)3421-4800
6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	원광장애인복지관	이민정 과장	02)6963-0704
7	중랑구립직업재활 센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서현 과장	02)977-8291
8	아이돌봄센터	비전공유협동조합	김선향 팀장	02)435-4147
9	가족센터운영	사)알일시호일	전수진 사무국장	02)435-4142
10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일대학교	박윤미 센터장	02)495-2530
11	중랑푸드마켓운영	사)서울시지체장애인 중랑구지회	최종혁 팀장	02)493-1582
12	공공급식센터	주)복지유니온	김성진 과장	02)2088-2227
13	패션봉재공용장비 운영	사)한국봉제산업협회	김은경 팀장	02)496-4103
14	마을지원센터	사)중랑마을넷	김은별 과장	070)8803-4103

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이상

3. 귀하(또는 자녀)께서는 이곳 시설을 지난 1개월 동안에 몇 번 정도 이용하엿습니까?

① 매일

② 매주 1~2회

③ 보름에 1~2회

④ 한달에 1~2회

⑤ 첫 번째 이용

4.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 직원들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이 이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충족

②약간 충족

③그저 그렇다

④약간 미흡

⑤매우 미흡

7.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이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8.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의 환경이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개선

② 약간 개선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미개선

⑤ 매우 미개선

9. 귀하께서는 이곳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운영 개선

②서비스 수준 개선

③시설 및 환경개선

④프로그램 개선

⑤기타

10.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이곳 시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나 불편하신 점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중랑구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10.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2020.9. 행정안전위원회)

가. 제안경위

. 제 출 자 : 정 부

. 제출연월일 : 2020. 6. 26.

. 회부연월일 : 2020. 6. 29.

나. 제안이유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기한을 두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 전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탁기관 소속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각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2)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민간

위탁 운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11조)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수탁기관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안 제14조)

민간위탁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4). 관리·감독(안 제18조)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관은 관리·감독의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5). 종합평가(안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6).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23조)

위탁기관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제출 (2017.4.13.)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에 再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 ①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각 위탁기관에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두고,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각 위탁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 ③ 행정기관은 법정 수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그 선정 결과 등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 ④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의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며,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제정안은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총 **6개 장 및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에서는 법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총칙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2장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등을 규정하여 실제 민간위탁 시 위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며,

제4장에서는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등에 대한 종합평가 등을,

제5장에서는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민간위탁인 법정위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마.. 제정안의 취지

- 민간위탁이라 함은 행정권한이나 행정기관의 사무를 사인, 즉 사법인이나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현재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제6조 제3항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위탁규정”이라 함)제3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 「정부조직법」제6조 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수탁기관과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 법령 내용 >

「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② (생략)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장 주요내용

- 위탁 대상 사무(제11조):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수탁기관 선정 기준(제12조)
 -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
 - 공개모집 원칙
- 수탁 계약 내용(제13조):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
- 지휘·감독(제14조):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시·조치, 필요한 사항의 보고 요구, 사무 처리의 취소 및 정지 등
- 위탁사무 처리 상황의 감사(제16조):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감사

-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규율 체계는 기본적으로 개별 위탁기관 차원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감사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실제 행정안전부가 '16년 하반기에 실시한 중앙부처의 민간위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37개 부처(당시)에서 1,750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완전 독점 형태로 수탁하고 있는 경우가 79.8%에 이르고 있고,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42.9%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하고 있는 비율은 2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총 민간위탁 건수의 96.7%인 1,693건이 개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3.3%인 57건만이 일반법령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는 범정부적인 일관된 민간위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가 제정안을 제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임.

< 중앙부처 민간위탁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

- 37개 부처에서 총 1,750건을 406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 근거법령 : 개별 법령(1,693건, 96.7%), 위임위탁규정(57건, 3.3%)
- 위탁형식 : 법정위탁(74.9%), 지정위탁(20.9%), 계약위탁(4.2%)
- 수탁기관
 - 사무(1,750건) 기준 : 공공기관(48.5%), 금감원(23.5%), 협회(11.9%)
 - 기관(406개) 기준 : 공공기관(146개, 36%), 협회 113개(27.8%), 비영리단체(83개, 20.4%) 순
- 경쟁성정도 : 완전독점(79.8%), 독과점(4.8%), 수의경쟁(11.2%), 완전경쟁(3.7%)
- 주요 위탁사항 : 확인·조사(25%), 검사·승인(15.3%), 신고·등록(12.8%)

- 이에 제정안은 ① 민간위탁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차원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②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평가, ③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원칙, ④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에 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그동안 개별법령 위주로 진행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위탁대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부적절, 위탁업무 수행의 부적정 및 비효율성,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의 취지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 관리의 일관성 확보**는 개별

위탁기관 차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민간위탁 운영과는 상충관계이므로, 구체적인 개별 조문의 심사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개별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지를 유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⁵²⁾).

바. 민간위탁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대행, 용역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도록 위탁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한하여 이 법이 우선적용한다

52) 제정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반대의견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되었음. 요지는 제정안이 중복적 규제를 포함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행정안전부로의 행정권한 집중을 초래하고, 공개모집의무가 위탁절차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 현황
2. 민간위탁 환경의 변화와 전망
3. 민간위탁 운영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4. 기타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민간위탁제도를 범부처적으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심의
2. 민간위탁 운영상황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3.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4. 그 외 범정부 차원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위탁기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2.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심의
3.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심의
4. 위탁기관의 재계약 결정에 대한 심의
5.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
6. 위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7. 민간위탁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수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 외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행정기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12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기관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단일한 수탁기관을 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수탁기관을 지정한다.

④ 행정기관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2.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3. 수탁기관의 비용절감능력

⑤ 수탁기관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해당 위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이의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계약체결)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감독,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수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사무의 범위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위탁)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한 부분은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재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위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 위탁행정기관의 감독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 성과평가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결과 재계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16조(정보공개) ① 위탁기관은 소관 위탁사무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탁사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목록의 작성, 공표 및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

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수탁자선정결정을 철회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탁자선정결정을 철회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은 이를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수탁자선정결정의 철회,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12조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감사)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④ 위탁기관은 감사결과를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감사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위탁기관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성과평가)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수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위탁일몰제) ①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관은 존속기한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존속기한의 연장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상황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 제4항, 제17조 제5항, 제18조 제5항,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제출내용을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평가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소속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점검·평가의 결과를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⑦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당시의 민간위탁 중 위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 후 1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민간위탁 중 위탁계약기간을 정한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위탁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11.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6., 2009. 7. 30.,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7. 30., 2014. 5. 14., 2021.3.25>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7. 30.>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 5. 14.>

[제목개정 2009. 7. 30., 2014. 5. 14.]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4. 5. 14.]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3.25, 2021.12.30>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8, 2021.12.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9. 3. 28.>

[전문개정 2017. 7. 13.]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21.]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7.16>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14. 5. 14.>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5. 14.>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5. 14.>
-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5. 14.>
-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5. 14.>
-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14.>

[본조신설 2009. 7. 30.]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3. 18., 2009. 7. 30., 2014. 5. 14., 2019. 9. 26.>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0., 2014. 5. 14., 2019. 3. 28.>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4. 5. 14.>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9. 7. 30., 2014. 5. 14.>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8.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8. 1., 2015. 10. 8., 2021.7.2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7. 30.>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개정 2009.

7. 30.>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7.16>
-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 7. 30., 2020.7.16>
-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 5. 14., 2020.7.16>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4., 2015. 7. 30.>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30.>

[본조신설 2009. 7. 30.]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7. 30., 2014. 5. 14.>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4. 5. 14.>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7. 30.>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자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7. 30.>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14.>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5.>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5.>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14., 2017. 1. 5., 2019. 3. 28.>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4. 5.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4. 5. 14., 2020.7.16>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 5. 14.>

[제목개정 2014. 5. 14.]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7. 30.>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5.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14.>

[본조신설 2009. 7. 30.]

[제목개정 2014. 5. 14.]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9. 7.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14., 2020.7.16>

1.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제14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7. 30.>

부칙 <제823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서울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 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 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 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 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 의 동의를 갈음한다.<개정 2021. 4. 1.>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4. 1.]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개정 2021. 4. 1.>
8. 외국과의 경제·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신설 2021. 4. 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신설 2021. 4. 1.>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8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수탁기관 선정시 사전 심사
2. 재위탁 및 재계약 적정여부 심사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심사 시에는 제19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 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운영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73호, 2016.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복지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義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구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본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아동복지사업
5. 청소년복지사업
6. 여성복지사업
7.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 시설과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

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신규위탁과 위탁기간 연장 또는 갱신의 심사 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탁자 모집공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려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4. 수탁자의 자격 등

제8조(수탁신청 및 자격)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관리·운영 수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첨부)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 자산현황
5. 수탁사업계획서
6. 기타 시설 유형별로 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개정 2022.11.24.>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제6조제4항의 심사 항목에 따라 수탁신청자 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수탁신청자가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4.>

-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탁기간) ①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재계약)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 ②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위탁사무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과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사업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 심의 시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즉시 수탁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528호, 2001.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 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시설은 본 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8호, 2022.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Tel: (02) 2094-2000, Fax: (02) 2094-2009

연구기관 (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039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211(금강리빙스텔 512호)

Tel: (010) 2740-2325, E-mail: kripd@naver.com